

RM 2026-7-1156



대학알리미
유튜브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2026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CONTENTS

2026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I

대학정보공시 안내

1. 공시 개요 및 목적	3
2. 추진체계	3
3. 공시 대상학교	4
4. 공시항목 및 내용	5
5. 공시자료 입력 방법	8
6. 월별 공시항목(14개 분야, 65개 항목, 103개 세부항목)	14
7. 문의처	15

II

공시 총괄담당자 업무 지침

1. 공시 총괄담당자의 역할	19
2. 공시 준비 단계	19
3. 공시 진행 단계	21
4. 최종확인완료 이후 단계	23

III

수시공시 작성 지침

1. 수시공시 안내	27
2. 수시공시 신청 방법	29
3. 수시공시 주요 속지사항	29

IV

대학정보공시 작성 지침

0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9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PDF)	41
0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3
2-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45

2-가-1. 전공과목 성적 분포	45
2-가-1.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47
2-가-2. 교양과목 성적 분포	48
2-가-3. 교직과목 성적 분포	50
2-가-4.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52
0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53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55
3-가-1. 신입생 모집요강[PDF]	55
3-가-2. 편입생 모집요강[PDF]	58
3-나. 전임(專任) 입학사정관 현황	59
3-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입학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담당한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	60
04. 총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61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63
4-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68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73
4-라. 학생 총원 현황(편입학 포함)	78
4-라-1. 재학생 총원율	78
4-라-2. 편입학 선발 결과	84
4-마. 재적 학생 현황	87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91
4-바-1. 외국 학생 현황	91
4-바-2. 외국 학생 중도탈락 현황	94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96
4-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98
4-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99
0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01
5-가. 졸업생 현황	103
5-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105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109

0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15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117
6-가-1.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117
6-가-2. 전체 신규 전임교원 현황	122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123
6-나-(1)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123
6-나-(2)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사이버대학)	129
6-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134
6-다-1.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134
6-다-2. 전공계열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135
 0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137
7-가.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139
 0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43
8-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145
8-가-1. 국·공립대 대학회계 예산	145
8-가-2. 국·공립대 대학회계 결산	147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149
8-다-1.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예산	149
8-다-2.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결산	150
8-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151
8-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152
8-마-1. 법인회계 자금예산서(예산)	152
8-마-2. 법인회계 자금계산서(결산)	153
8-마-2-(1) 법인회계 감사증명서[PDF]	154
8-마-3. 법인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155
8-마-4. 법인회계 재무상태표	156
8-마-5. 법인회계 적립금 운용계획서[PDF]	157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158
8-바-1.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예산)	158
8-바-1-(1) 교비회계(통합) 자금예산서(예산)	158
8-바-1-(2)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예산)	159

8-바-1-(2)-1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PDF]	160
8-바-1-(3)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예산)	161
8-바-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	162
8-바-2-(1) 교비회계(통합) 자금계산서(결산)	162
8-바-2-(2)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결산)	164
8-바-2-(3)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결산)	165
8-바-3. 교비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166
8-바-3-(1) 교비회계(통합) 운영(손익) 계산서	166
8-바-3-(2)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167
8-바-3-(3)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168
8-바-4. 교비회계 재무상태표	169
8-바-4-(1) 교비회계(통합) 재무상태표	169
8-바-4-(2)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재무상태표	170
8-바-4-(3)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재무상태표	171
8-바-5. 교비회계 적립금 운용계획서[PDF]	172
8-사. 적립금 현황	173
8-아. 기부금 현황	175
8-자. 산학협력단회계 현황	176
8-자-1. 산학협력단회계 현금예산서(예산)	176
8-자-2.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결산)	177
8-자-3. 산학협력단회계 운영 계산서	178
8-자-4. 산학협력단회계 재무상태표	179
8-차. 등록금 현황	180
8-차-1. 등록금 현황	180
8-차-2.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185
8-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187
8-카-1.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187
8-카-1-(1) 입학 전형료 수입 현황	187
8-카-1-(2) 입학전형 관련 지출 현황	188
8-카-2. 입학 전형료 산정근거[PDF]	190
8-타. 대학의 장, 이사장 및 상근(常勤)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192

0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193
9-가. 등록금 산정근거	195
9-가-1. 등록금 산정근거	195
9-가-1-(1) 등록금 산정근거[PDF](국·공립대)	195
9-가-1-(2) 등록금 산정근거[PDF](사립대)	202
9-가-2.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PDF]	211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212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국·공립대, 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212
9-나-2. 학생 1인당 교육비(사립대)	213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215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217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219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221
11-가-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PDF]	221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223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225
12-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227
12-나-1. 학생 규모별 강좌수	227
12-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228
12-나-3. 대학 강의 공개 현황	230
12-다. 장학금 수혜 현황	233
12-다-1. 장학금 수혜 현황	233
12-다-2. 학자금 대출 현황	241
12-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243
12-라-2. 외국대학과 학점 교류 현황	243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244
12-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246
12-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 현황[PDF]	249
12-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251
12-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253
12-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254

12-카-1. 현장실습 운영 현황	254
12-카-2. 캡스톤 디자인 운영 현황	259
12-카-3. 학교기업 운영 현황	261
12-카-4.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262
12-카-4-(1) 계약학과/계약정원제 설치 운영 현황	262
12-카-4-(2) 주문식 교육과정 설치 운영 현황	265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267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268
12-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269
12-하-1. 교원·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269
12-하-1-(1)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269
12-하-1-(2)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270
12-하-2. 창업교육 지원 현황	272
12-거. 기술자주회사 운영 현황	274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277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자료 구입비 결산 현황	279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281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283
14-가. 정관[PDF]	285
14-나. 법인의 임원 현황	286
14-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287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288
14-마. 기숙사 현황	291
14-마-1. 기숙사 수용 현황	291
14-마-2. 기숙사 운영 결과	293
14-마-2-(1). 기숙사 운영 결과(국·공립대_민자기숙사)	293
14-마-2-(2) 기숙사 운영 결과(사립대_행복/민자기숙사)	295
14-마-2-(3) 기숙사 운영 결과(국·공립대_직영기숙사)	297
14-마-2-(4) 기숙사 운영 결과(사립대_직영기숙사)	299
14-마-3.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301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302
14-바-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302
14-바-2.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304
14-사. 직원 현황	305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PDF]	307
14-자-1. 대학 자체평가 결과[PDF]	307
14-자-2.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	309
14-차. 강사 강의료	311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313
14-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현황	315
14-파. 인권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317
14-하. 안전관리 현황	320
14-하-1.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320
14-하-2. 시설 안전관리 현황	323
14-하-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326
14-하-4.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사고 보험(공제) 현황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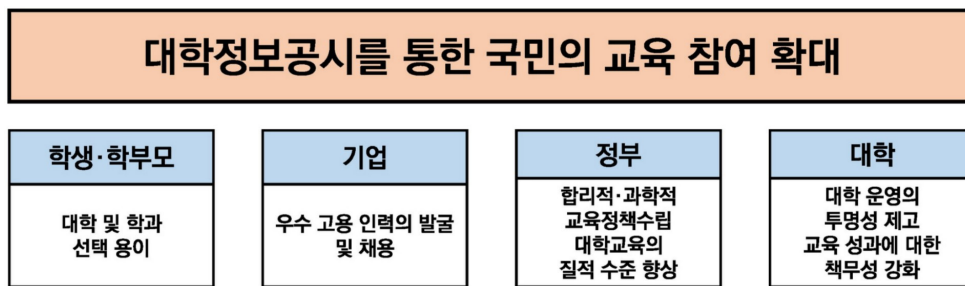
2026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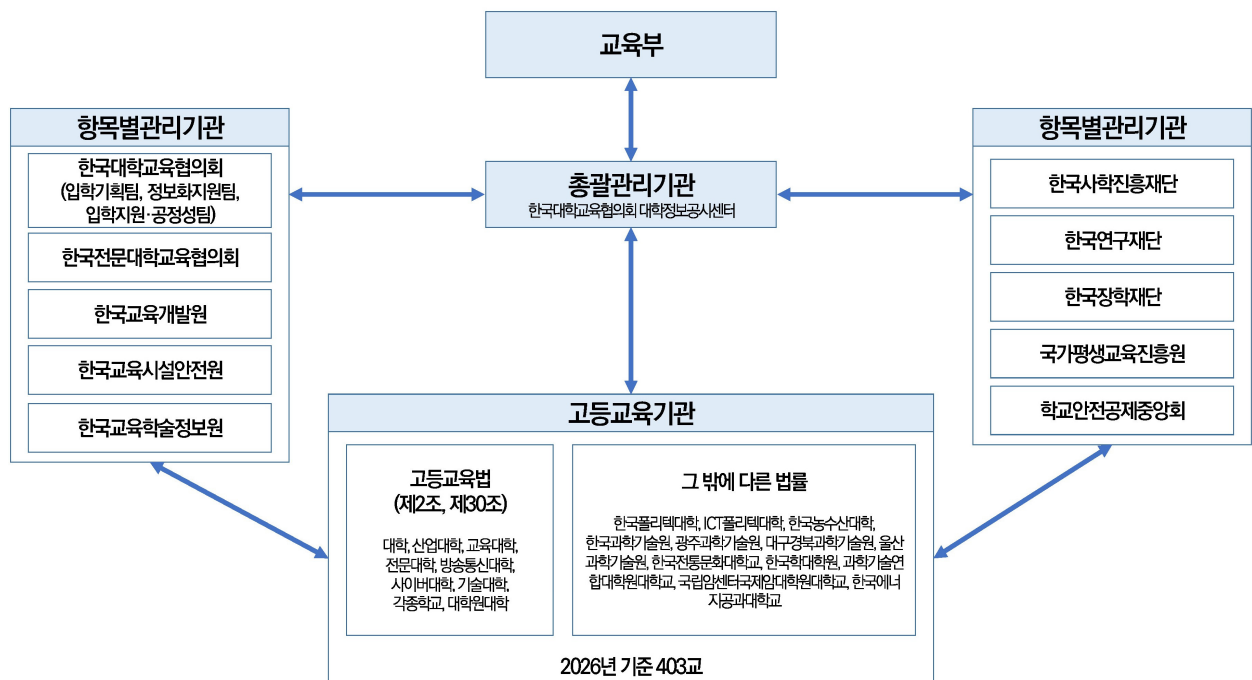
대학정보공시 안내

1. 공시 개요 및 목적

- 대학정보공시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연구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제도
 -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의무
-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학생·학부모, 산업체, 정부 등의 학교선택, 산학협력 및 직원채용, 정책집행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하여,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과 아울러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대학의 주요정보(취업률,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 공개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질 제고를 촉진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추진체계



3. 공시 대상학교

○ 설립근거별 분류

구분	근거법령	학교구분	학교수	국립	공립	사립
고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제2조)	대학교	182	27	1	154
		산업대학	2	0	0	2
		교육대학	10	10	0	0
		전문대학	125	0	3	122
		방송통신대학	1	1	0	0
		사이버대학	20	0	0	20
		기술대학	1	0	0	1
	각종학교	2	1	0	1	
	고등교육법(제30조)	대학원대학	41	0	0	41
소 계			384	39	4	341
그 밖에 다른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9조)	한국폴리텍대학/ICT폴리텍대학	9	0	0	9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제1조)	한국농수산대학교	1	1	0	0
	한국과학기술원법(제1조)	한국과학기술원	1	1	0	0
	광주과학기술원법(제1조)	광주과학기술원	1	1	0	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1	0	0
	울산과학기술원법(제1조)	울산과학기술원	1	1	0	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1	0	0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제6조)	한국학대학원	1	1	0	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	0	0	1
	암관리법(제29조)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1	1	0	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제1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	1	0	0	
소 계			19	9	0	10
합 계			403	48	4	351

- ※ 학교수는 통폐합 및 학제변경으로 인한 폐교를 제외한 대상 대학수로, 폐교는 학칙 존치기간까지 일부항목에 대하여 개별 및 합산 공시
- ※ 「고등교육법」 2조 및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가 대학정보공시 대상에 해당하며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조제5호 단서(단,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제외)에 의해 제외되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내대학은 평생교육시설이므로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는 사이버대학만 해당됨
- ※ 본교 및 분교, 캠퍼스 존재 시 기관별로 각각 공시해야 함(다만, 본교 및 분교, 캠퍼스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통폐합된 경우, 공시 내용이 공통된 사항인 경우 등 통합공시 가능)

○ 학제별 분류

학제별	대학별	학교수	국립	공립	사립	소계
대학	일반대학	188	33	1	154	222
	산업대학	2	0	0	2	
	교육대학	10	10	0	0	
	사이버대학(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19	1	0	18	
	기술대학	1	0	0	1	
	각종대학(대학)	2	1	0	1	
전문대학	전문대학	126	1	3	122	137
	사이버대학(전문대학)	2	0	0	2	
	기능대학	9	0	0	9	
대학원대학	대학원대학	44	2	0	42	44
합계		403	48	4	351	403

4. 공시항목 및 내용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내용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공시여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1.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대학	수시	수시	○	○	○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대학	연 1회	8월	○	○	○	○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대학	수시	수시	○	○	○	○
	나. 전임(專任) 입학사정관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입학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담당한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	대학	연 1회	6월	○	×	×	×
4. 총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6월	○	×	○	×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6월	○	×	○	×
	다. 신입생 총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라. 학생 총원 현황(편입학 포함)	대학	연 1회	8월	○	○	○	○
	마. 재적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바. 외국인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전문대학	연 1회	8월	×	×	○	×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대학	연 1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대학	연 1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연 1회	8월	○	×	○	○
	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대학	연 1회	8월	○	×	○	○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	×	○	○
	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	×	○	○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내용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공시여부			
					대학	대학원	전문 대학	대학원 대학
	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사립대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	×	○	○
	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사립대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	×	○	○
	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사립대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	×	○	○
	사. 적립금 현황	사립대	연 1회	(결산) 8월	○	×	○	○
	아. 기부금 현황	사립대	연 1회	(결산) 8월	○	×	○	○
	자. 산학협력단 회계 예·결산 현황	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	×	○	○
	차. 등록금 현황	대학	연 2회	4월, 8월	○	○	○	○
	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타. 대학의 장, 이사장 및 상근(常勤)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사립대	연 1회	8월	○	×	○	○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이상	4월, 수시	○	×	○	○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대학	연 1회	8월	○	×	○	○
10. 「고등교육법」 제60조 부터 제62조까지의 사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대학	수시	수시	○	×	○	○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대학	수시	수시	○	○	○	○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8월	○	×	○	○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다.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	연 1회	4월	○	×	○	○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대학	연 1회	6월	○	×	○	○
	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대학	연 1회	6월	○	×	○	○
	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	×	○	×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내용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공시여부			
					대학	대학원	전문 대학	대학원 대학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자료 구입비 결산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	×	○	○
	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사립대	수시	수시	○	×	○	○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사립대	수시	수시	○	×	○	○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	×	○	○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	×	○	○
	마. 기숙사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	×	○	○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립대	연 1회	10월	○	×	○	○
	사. 직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대학	수시	수시	○	○	○	○
	차. 강사 강의료	대학	연 1회	8월	○	○	○	○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	○	○
	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	×	○	○
	파. 인권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	×	○	○
	하. 안전관리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	×	○	○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중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6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8월에 각각 공시한다.
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8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중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를 말한다.

5. 공시자료 입력 방법

가. 간접입력(항목별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 제출) 항목 및 내용

○ 한국교육개발원

공시 항목	공시 내용		원자료 조사 시기	공시 시기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1) 전공과목 성적 분포	4월	8월
		2) 교양과목 성적 분포	4월	8월
		3) 교직과목 성적 분포	4월	8월
		4)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4월	8월
4. 총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다. 신입생 총원 현황		4월	8월
	라. 학생 총원 현황(편입학 포함)	1) 재학생 총원율	4월	8월
	마. 재적 학생 현황		4월	8월
	바. 외국인 학생 현황	1) 외국 학생 현황	4월	8월
		2) 외국 학생 중도탈락 현황	4월	8월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4월	8월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전문대학)		4월	8월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		4월	8월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4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4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1)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4월	8월
		2) 전체 신규 전임교원 현황	4월	8월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4월	8월
	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1)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4월	8월
2) 전공계열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4월	8월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1) 학생 규모별 강좌수	4월	8월
		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4월	8월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2) 외국대학과 학점 교류 현황	4월	8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사. 직원 현황		4월	8월

○ 한국연구재단

공시 항목	공시 내용	원자료 조사 시기	공시 시기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가.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6~7월	8월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6~7월	8월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PDF]	4~5월	6월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현황	4~5월	6월	
	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4~5월	6월	
	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1) 현장실습 운영 현황	4~5월	6월
		2) 캡스톤 디자인 운영 현황	4~5월	6월
		3) 학교기업 운영 현황	4~5월	6월
		4)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설치 운영 현황	4~5월	6월
	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4~5월	6월	
	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4~5월	6월	
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1) 교원·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4~5월	6월	
	2) 창업교육 지원 현황	4~5월	6월	
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4~5월	6월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6~7월	8월	

○ 한국장학재단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원자료 조사 시기	공시 시기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1)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예산	3~4월	6월
		2)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결산	7~8월	8월
	차. 등록금 현황	1) 등록금 현황	3~4, 7~8월	4월, 8월
		2)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3~4, 7~8월	4월, 8월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1) 등록금 산정근거[PDF]	3~4, 7~8월	4월, 8월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다. 장학금 수혜 현황	1) 장학금 수혜 현황	7~8월	8월
		2) 학자금 대출 현황	7~8월	8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시 항목	공시 내용	원자료 조사 시기	공시 시기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3) 대학 강의 공개 실적	9월	10월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4~5월	6월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자료 구입비 결산 현황	6~8월	10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하. 안전관리 현황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4~9월	10월

○ 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 항목	공시 내용		원자료 조사 시기	공시 시기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라. 예·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		예산 2월 결산 5월	예산 6월 결산 8월
	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1) 법인회계 자금예산서(예산)	2월	6월
		2) 법인회계 자금계산서(결산)	5월	8월
		3) 법인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5월	8월
		4) 법인회계 재무상태표	5월	8월
		5) 법인회계 적립금 운용계획서[PDF]	2월	6월
	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1)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예산)	2월	6월
		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	5월	8월
		3) 교비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5월	8월
		4) 교비회계 재무상태표	5월	8월
		5) 교비회계 적립금 운용계획서[PDF]	2월	6월
	사. 적립금 현황		5월	8월
	아. 기부금 현황		5월	8월
	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1) 산학협력단 현금예산서(예산)	2월	6월
		2) 산학협력단 현금흐름표(결산)	5월	8월
3) 산학협력단 운영(손익) 계산서		5월	8월	
4) 산학협력단 재무상태표		5월	8월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2) 사립대	5월	8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4월	10월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4월	10월
	마. 기숙사 현황	1) 기숙사 수용 현황	4월	10월
		2) 기숙사 운영 결과	6월	10월
		3)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6월	10월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6월	10월
2)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5월	10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원자료 조사 시기	공시 시기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3) 대학 강의 공개 실적	8월	10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학기획팀, 입학지원·공정성팀, 정보화지원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공시 항목	공시 내용		원자료 조사 시기	공시 시기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가. 모집요강	1) 신입생 모집요강[PDF](대학, 전문대학)	대학 5·9월 전문대학 8월	수시
	나. 전임(專任) 입학사정관 현황		4~5월	6월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입학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담당한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		4~5월	6월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3~5월	6월
	나. 기회균형 선발 결과		3~5월	6월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4~5월	6월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1)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대학)	4~6월	8월
		2) 입학 전형료 산정 근거[PDF](대학)	4~6월	8월

○ 성평등가족부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원자료 조사 시기	공시 시기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현황	2월	10월

○ 교육부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원자료 조사 시기	공시 시기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파. 인권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7~8월	10월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시 항목	공시 내용		원자료 조사 시기	공시 시기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하. 안전관리 현황	1)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9월	10월
		2) 시설 안전관리 현황	9월	10월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원자료 조사 시기	공시 시기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하. 안전관리 현황	4)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사고 보험(공제) 현황	6~7월	10월

나. 직접입력 항목 및 내용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원자료 조사 시기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PDF]		수시	수시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1) 신입생 모집요강[PDF](대학원, 대학 원대학)	수시	수시	
		2) 편입생 모집요강[PDF](전학제)	수시	수시	
4. 총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라. 학생 총원 현황(편입학 포함)		2) 편입학 선발 결과	8월	8월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1) 국·공립대 대학회계 예산	6월	6월	
		2) 국·공립대 대학회계 결산	8월	8월	
	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1)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전문대학)	8월	8월	
		2) 입학 전형료 산정 근거[PDF](전문대학)	8월	8월	
타. 대학의 장, 이사장 및 상근(常勤)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8월	8월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2)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PDF]	수시	수시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1) 국·공립대, 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8월	8월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 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수시	수시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PDF]	수시	수시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4월	4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PDF]		수시	수시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수시	수시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1) 대학 자체평가 결과[PDF]	수시	수시	
		2) 대학별 평가인증 현황	수시	수시	
	차. 강사 강의로		8월	8월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8월	8월		

다. 부분직접입력 항목 및 내용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원자료 조사 시기	공시 시기
4. 총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나. 기회균형 선발 결과(전문대학 정원내 기회균형선발결과)	6월	6월

라. 월별 공식 항목 원자료 조사 시기(기관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시스템				사회봉사		국·공립대 예산		국·공립대 결산, 경상연료 등				
한국시학진흥재단		법안·교바·신단회계 예산 등		교지, 교사 현황, 가속사 수용 현황	법안·교바·신단회계 결산, 적립금, 기부금, 법정부담금 현황 등	가속사 운영 결과, 수입용 기본재산 등						
성평등기조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현황, 발전기금회계 예산				등록금 납부제도, 발전기금회계 결산, 장학금 현황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형 유형별, 기회균형 선발 결과		대학 모집요강(수시)			전문대학 모집요강 (수시 및 정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행사정관 서류평가 간수, 출신 고등학교 현황 등									
한국교육개발원			성적 결과, 재학생 및 졸업생, 교원 및 직원, 강좌 및 강의 현황 등		입학전형료 현황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 공동 연구장비 운영, 환영실습, 기간학과 설치, 특허 실적, 창업교육 지원 현황 등		전인교원 연구 실적, 연구비 수혜 실적, 연구소 현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자료 구입비 결산 현황				강의 공개 현황			
한국인재문제중앙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교육부					인재관리 계획 및 보충 현황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인면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강의 공개 현황			

6. 월별 공시항목(14개 분야, 65개 항목, 103개 세부항목)

【수시 공시】 6개 분야, 8개 항목, 10개 세부항목		【8월 공시】 10개 분야, 33개 항목, 50개 세부항목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PDF]	직접입력	2-가-1. 전공과목 성적 분포	KEDI 고등통계
3-가-1. 신입생 모집요강[PDF]	대교협, 전대협, 직접입력	2-가-2. 교양과목 성적 분포	KEDI 고등통계
3-가-2. 편입생 모집요강[PDF]	직접입력	2-가-3. 교직과목 성적 분포	KEDI 고등통계
9-가-2.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PDF]	직접입력	2-가-4.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KEDI 고등통계
10-가.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직접입력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KEDI 고등통계
11-가-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PDF]	직접입력	4-라-1. 재학생 총원율	KEDI 고등통계
14-가. 정관[PDF]	직접입력	4-라-2. 편입학 선발 결과	직접입력
14-나. 법인의 인원 현황	직접입력	4-마. 재직 학생 현황	KEDI 고등통계
14-자-1. 대학 자체평가 결과[PDF]	직접입력	4-바-1. 외국 학생 현황	KEDI 고등통계
14-자-2.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	직접입력	4-바-2. 외국 학생 증도탈락 현황	KEDI 고등통계
		4-사. 증도탈락 학생 현황	KEDI 고등통계
		4-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KEDI 고등통계
		5-가. 졸업생 현황	KEDI 고등통계
		6-가-1.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KEDI 고등통계
		6-가-2. 전체 신규 전임교원 현황	KEDI 고등통계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KEDI 고등통계
		6-다-1.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KEDI 고등통계
		6-다-2. 전공계열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KEDI 고등통계
		7-가.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한국연구재단
		8-가-2. 국·공립대 대학회계 결산	직접입력
		8-다-2.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결산	한국장학재단
		8-라. 예·결산(한산재무제표)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8-마-2. 법인회계 자금계산서(결산)	한국사학진흥재단
		8-마-3. 법인회계 운영손익계산서	한국사학진흥재단
		8-마-4. 법인회계 재무상태표	한국사학진흥재단
		8-바-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	한국사학진흥재단
		8-바-3. 교비회계 운영손익계산서	한국사학진흥재단
		8-바-4. 교비회계 재무상태표	한국사학진흥재단
		8-사. 적립금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8-아. 기부금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8-자-2.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	한국사학진흥재단
		8-자-3.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예산서	한국사학진흥재단
		8-자-4. 산학협력단회계 재무상태표	한국사학진흥재단
		8-차-1. 등록금 현황	한국장학재단
		8-차-2.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한국장학재단
		8-가-1.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대교협
		8-가-2. 입학 전형료 산정근거[PDF]	대교협
		8-타. 대학의 장, 이사장 및 상근(常勤)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직접입력
		9-가. 등록금 산정 근거[PDF]	한국장학재단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직접(국공립), 사학(사립)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한국연구재단
		12-나-1. 학생 규모별 강좌수	KEDI 고등통계
		12-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KEDI 고등통계
		12-다-1. 장학금 수혜 현황	한국장학재단
		12-다-2. 학자금 대출 현황	한국장학재단
		12-라-2. 외국대학과 학점 교류 현황	KEDI 고등통계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한국연구재단
		14-사. 직원 현황	KEDI 고등통계
		14-차. 강사 강의료	직접입력
		14-카.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직접입력

【별도 공시】 1개 분야, 2개 항목, 2개 세부항목		【4월 공시】 3개 분야, 3개 항목, 4개 세부항목	
5-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KEDI 취업통계	8-차-1. 등록금 현황	한국장학재단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KEDI 취업통계	8-차-2.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한국장학재단
		9-가. 등록금 산정 근거[PDF]	한국장학재단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직접입력

【6월 공시】 4개 분야, 20개 항목, 26개 세부항목		【10월공시】 3개 분야, 9개 항목, 15개 세부항목	
3-나. 전임(專任) 입학사정관 현황	대교협	12-나-3. 대학 강의 공개 현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입학전형 에서 서류평가를 담당할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	대교협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자료 구입비 결산 현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대교협, 전대협	14-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4-나. 기회균형 선발 결과	대교협, 전대협	14-라. 교사(敎師)시설 확보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4-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대교협	14-마-1. 기숙사 수용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8-가-1. 국·공립대 대학회계 예산	직접입력	14-마-2. 기숙사 운영 결과	한국사학진흥재단
8-다-1.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예산	한국장학재단	14-마-3.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8-라. 예·결산(한산재무제표)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14-바-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8-마-1. 법인회계 자금예산서(예산)	한국사학진흥재단	14-바-2.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8-마-5. 법인회계 적립금 운용계획서[PDF]	한국사학진흥재단	14-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현황	성평등가족부
8-바-1.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예산)	한국사학진흥재단	14-파. 인권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교육부
8-바-5. 교비회계 적립금 운용계획서[PDF]	한국사학진흥재단	14-하-1.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한국교육사실안전원
8-자-1. 산학협력단회계 현금예산서(예산)	한국사학진흥재단	14-하-2. 시설 안전관리 현황	한국교육사실안전원
12-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4-하-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2-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PDF]	한국연구재단	14-하-4.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사고 보험(공제) 현황	학교안전공제중앙회
12-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한국연구재단		
12-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현황	한국연구재단		
12-카-1. 현장실습 운영 현황	한국연구재단		
12-카-2. 캠퍼스 디자인 운영 현황	한국연구재단		
12-카-3. 학교기업 운영 현황	한국연구재단		
12-카-4.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한국연구재단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한국연구재단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한국연구재단		
12-하-1. 교원·학생의 창업 및 창업 지원 현황	한국연구재단		
12-하-2. 창업교육 지원 현황	한국연구재단		
12-거. 기술자주회사 운영 현황	한국연구재단		

【14개 분야, 65개 항목, 103개 세부항목】

- ※ 연 2회 공시 항목(8-라, 8-차-1, 8-차-2, 9-가)
- ※ 2개 항목관리기관에서 연계하는 항목(3-가, 4-가, 4-나, 12-나-3)

항목관리기관 및 유관기관	세부항목 수
직접입력	17개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 21개, 취업 2개
한국교육사실안전원	2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개
한국사학진흥재단	25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1개
한국연구재단	15개
한국장학재단	7개
한국대학(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 8개, 전대협 3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개
교육부	1개
성평등가족부	1개

7. 문의처

- 대학정보공시센터 연락처 : 02-6919-3881
- 이 메 일 : open@kcue.or.kr
- 홈페이지 : <http://www.academyinfo.go.kr>
- 팩 스 : 02-6919-3899
- 주 소 : (085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동 22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2026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II

공시 총괄담당자 업무 지침

1. 공시 총괄담당자의 역할

- 대학정보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총괄관리기관(대학정보공시센터)과 대학 내 정보공시 담당자와의 연결 고리 역할
- 대학의 정보공시 담당자의 자료 입력 및 확인을 위한 입력시스템 환경 설정
- 공시 전 입력된 자료가 지침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오류 사항 발견 시 수정을 통해 정확한 자료가 공시되도록 모니터링
- 안내된 공시 일정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고 '입력완료-확인완료-최종확인완료'를 할 수 있도록 안내
- '최종확인완료'한 공시 자료를 총괄관리기관으로 공문 제출
- 예비공시를 통해 최종확인완료한 공시 자료가 대학알리미에 정확하게 표현되는지 확인
- 공시 이후 내부 점검, 모니터링을 통한 오류 확인 및 정정 요청
- 입력한 공시 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및 원자료 보관 및 관리
- 직간접입력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유무 확인

2. 공시 준비 단계

○ 월별 공시 계획 수립

-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공시시기별로 발송하는 '공시 안내 공문'을 담당 부서에 공유
- 공시 일정에 맞춰 자료 입력 및 확인에 대한 대학 자체 내부 계획 수립
- 간접입력항목은 원자료 조사기관의 자료 입력 여부 확인

○ 총괄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 총괄담당자가 변경되면 '총괄담당자 변경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문으로 요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 > 공통 > 게시판 > 공지사항 859번 참고
- 신규 총괄담당자의 경우, 사용자 등록 진행 후 공문으로 총괄담당자 변경을 요청하면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권한 부여

○ 담당자 신규 등록 방법

- 교육부 EPKI 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신규 등록 가능
- 대학알리미 메인페이지 우측 하단의 '업무담당자 로그인'에서 사용자 등록 진행

○ **입력시스템 환경 설정**

절차	입력시스템 메뉴	내용
항목 담당자 승인	공동 > 담당자 관리 > 담당자 신청 승인	신규 항목담당자 승인 처리
항목별 권한 부여	공동 > 담당자 관리 > 담당자 관리 > 권한 및 관리학교 수정	항목담당자별, 업무구분별 필요한 권한 부여
작성자, 확인자 설정	대학정보공시관리 > 공시항목별 작성자, 확인자, 최종확인자 관리 > 작성자 확인자 관리	대학알리미 개별공시에서 각 항목별 담당자(작성자, 확인자) 공시

○ **지침 숙지 및 변경 내역 검토**

- 당해연도 대학정보공시 지침 숙지 및 변경 내역 확인, 담당자별 안내

○ **수시항목 공시**

구 분	절 차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개정사항 발생</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수시항목접수 게시판 오픈요청</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게시판>내글검색> 댓글확인 (또는 e-mail 확인)</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공시장표> 해당항목선택> 추가>저장</div> </div>
개정일로부터 30일 초과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정정요청서, 전·후 장표 작성 및 증빙자료 준비</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대학정보공시센터 및 교육부로 정정 요청 공문 발송</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확인 후 대학에 연락</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직접입력 후 '최종확인완료'</div> </div>
당해연도 수시공시 완료 (12월 말)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수시공시 완료 공문 제출 안내' 공문 발송 (공시센터 → 대학)</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수시공시 입력 마감 및 '최종확인완료'</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수시공시 공문 작성 및 공문 제출 (연1회)</div>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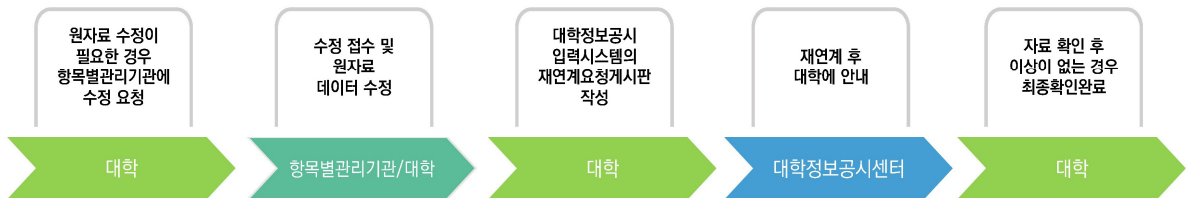
3. 공시 진행 단계

○ 공시자료 입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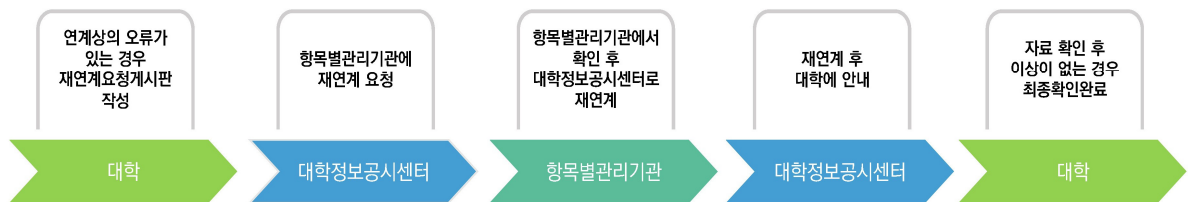
구분	입력방법
직접입력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직접입력(PDF/엑셀 양식 업로드, 장표 내 입력)
간접입력	항목별관리기관에 기제출한 자료를 연계, 별도의 입력과정 없이 입력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데이터 확인
부분직접입력	일부 데이터는 항목별관리기관에 기제출한 자료를 연계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간접입력항목 수정 및 연계오류 처리 방법

- 원자료 수정 방법(항목별관리기관에 입력한 자료 수정)



- 연계오류 처리 방법



○ 형식검증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 > 대학정보공시관리 > 형식검증관리 > 형식검증 > '검증실시' 버튼 클릭하여 검증사항 확인
- 검증결과 오류가 발견될 경우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항목의 자료 수정
- 수정 후 다시 '검증실시'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검증사항이 '정상'임을 확인
 - ※ 오류사항을 해결할 경우, '정상' 또는 '해당없음'으로 변경되어 표기됨
- 오류 사항이 아닌 예외 사항일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 > 대학정보공시관리 > 형식검증관리 > 형식검증 예외요청 메뉴를 통해 예외요청 신청
- 모든 검증사항에 오류가 없으면('정상' 또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검증 완료

○ 전년대비 증감 확인

- 대학에서 공시 자료 확인 후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확인하는 팝업 발생
※ '전년대비증감확인' 버튼이 있는 항목만 해당
- 데이터가 증감 범위를 벗어난 경우 자료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 확인 필요
- 데이터 오류가 아님에도 증감 범위를 벗어난 경우 증감 사유를 상세히 작성
- 항목별 '입력완료' 버튼 클릭 시 증감사유를 입력하여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확인완료' 버튼 및 '최종확인완료' 버튼 클릭 시에도 최종 입력한 증감사유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함

○ 체크리스트

- 대학에서 공시 자료 확인 후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체크리스트'을 확인하는 팝업 발생
- 지침에 맞게 공시 자료를 입력하였는지 확인 후 점검 여부에 체크 표시
- 원자료 교내 추출 경로(방법), 원자료 보관 상황을 상세히 작성
※ 공시 당시 시점 자료에 대한 백업,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등에 활용 가능
- 항목별 '입력완료' 버튼 클릭 시 체크리스트를 입력하여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확인완료' 버튼 클릭 시에도 최종 입력한 체크리스트 내용의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함

○ 입력완료, 확인완료, 최종확인완료

버튼 종류	담당자	방법	비고
입력완료	입력담당자	- 직접입력의 경우, 작성자가 자료 입력을 완료하면 저장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 - 간접입력의 경우, 작성자가 연계된 자료를 검토 완료하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확인완료' 버튼이 나타남
확인완료	확인담당자	- '입력완료'가 끝나면 확인자는 자료 재검토 후 '확인완료' 버튼을 클릭	'확인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확인완료' 버튼이 나타남
최종확인완료	총괄담당자	- '확인완료'가 끝나면 총괄담당자는 '최종확인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하고, 이후에는 확정된 공시자료를 제출해야 함	'최종확인완료' 후 공문 작성 및 제출

○ 입력완료 해제 방법

- 입력 및 확인담당자가 '입력완료'나 '확인완료' 버튼 클릭 후 데이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총괄 담당자는 '입력완료 해제 관리'에서 버튼 해제를 통해 데이터 입력 단계로 되돌릴 수 있음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 > 대학정보공시관리 > 입력완료 해제 관리 > 해제 버튼을 클릭하면 미입력 단계로 변경
※ '최종확인완료' 버튼을 클릭한 경우 해제가 불가능하며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버튼 해제를 요청해야 함

4. 최종확인완료 이후 단계

○ 공문 작성 및 제출

- 대학정보공시관리 > 공시자료제출관리 > 공문작성
 - 입력여부, 첨부파일 수, 비고포함여부 등을 작성하고 '저장' 후 '자료제출'
- 대학정보공시관리 > 공시자료제출관리 > 공문제출
 - 최종자료 제출 공문의 '파일추가' 버튼 클릭 후 총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파일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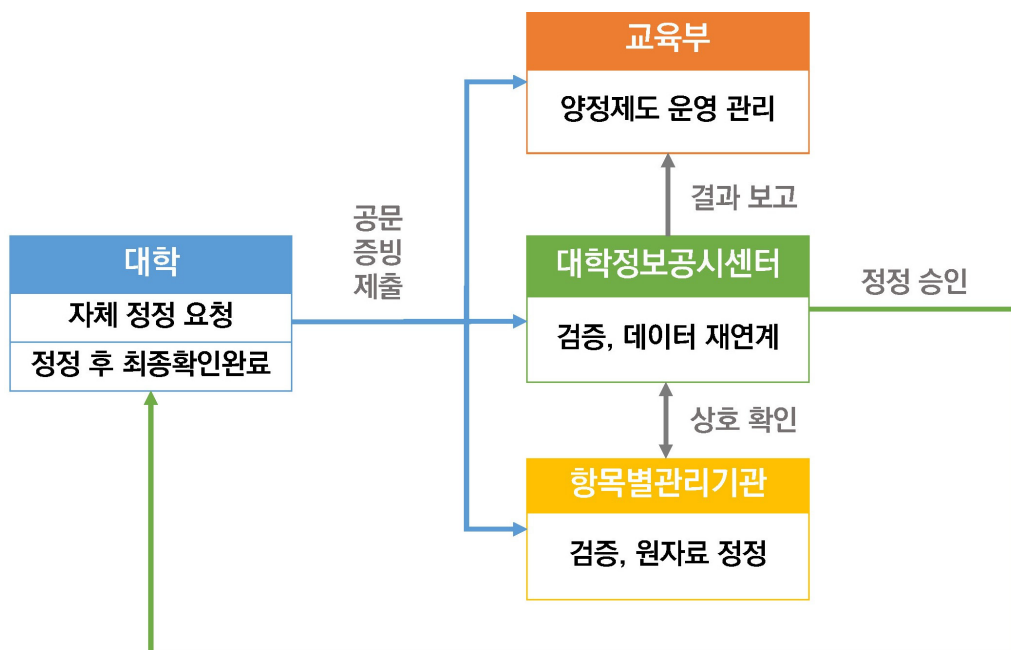
○ 예비공시

- 예비공시 기간(대국민 공시일 5~7일 전)에 대학알리미를 통해 입력한 자료가 정확하게 공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 ※ 업무담당자 로그인 필요

○ 공시 이후 정정요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 > 공통 > 게시판 > 공지사항 809번 참고

항목 구분	제출처	발송 문서
직접입력항목	교육부(교육데이터정책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정보공시센터)	정정요청 공문(기관장 결재, 아래의 문서 포함하여 발송)
간접입력항목	교육부(교육데이터정책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정보공시센터), 항목별관리기관	① 정정요청서 ② 정정 전·후 장표 ③ 증빙자료



2026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Ⅲ

수시공시 작성 지침

1. 수시공시 안내

○ 수시공시

- 수시공시는 대학(원)·법인의 사유에 의하여 상시 개정이 발생 가능한 항목으로, 개정이 발생할 때마다 재공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공시 진행

○ 수시공시 항목 데이터 이관

- 수시항목의 공시 연속성을 높이고 대학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도별 연속성 있는 수시항목의 데이터를 차년도 이관 공시

※ 이관 해당항목 : 1-가, 10-가, 11-가-1, 14-가, 14-나, 14-자-1, 14-자-2

○ 수시공시 항목

공시 항목	공시여부				전년도 데이터 이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PDF]	○	○	○	○	이관
3-가-1. 신입생 모집요강[PDF]	○	○	○	○	-
3-가-2. 편입생 모집요강[PDF]	○	○	○	○	-
9-가-2.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PDF]	○	×	○	○	-
10-가.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	×	○	○	이관*
11-가-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PDF]	○	○	○	○	이관
14-가. 정관[PDF]	○	×	○	○	이관
14-나. 법인의 임원 현황	○	×	○	○	이관
14-자-1. 대학 자체평가 결과[PDF]	○	○	○	○	이관
14-자-2. 대학 평가인증 현황	○	×	○	×	이관**

* '10-가.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의 경우 정상이행(이행 중), 미이행 건만 이관

** '14-자-2. 대학 평가인증 현황'의 경우 인증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건만 이관

※ 3-가-1, 3-가-2, 9-가-2 항목은 전년도 데이터가 이관되지 않음

○ 수시공시 업무 절차

구분	절차	유의사항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요청 글 작성 후에는 반드시 답글의 내용을 확인 (E-mail 내용) ☑ 입력 후 반드시 '최종확인 완료'(3일 이내)
개정일로부터 30일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시스템(공통)게시판(공지사항)809번 참고
당해연도 수시공시 완료 (12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에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수시공시 완료공문 제출' 공문 발송 ☑ 공문 수령 후 절차에 따라 당해연도 수시공시 모두 마감 후, 완료 공문 제출

※ 수시항목 접수 게시판 오픈 요청방법: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 > 대학정보공시관리 > 접수 > 수시항목접수게시판

※ 개정 후 30일 이내 공시 누락하였을 경우, 정정요청 공문을 통하여 공시 진행하여야 함

○ 수시공시 운영 추진 일정

시기	세부 내용	비고
1월 초	전년도 수시공시 입력 마감	☑ 이관 관련 안내 전자공문 발송 - 수시항목 입력 일시 중단 관련 안내 등
1월 중	당해연도 수시항목 입력을 위한 입력시스템 환경 설정	☑ 전년도 데이터 이관(1-가, 10-가, 11-가-1, 14-가, 14-나, 14-자-1, 14-자-2)
1월 중	당해연도 수시항목 입력 오픈	☑ 입력시스템 팝업 공지사항 안내
2월 말	'수시 공시 운영 안내' 공문 발송	☑ 전체 공시 대상 대학 전자공문 발송
12월 말	'수시 공시 완료 공문 제출 안내' 공문 발송	☑ 당해연도 수시 항목 최종 확인 및 마감 요청

2. 수시공시 신청 방법

- ①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 > 대학정보공시관리 > 접수 > 수시항목접수 > '추가' 버튼 누르면 '수시항목접수 게시판 - 상세팝업'창 생성
- ② '추가' 버튼 누른 뒤 학교명 선택, 학교구분은 학교명 입력 후 자동생성
- ③ 공시항목에서 '돋보기' 버튼을 누른 뒤 항목명 선택
- ④ 항목 개정일(각 수시항목 개정일/확정일/회의개최일/임원 현황 변동일 등) 입력
 - ※ 개정일 30일 초과: 등록 불가, 공시 이후 정정 처리 필요(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 > 공통 > 게시판 > 공시사항 > '809번 공시 이후 오류정보 정정 요청 안내' 참고)
- ⑤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에 기재 및 저장
 - ※ 수시항목 일괄 오픈신청 가능(단, 동일항목 중복 신청 시 접수 불가)
 - (예: 30일 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여러 번 개최되어 회의록을 2개 이상 공시하더라도 개정일(최초 회의 개최일)은 1개만 신청)

3. 수시공시 주요 속지사항

공시 항목	내 용
공통	<p>[수시항목 공시 안내]</p> <p>☑ 항목별 공시 기준일(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가: 규정(지침) 개정일(규정(지침)에 명시된 최종 개정본의 개정일) - 3-가-1, 3-가-2: 모집요강 확정일 및 변경일 - 9-가-2: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일 - 10-가: ① (처분 사항) 감사 처분 결과 통보일 및 행정처분위원회 확정 처분 통보일(공문 수신일), 재심의 신청 결과 통보일(공문 수신일) <li style="padding-left: 20px;">② (조치 결과) 조치 결과 발송일(공문 발송일) - 11-가-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확정일(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 - 14-가: 정관 개정일(이사회 의결일, 승인일) ※ 정관 변경 사항은 이사회 의결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관부처(교육부 등) 승인일이 개정일 또는 시행일이 아님 - 14-나: 임원 현황 변동일(소관부처로부터 승인받은 공문에 명시된 임기 개시일, 임기 만료 익일) - 14-자-1: 자체평가 보고서 확정일(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 - 14-자-2: 인증 기간 (갱신)시작일 ※ 관련 기관으로부터 결과 통보받은 공문 수신일이 아님 <p>☑ 수시항목 공시 기한(공휴일, 주말 등 모두 포함)은 '30일 이내(항목별 개정일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항목접수게시판에 등록한 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산정(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 수시항목접수게시판에 개정일을 오류 입력 시 허위공시로 간주 <p>☑ 폐교(폐원)는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1-가)만 공시</p> <p>☑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캠퍼스 및 대학원별 항목(장표) 하단 비교에 '본교 통합 공시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캠퍼스 및 대학원 비교란에 반드시 '통합 공시'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는 경우 누락 착오 입력으로 간주

공시 항목	내 용
	<p>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학(원)이 신설(변경 등 개편)되는 경우, 대학정보공시 공시장표에 대학(원) 코드정보가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수시항목 공시(1-가 등) → 표준분류 시스템에서 생성된 대학(원) 정보가 공시장표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정일 기준 30일이 초과되어도 입력 및 요청 가능(만약 30일이 초과될 경우 개정일을 요청일로 작성하여 접수) ※ 생성된 대학(원) 정보가 공시장표에 반영되면 대학에 별도 안내(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 </p> <p> [수시항목접수게시판 사용 안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시항목접수게시판' 오픈 요청 신청 후, 반드시 e-mail 내용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시항목 오픈 시, 입력 및 '최종확인완료'는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완료 - '최종확인완료' 미완료 시, 대학알리미에 누락 착오 입력으로 간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시항목접수게시판' 초기 화면의 '안내팝업' 내용 숙지 후 입력 - 중요 공지사항 수시 안내 </p> <p> [공시장표 입력 시 유의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파일을 열어둔 상태에서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 파일이 깨져 보이므로 반드시 업로드 전에 파일을 닫은 뒤 업로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종확인완료 전에 '보기' 버튼 클릭하여 PDF파일이 제대로 업로드 되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PDF 파일 업로드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여권번호, 계좌번호 등)가 포함된 경우 파일 업로드 불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제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의 형태를 포함한 경우 업로드 불가 (예: '20260101-20260118'의 날짜를 입력하는 경우 '2026.01.01.-2026.01.18.' 형태로 변경 후 업로드 (개인정보 형태는 파일 업로드 시 팝업창에서 확인 가능)) </p>
<p>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PDF) (대학, 전문대학)</p>	<p>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준일은 규정(지침) '개정일'(규정(지침)에 명시된 최종 개정본의 개정일) - 기준일은 최종 개정본에 명시된 개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로 함 - 규정(지침)이 개정되면 30일 이내에 수시공시 오픈 요청을 통하여 PDF, 개정일 및 시행일 모두 변경해야 함 - 개정에 따른 시행일이 복수인 경우, 최초 시행일을 기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시 내용 : 학교규칙, 연구윤리규정(지침)만 공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정된 규정(지침)을 공시하는 경우 이전자료 삭제 후 '최종자료(최신 개정본)'만 업로드 후 공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분교 및 캠퍼스 모두 하나의 학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본교에 통합공시 가능 ※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분교 및 모든 캠퍼스 비교련에 반드시 '통합 공시'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되지 않는 경우 누락 착오 입력으로 간주 </p>
<p>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PDF) (대학원, 대학원대학)</p>	<p>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준일은 규정(지침) '개정일'(규정(지침)에 명시된 최종 개정본의 개정일) - 기준일은 최종 개정본에 명시된 개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로 함 - 규정(지침)이 개정되면 30일 이내에 수시공시 오픈 요청을 통하여 PDF, 개정일 및 시행일 모두 변경해야 함 - 개정에 따른 시행일이 복수인 경우, 최초 시행일을 기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시 내용 : 학교규칙, 연구윤리규정(지침), 학위수여(취득) 규정(지침) ※ 학위수여(취득)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지침)이 있는 경우 추가 공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정된 규정(지침)을 공시하는 경우 이전자료 삭제 후 '최종자료(최신 개정본)'만 업로드 후 공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특수, 전문대학원 모두 하나의 규정(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대부 대학원에 통합공시 가능 ※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대학원 비교련에 반드시 '통합 공시'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되지 않는 경우 누락 착오 입력으로 간주 </p>

공시 항목	내 용
<p>3-가-1. 신입생 모집요강[PDF] (대학)</p>	<p>☑ 기준일은 모집요강 '확정일 및 변경일(간접입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요강 확정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수시 모집요강은 5월 말, 정시 모집요강은 9월 초이며(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2%이내) 전형 포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에서 연계 예정(최초 연계) - 모집요강 변경일: 모집요강 확정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시기('시행계획 변경승인 공문' 수신일) <p>※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사이버대학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만 직접 입력이며, 이 대학의 모집요강 확정일은 대학에서 학생 모집을 위하여 모집요강이 확정된 시기(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p> <p>※ 최초 연계 이후 대학이 사전 예고한 시행계획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수시공시 오픈요청(수정) 및 정정 기능(간접 입력 후 일괄연계)</p>
<p>3-가-1. 신입생 모집요강[PDF] (전문대학)</p>	<p>☑ 기준일은 모집요강 '확정일(간접입력) 및 변경일(직접입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요강 확정일: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수시 및 정시 모집요강은 8월 초이며(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2%이내) 전형 포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입학정보시스템)에서 연계 예정(최초 연계) - 모집요강 변경일: 모집요강 확정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시기('시행계획 변경승인 공문' 수신일) <p>※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기능대학, 사이버대학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만 직접입력이며, 이 대학의 모집요강 확정일은 전문대학에서 학생 모집을 위하여 모집요강이 확정된 시기(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p> <p>※ 최초 연계 이후에는 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시행계획 변경승인 공문'을 첨부하여 수시공시 오픈요청(수정) 및 정정 기능(직접입력)</p>
<p>3-가-1. 신입생 모집요강[PDF] (대학원, 대학원대학)</p>	<p>☑ 기준일은 모집요강 '확정일 및 변경일(직접입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요강 확정일: 대학에서 학생 모집을 위하여 모집요강이 확정된 시기(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 - 모집요강 변경일: 모집요강 확정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시기(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 <p>※ 모집요강 확정 및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수시공시 오픈요청을 통하여 공시(직접입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요강 확정 시, 추가 버튼 생성 후 제목, 파일 첨부 후 공시 - 기존 모집요강 내용 변경 시, 기존 공시내용의 제목란에 변경여부를 표시하고, 모집요강 파일을 교체 - 기준연도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신 기준연도를 명시 (예시 2025학년도 2학기 및 2026학년도 1학기 모집요강의 경우 기준연도는 '2026') <p>※ 전기 및 후기 신입생 선발에 대한 정규 학위 과정 모집요강 공시(추가모집요강 미공시)</p>
<p>3-가-2. 편입생 모집요강[PDF]</p>	<p>☑ 기준일은 모집요강 '확정일 및 변경일(직접입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요강 확정일: 대학에서 학생 모집을 위하여 모집요강이 확정된 시기(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 - 모집요강 변경일: 모집요강 확정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시기(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 <p>※ 모집요강 확정 및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수시공시 오픈요청을 통하여 공시(직접입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요강 확정 시, 추가 버튼 생성 후 제목, 파일 첨부 후 공시 - 기존 모집요강 내용 변경 시, 기존 공시내용의 제목란에 변경여부를 표시하고, 모집요강 파일을 교체 - 기준연도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신 기준연도를 명시 (예시 2025학년도 2학기 및 2026학년도 1학기 모집요강의 경우 기준연도는 '2026') <p>※ 편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전형을 실시할 예정인 모집요강(추가모집요강 미공시)</p>
<p>9-가-2.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PDF]</p>	<p>☑ 기준일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일이 복수인 경우 최초 개최일을 기재 <p>☑ 당해연도에 개최한 모든 회의록은 회의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PDF파일을 차수별 모두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 시스템에 탑재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과는 관련 없음(연계되지 않음)
<p>10-가.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p>	<p>☑ 기준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 사항: 감사 처분 결과 통보일 및 행정처분위원회 확정 처분 통보일(공문 수신일), 재심의 신청 결과 통보일(공문 수신일) <p>※ 사전 통지가 아닌 확정 통보에 따라 공시</p>

공시 항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 결과: 조치 결과 발송일(공문 발송일) ※ 단, 처분 받은 기관으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아 진행경과가 달라지는 경우,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 경과 수정 공시 ☑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관실 감사, 행정처분위원회 결과로 처분 받은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 및 조치 결과 입력 ☑ 처분일 및 조치완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일은 처분 받은 일자(년, 월) 기재, 처분일이 공문(붙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분 통보일(결재문서 내 시행일) - 조치완료일은 조치완료 일자(년, 월)를 기재 ☑ 진행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에 따른 진행 경과 입력(이행완료/이행중결/정상이행(이행 중)/미이행 중 택 1) - 진행경과가 정상이행(이행 중), 미이행인 경우에는 조치완료일 미입력 ☑ 처분은 감사 및 행정처분위원회 결과로 받은 처분 내용, 조치 결과는 처분에 따른 학교 이행 사항 기재 ☑ 정상이행(이행 중), 미이행 건은 이행연도까지 연도별 계속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연도에 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정상이행(이행 중), 미이행) 또는 처분 연도와 조치 완료 연도가 다른 경우, 처분 연도부터 조치완료 연도까지 계속 공시 → 예시) 2023년에 처분을 받아 2026년에 조치완료를 한 경우에는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모두 공시, 또한 조치완료가 이루어진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진행경과, 조치결과 및 조치 완료일 모두 수정 공시 ※ 추가 소명 등으로 처분내역 취소 시, 기존에 공시한 처분내역 삭제
<p>11-가-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PD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일은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확정일'(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학 및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대학원)별로 구분하여 수립된 발전 계획 및 특성화계획 입력 ☑ 일반, 특수, 전문대학원 모두 하나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대표 대학원에 통합 공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대학원 비교란에 반드시 '통합 공시'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되지 않는 경우 누락 착오 입력으로 간주 ☑ 확정된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이전자료 삭제 후 '최신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만 업로드 후 공시
<p>14-가. 정관[PD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일은 정관 개정일(이사회 의결일, 승인일) ☑ 시행일은 정관 변경 사항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변경 사항은 이사회 의결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관부처(교육부 등) 승인일이 개정일 또는 시행일이 아님(교육부 등 소관부처에 보고해야 하므로, 보고 및 승인과는 무관) - 단, 국립대학법인, 특별법법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소관부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관부처장의 인가받은 날을 개정일로 봄 - 개정에 따른 시행일이 복수인 경우, 최초 시행일을 장표에 기재 ☑ 개정된 정관을 공시하는 경우 이전자료 삭제 후 '최종자료(최종 개정본)' 업로드 후 공시
<p>14-나. 법인의 임원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일은 '임원 현황 변동일(소관부처로부터 승인받은 관련 공문(임원 취임 승인 통보 등)에 명시된 임원 임기 개시일 및 임기 만료 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임기 개시일이 소관부처(교육부 등) 승인 공문 수신일보다 이전인 경우(임원 현황 변동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공문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시항목접수계시판에 오픈 요청 - 임기 중 임원이 면직된 경우, 이사회 승인일 기준 30일 이내에 오픈 요청 (단, 임기 중 임원이 사임하였으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 사임일 익일 기준 30일 이내에 오픈 요청) - 기존 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기간으로 수정 공시 (사직일은 이사회 승인일 기준) - 기간 연장 임원에 대해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연장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우선 삭제 후 기간 연장 시작일 기준 재공시 ☑ 임기는 년, 월, 일까지 기재

공시 항목	내 용																																																							
14-자-1. 대학 자체평가 결과[PDF]	<p>☑ 기준일은 자체평가 보고서 '확정일'(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대학원 자체평가 별도 공시 - 자체평가 보고서 PDF 파일 형태로 공시(원본 또는 요약본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공시) - 대학기관평가인증 제출 보고서는 자체평가 보고서로 같음하여 공시 가능 - 대학기본역량진단 제출 보고서는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분석·평정이 아니므로 대학 자체평가로 인정하지 않음 - 교육대학의 경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보고서'는 대학자체평가로 인정 - 확정된 자체평가 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이전자료 삭제 후 '최신 자체평가 결과'만 업로드 후 공시 																																																							
14-자-2. 대학 평가인증 현황	<p>☑ 기준일은 '인증 기간 (갱신)시작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기간 (갱신)시작일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결과 통보받은 공문(평가인증 결과 통보 등)에 명시된 인증 기간 시작일(관련 기관으로부터 결과 통보받은 공문 수신일이 기준일이 아님) - 갱신된 인증 현황 중 기한이 변경된 경우(시작일 변동 없는 기한 연장, 축소 등) 또는 인증 기간 (갱신)시작일이 결과 통보 공문 수신일보다 이전인 경우, 공문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시항목접수계사판에 오픈 요청 - 조건부인증으로 이의신청할 경우, 조건부인증 결과 통보받은 공문에 명시된 인증 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먼저 공시 후, 추후 인증 결과에 따라 수정 공시 - 인증이 당해연도 종료될 경우, 당해연도까지는 해당 인증 현황 공시(단, 차년도로 이관되지 않음) → 예시) 간호학 인증이 갱신 없이 2026. 6. 30자로 종료될 경우, 2026년까지는 공시 유지, 2027년 공시부터 삭제 <p>☑ 인증 분야: 간호학, 건축학, 경영학, 공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보건의료정보관리학, 약학, 수의학, 기관인증</p> <table border="1" data-bbox="469 1003 1433 1877"> <thead> <tr> <th>구분</th> <th>인증분야</th> <th>인증기관</th> <th colspan="2">홈페이지 주소 및 메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관인증</td> <td>기관인증 (대학)</td> <td>한국대학평가원</td> <td>aims.kcue.or.kr/</td> <td>인증대학현황)인증대학</td> </tr> <tr> <td>기관인증 (전문대학)</td> <td>고등직업교육인증원</td> <td>www.kave.or.kr/</td> <td>평가인증 현황)인증대학 현황</td> </tr> <tr> <td rowspan="10">교육과정 프로그램</td> <td>간호학</td> <td>한국간호교육평가원</td> <td>www.kabone.or.kr/</td> <td>주요사업)간호교육인증평가)사업실적</td> </tr> <tr> <td>건축학</td> <td>한국건축교육인증원</td> <td>www.kaab.or.kr/</td> <td>인증현황)인증프로그램</td> </tr> <tr> <td>경영학</td> <td>한국경영교육인증원</td> <td>www.kabea.or.kr/</td> <td>경영교육인증)인증현황</td> </tr> <tr> <td>공학</td> <td>한국공학교육인증원</td> <td>www.abee.or.kr/</td> <td>인증현황)인증프로그램</td> </tr> <tr> <td>의학</td> <td>한국의학교육평가원</td> <td>www.kimee.or.kr/</td> <td>의학교육평가인증)평가인증현황) 대학별인증현황</td> </tr> <tr> <td>치의학</td> <td>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td> <td>www.kidee.org/</td> <td>치의학교육평가인증)현황</td> </tr> <tr> <td>한의학</td> <td>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td> <td>www.ikmee.or.kr/</td> <td>한의학교육평가인증사업) 평가인증연도별현황</td> </tr> <tr> <td>보건의료 정보관리학</td> <td>한국보건의료 정보관리교육평가원</td> <td>www.kahime.or.kr/</td> <td>평가·인증사업)평가·인증현황</td> </tr> <tr> <td>약학</td> <td>한국약학교육평가원</td> <td>www.kacpe.or.kr/</td> <td>소식 및 자료)공시사항) 평가인증 결과 공고</td> </tr> <tr> <td>수의학</td> <td>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td> <td>www.abovek.or.kr/</td> <td>인증원소개)인증현황</td> </tr> </tbody> </table>	구분	인증분야	인증기관	홈페이지 주소 및 메뉴		기관인증	기관인증 (대학)	한국대학평가원	aims.kcue.or.kr/	인증대학현황)인증대학	기관인증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인증원	www.kave.or.kr/	평가인증 현황)인증대학 현황	교육과정 프로그램	간호학	한국간호교육평가원	www.kabone.or.kr/	주요사업)간호교육인증평가)사업실적	건축학	한국건축교육인증원	www.kaab.or.kr/	인증현황)인증프로그램	경영학	한국경영교육인증원	www.kabea.or.kr/	경영교육인증)인증현황	공학	한국공학교육인증원	www.abee.or.kr/	인증현황)인증프로그램	의학	한국의학교육평가원	www.kimee.or.kr/	의학교육평가인증)평가인증현황) 대학별인증현황	치의학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www.kidee.org/	치의학교육평가인증)현황	한의학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www.ikmee.or.kr/	한의학교육평가인증사업) 평가인증연도별현황	보건의료 정보관리학	한국보건의료 정보관리교육평가원	www.kahime.or.kr/	평가·인증사업)평가·인증현황	약학	한국약학교육평가원	www.kacpe.or.kr/	소식 및 자료)공시사항) 평가인증 결과 공고	수의학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www.abovek.or.kr/	인증원소개)인증현황
구분	인증분야	인증기관	홈페이지 주소 및 메뉴																																																					
기관인증	기관인증 (대학)	한국대학평가원	aims.kcue.or.kr/	인증대학현황)인증대학																																																				
	기관인증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인증원	www.kave.or.kr/	평가인증 현황)인증대학 현황																																																				
교육과정 프로그램	간호학	한국간호교육평가원	www.kabone.or.kr/	주요사업)간호교육인증평가)사업실적																																																				
	건축학	한국건축교육인증원	www.kaab.or.kr/	인증현황)인증프로그램																																																				
	경영학	한국경영교육인증원	www.kabea.or.kr/	경영교육인증)인증현황																																																				
	공학	한국공학교육인증원	www.abee.or.kr/	인증현황)인증프로그램																																																				
	의학	한국의학교육평가원	www.kimee.or.kr/	의학교육평가인증)평가인증현황) 대학별인증현황																																																				
	치의학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www.kidee.org/	치의학교육평가인증)현황																																																				
	한의학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www.ikmee.or.kr/	한의학교육평가인증사업) 평가인증연도별현황																																																				
	보건의료 정보관리학	한국보건의료 정보관리교육평가원	www.kahime.or.kr/	평가·인증사업)평가·인증현황																																																				
	약학	한국약학교육평가원	www.kacpe.or.kr/	소식 및 자료)공시사항) 평가인증 결과 공고																																																				
	수의학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www.abovek.or.kr/	인증원소개)인증현황																																																				

2026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IV

대학정보공시 작성 지침

주요 용어 설명

1. **단과대학** : 대학의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
2. **학 과** : 대학의 학칙(부칙)에 의거한 학과
3. **구 분** : [주간, 야간, 계절제, 원격]으로 구분
4. **학과특성** : [일반과정, 산업체유탁, 계약학과, 계약학과(학사학위전공심화), 학사학위전공심화(경력있음), 학사학위전공심화(경력없음),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석사통합과정, 산학협력취업약정제, 특별과정]으로 구분
5. **학과상태** : [기존, 신설, 폐지, 변경, 통합, 분리]로 구분

0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PDF]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수시

【공시시기】: 수시(규정(지침)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공시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학교규칙, 연구윤리규정(지침)

【공시양식】: 제목과 목차 및 최종 개정본의 시행일을 명시한 학교의 자체 양식(PDF 파일 형태)

■ 작성지침

【학교규칙】: 학교 설립 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한 학교규칙(예: 「고등교육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

【연구윤리규정(지침)】: 대학 내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학교 규정(지침)(「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대학 등의 조치)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지침) 등)

【개정일】: 규정(지침)에 명시된 최종 개정본의 개정일

【시행일】: 규정(지침)에 명시된 최종 개정본의 시행일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개정된 규정(지침)을 공시하는 경우 이전자료 삭제 후 '최종자료(최신 개정본)'만 업로드 후 공시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수시

【공시시기】: 수시(규정(지침)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공시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학교규칙, 연구윤리규정(지침), 학위수여(취득) 규정(지침)

【공시양식】: 제목과 목차 및 최종 개정본의 시행일을 명시한 학교의 자체 양식(PDF 파일 형태)

■ 작성지침

【학교규칙】: 학교 설립 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한 학교규칙(예: 「고등교육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

【연구윤리규정(지침)】: 대학 내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학교 규정(지침)(「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대학 등의 조치)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지침) 등)

【학위수여(취득) 규정(지침)】: 대학원별 학위수여(취득) 규정(지침)

※ 학위수여(취득)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지침)이 있는 경우 추가 공시

【개정일】: 규정(지침)에 명시된 최종 개정본의 개정일

【시행일】: 규정(지침)에 명시된 최종 개정본의 시행일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개정된 규정(지침)을 공시하는 경우 이전자료 삭제 후 '최종자료(최신 개정본)'만 업로드 후 공시

0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2-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2-가-1. 전공과목 성적 분포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2026년 8월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2025년 학과별, 학기별 성적평가 결과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6. 4. 1.)

(단위: 명, %)

기준연도	단과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특성	학기	성적인정 학생총수	만점 평점	등급	학생 수	비율(%)
					1					
					2					
					3					
					4					
					여름계절학기					
					겨울계절학기					

■ 작성지침

【학기】: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라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 포함

【조사대상】: 전공성적으로 인정받는 성적만 입력, 전공성적 외로 인정받는 일반선택 성적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전공성적이더라도 PASS/FAIL 과목은 성적평가 결과 산출 시 제외

【대상학생】: 본교에 학적을 둔 정규 학위과정 학생(외국인 학생 포함)의 성적만 입력

※ 시간제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연수생) 등 비학위과정이나 본교에 학적을 두지 않은 학생, 수료생의 성적은 입력에서 제외

※ 타대학과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

【성적인정학생총수】: 2025년 학기별 전공성적으로 인정받은 전 학년 학생 수의 총합

(예: 경영학과에서 A과목을 전공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20명, B과목을 전공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50명일 경우, 경영학과의 전공성적인정학생총수는 70명으로 기입)

※ 과목 개설학과 기준이 아닌 학생의 자료기준일 소속학과 기준으로, 학생이 인정받은 성적 기준으로 입력

예시

1. 교육학과 학생 A가 2025년 1학기에 '경영학원론'을 '일반선택'으로 들었고, 1학기 성적표에 '일반선택' 학수코드로 성적을 부여받았음. 1학기 이후 경영학과 다전공 신청 및 학수코드 변경 신청을 하여 '경영학원론' 학수코드가 '전공필수'로 변경되었음
- 올바른 예: 2026년 4월 기준으로 2025년 1학기 '경영학원론' 학수코드는 '전공필수'이므로, 전공과목 성적평가 분포에 반영(O)

예시

- 잘못된 예 : 2025년 1학기 최종성적 산출 시점에 '일반선택'이었으므로, 전공과목 성적평가 분포에 반영하지 않음(×)
- 2. 경영학과 학생 B가 2025년 1학기 '전공기초'인 '경영학원론'의 성적이 C가 나왔음. 잘 안나온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2학기에 동일한 '전공기초'인 '경영학원론'을 재수강하여 성적 A를 받았음
 - 올바른 예 : 1학기 성적 C는 1학기에 입력하고, 2학기 성적 A는 2학기에 입력함. 단, 1학기 성적의 기록이 삭제되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재수강한 2학기 성적 A만 입력함(O)
- 3. 경영학과 학생 C가 2025년 2학기에 컴퓨터학과로 전과를 하였음
 - 올바른 예 : 1, 2학기 성적을 모두 현재 학생의 소속학과인 컴퓨터학과에 입력함(O)
 - 잘못된 예 : 1학기 성적은 경영학과에, 2학기 성적은 컴퓨터학과에 입력함(×)
- 4. 학칙상 타과 전공을 수강하여 획득한 성적은 일반선택 성적으로 분류되는 학교에서, A학과에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B학과 학생이 수강하여 일반선택 성적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 입력에서 제외
- 5. 학칙상 타과 전공을 수강하여 획득한 성적은 교양과목 성적으로 분류되는 학교에서, A학과에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B학과 학생이 수강하여 교양성적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 2-가-2. 교양성적 분포에 등급별로 인원을 기입
- 6. 타대학교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부여받은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
 (A대학의 학생이 B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A대학에서 전공성적으로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 A대학 학생의 소속학과 전공성적에 기입함. B대학에서는 기입하지 않음)

【만점평점】: 4.0/4.3/4.5제

【등급】: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등급, 성적인정학생총수를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입력

【비율(%)]: (해당 등급 성적인정학생 수 / 성적인정학생총수) × 100,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 참고사항

- 성적평가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2-가-1.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2026년 8월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2025년 학과별 학기별 성적평가 결과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6. 4. 1.)

(단위: 명, %)

기준연도	단과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특성	학기	성적인정 학생총수	만점 평점	등급	학생 수	비율(%)
					1					
					2					
					3					
					4					
					여름계절학기					
					겨울계절학기					

■ 작성지침

【학기】: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라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 포함(대학원의 이수학기가 아님)

【조사대상】: 전공 및 교양, 교직, 일반선택 등으로 인정받는 모든 성적 입력

※ PASS/FAIL 과목은 성적평가 결과 산출 시 제외

【대상학생】: 본교에 학적을 둔 정규 학위과정 학생(외국인 학생 포함)의 성적만 입력

※ 시간제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연수생) 등 비학위과정이나 본교에 학적을 두지 않은 학생, 수료생의 성적은 입력에서 제외

※ 타대학과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

【성적인정학생총수】: 2025년 학기별 평점평균을 획득한 전 학생 수의 총합

※ 석·박사 구분 없이 학생의 소속기준으로 성적을 취득한 학생수를 입력함

【만점평점】: 4.0/4.3/4.5제

【등급】: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등급, 성적인정학생총수를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입력

【비율(%)】: (해당 등급 성적인정학생 수 / 성적인정학생총수) × 100,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 참고사항

- 성적평가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2-가-2. 교양과목 성적 분포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2026년 8월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2025년 학기별 성적평가 결과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6. 4. 1.)

(단위: 명, %)

기준연도	학기	성적인정학생총수	만점명점	등급	학생 수	비율(%)
	1					
	2					
	3					
	4					
	여름계절학기					
	겨울계절학기					

■ 작성지침

[학기]: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라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 포함

[조사대상]: 교양성적으로 인정받는 성적만 입력, 교양성적 외로 인정받는 일반선택 성적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교양성적이더라도 PASS/FAIL 과목은 성적평가 결과 산출 시 제외

[대상학생]: 본교에 학적을 둔 정규 학위과정 학생(외국인 학생 포함)의 성적만 입력

※ 시간제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연수생) 등 비학위과정이나 본교에 학적을 두지 않은 학생, 수료생의 성적은 입력에서 제외

※ 타대학과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

[성적인정학생총수]: 2025년 학기별 교양성적으로 인정받은 전 학년 학생 수의 총합

(예: A과목을 교양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20명, B과목을 교양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50명일 경우, 교양성적 인정학생총수는 70명으로 기입)

예시

- 교육학과 학생이 2025년 1학기 '선택교양'인 '심리학의 이해'의 성적이 C가 나왔음. 잘 안나온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2학기에 동일한 '선택교양'인 '심리학의 이해'를 재수강하여 성적 A를 받았음
 - 올바른 예: 1학기 성적 C는 1학기에 입력하고, 2학기 성적 A는 2학기에 입력함. 단, 1학기 성적의 기록이 삭제되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재수강한 2학기 성적 A만 입력함(O)
- 학칙상 타과 전공을 수강하여 획득한 성적은 교양과목 성적으로 분류되는 학교에서, A학과에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B학과 학생이 수강하여 교양성적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 등급별로 인원을 입력함
- 타대학과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부여받은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
(A대학의 학생이 B대학에서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A대학에서 교양 성적으로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 A대학의 교양 성적에만 기입함. B대학에서는 기입하지 않음)

【만점평점】: 4.0/4.3/4.5제

【등급】: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등급, 성적인정학생총수를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입력

【비율(%)] : (해당 등급 성적인정학생 수 / 성적인정학생총수) × 100,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 참고사항

- 성적평가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2-가-3. 교직과목 성적 분포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2026년 8월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2025년 학기별 성적평가 결과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6. 4. 1.)

(단위: 명, %)

기준연도	학기	성적인정 학생총수	만점명점	등급	학생 수	비율(%)
	1					
	2					
	3					
	4					
	여름계절학기					
	겨울계절학기					

■ 작성지침

【학기】: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라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 포함

【조사대상】: 교직성적으로 인정받는 성적만 입력, 교직성적 외로 인정받는 일반선택 성적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교직성적이더라도 PASS/FAIL 과목은 성적평가 결과 산출 시 제외

【대상학생】: 본교에 학적을 둔 정규 학위과정 학생(외국인 학생 포함)의 성적만 입력함

※ 시간제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연수생) 등 비학위과정이나 본교에 학적을 두지 않은 학생, 수료생의 성적은 입력에서 제외

※ 타대학과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

【성적인정학생총수】: 2025년 학기별 교직성적으로 인정받은 전 학년 학생 수의 총합

(예: A과목을 교직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20명, B과목을 교직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50명일 경우, 교직성적 인정학생총수는 70명으로 기입)

예시

- 수학교육과 학생이 2025년 1학기 '교직'인 '교육학개론'의 성적이 C가 나왔음. 잘 안나온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2학기에 동일한 '교직'인 '교육학개론'을 재수강하여 성적 A를 받았음
 - 올바른 예: 1학기 성적 C는 1학기에 입력하고, 2학기 성적 A는 2학기에 입력함. 단, 1학기 성적의 기록이 삭제되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재수강한 2학기 성적 A만 입력함(O)
- 타대학과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부여받은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에만 성적을 기입
(A대학의 학생이 B대학에서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A대학에서 교직성적으로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 A대학의 교직 성적에만 기입함. B대학에서는 기입하지 않음)

【만점평점】: 4.0/4.3/4.5제

【등급】: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등급, 성적인정학생총수를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입력

【비율(%)】: (해당 등급 성적인정학생 수 / 성적인정학생총수) × 100,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 참고사항

- 성적평가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2-가-4.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2026년 8월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2025년 8월(후기) 졸업자(2025. 3. ~ 2025. 8.) 및 2026년 2월(전기) 졸업자(2025. 9. ~ 2026. 2.)의 졸업성적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5년 8월(후기) 졸업자 및 2026년 2월(전기) 졸업자의 졸업 성적)

(단위: 명, %)

기준 연도	단과대학	학과(전공)명	구분	학과 특성	졸업자수	만점평점	학과(전공)별 졸업 백분율점수 평균	백분율점수구간	학생 수	비율
								95점 이상~100점 이하		
								90점 이상~95점 미만		
								85점 이상~90점 미만		
								80점 이상~85점 미만		
								75점 이상~80점 미만		
								70점 이상~75점 미만		
								65점 이상~70점 미만		
								60점 이상~65점 미만		
								60점 미만		

■ 검증사항

【졸업자수】: <5-가>의 졸업자 수, 학위취득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졸업자】: 2025년 8월(후기) 졸업자(2025. 3. ~ 2025. 8.) 및 2026년 2월(전기) 졸업자(2025. 9. ~ 2026. 2.)

※ 시간제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연수생) 등 비학위과정이나 본교에 학적을 두지 않은 학생, 수료생의 성적은 입력에서 제외

【만점평점】: 4.0/4.3/4.5제

【학과(전공)별 졸업 백분율점수 평균】: 각 학과(전공)별 졸업자 학점당 백분율점수의 평균

※ 각 졸업자의 학점당 백분율점수는 학교 자체의 백분율점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계산

※ 산식: 학과(전공)별 졸업자 학점당 백분율점수의 합 / 학과(전공)별 졸업자 수

※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백분율점수구간】: 9개로 분류한 백분율점수구간에 각 졸업자의 학점당 백분율점수를 학생 수와 비율로 표시

【비율(%)】: (해당 백분율점수구간 졸업자 수 / 총 졸업자 수) × 100,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셋째자리까지 표시

■ 참고사항

- 성적평가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0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PDF]
- 3-나. 전임(專任) 입학사정관 현황
- 3-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입학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담당한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3-가-1. 신입생 모집요강[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2026년 5·9월(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공시시기】: 수시(모집요강 확정일 및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

【공시내용】: 당해연도에 확정된 입학안내 등 신입생 모집요강

【공시양식】: 학교의 자체 양식

■ 작성지침

【모집요강】: 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학기에 전형을 실시할 예정인 모집요강(학과(전공)입학정원, 지원자격 등을 포함)

※ 모집요강 확정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수시 모집요강은 5월 말, 정시 모집요강은 9월 초이며(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2%이내) 전형 포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에서 연계 예정(최초 연계)

※ 모집요강 변경일: 모집요강 확정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시기(시행계획 변경승인 공문 수신일)

※ 최초 연계 이후 대학이 사전예고한 시행계획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공시자료 수정 및 정정 가능(간접입력 후 일괄 연계)

※ 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모집요강, 정규 학위 과정만 공시(추가모집요강 미공시)

■ 참고사항

- 신입생 모집요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대학 수시 모집요강은 6월 공시, 정시 모집요강은 10월 공시에 연계 예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최초 연계 이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을 통해 간접입력(모집요강 확정일 및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3-가-1. 신입생 모집요강[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수시

【공시시기】: 수시(모집요강 확정일 및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공시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당해연도에 확정된 입학안내 등 신입생 모집요강

【공시양식】: 학교의 자체 양식(PDF 파일 형태)

■ 작성지침

【모집요강】: 해당 학기에 전형을 실시할 예정인 모집요강(학과(전공)입학정원, 지원자격 등을 포함)

※ 모집요강 확정일: 대학에서 학생 모집을 위하여 모집요강이 확정된 시기(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

※ 모집요강 변경일: 모집요강 확정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시기(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

※ 전기 및 후기 신입생 선발에 대한 정규 학위 과정 모집요강 공시(추가모집요강 미공시)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3-가-1. 신입생 모집요강[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2026년 8월(전문대학입학정보시스템)

【공시시기】: 수시(모집요강 확정일 및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직접입력

【공시내용】: 당해연도에 확정된 입학안내 등 신입생 모집요강

【공시양식】: 학교의 자체 양식

■ 작성지침

【모집요강】: 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학기에 전형을 실시할 예정인 모집요강(학과(전공)입학정원, 지원자격 등을 포함)

※ 모집요강 확정일 :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수시 및 정시 모집요강은 8월 초이며(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2%이내) 전형 포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입학정보시스템)에서 연계 예정(최초 연계)

※ 모집요강 변경일: 모집요강 확정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시기(시행계획 변경승인 공문 수신일)

※ 최초 연계 이후에는 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공시자료 수정 및 정정 가능(직접입력)

※ 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모집요강, 정규 학위 과정만 공시(추가모집요강 미공시)

■ 참고사항

- 신입생 모집요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입학정보시스템)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전문대학 수시 및 정시 모집요강은 8월 공시에 연계 예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최초 연계 이후에는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3-가-2. 편입생 모집요강[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수시

【공시시기】: 수시(모집요강 확정일 및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공시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당해연도에 확정된 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

【공시양식】: 학교의 자체 양식(PDF 파일 형태)

■ 작성지침

【모집요강】: 편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전형을 실시할 예정인 모집요강(지원자격,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방법, 전형일정, 지원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 추가모집요강 미공시)

※ 모집요강 확정일: 대학에서 학생 모집을 위하여 모집요강이 확정된 시기(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

※ 모집요강 변경일: 모집요강 확정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시기(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3-나. 전임(專任) 입학사정관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2026년 4~5월(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공시시기】: 2026년 6월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공정성팀)

【공시내용】: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참여한 입학사정관 수 및 전임 입학사정관의 정규직 비율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5. 10. 1.)

(단위: 명, %)

기준연도	구분	전임사정관				위촉사정관	총계
		채용사정관	교수사정관	전환사정관	소계		
	총 인원(명)						
	정규직 인원(명)					-	-
	정규직 비율(%)					-	-

■ 작성지침

【전임사정관-채용사정관】: 전임사정관으로 신규 채용한 입학사정관

【전임사정관-교수사정관】: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상시 학생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대학이 '입학사정관' 보직을 부여하여 책임시수를 감면하고, 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교수

※ 입학처(본부)장 및 학생선발 기간에만 참여하는 교수는 제외

【전임사정관-전환사정관】: 학교의 직원 중에서 전임사정관으로 발령된 입학사정관

※ 입학처 직원이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발령만 받은 경우는 제외

【위촉사정관】: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타대학 교수, 지역사회 인사, 퇴직한 교직원 등 입학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 중 학생선발 기간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학사정관으로 위촉된 자

【총 인원】: 해당 입학사정관 수

【정규직 인원】: 해당 입학사정관 중 정규직·무기계약직원 수

※ 위촉사정관은 기재하지 않음

【정규직 비율】: (정규직 인원 / 총 인원) × 100

※ 위촉사정관은 기재하지 않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예시: 66.666... → 66.67)

■ 참고사항

- 전임 입학사정관 현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3-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입학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담당한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2026년 4~5월(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공시시기】: 2026년 6월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공정성팀)

【공시내용】: 202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건수, 참여 입학사정관 수, 입학사정관 1명당 서류평가 건수

【공시양식】: 다음의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 시점)

(단위: 명, 건)

기준연도	구분	서류평가 참여 입학사정관 인원	모집인원	서류평가 대상인원	서류평가 건수	입학사정관 1명당 서류평가 건수
	전입사정관					
	위촉사정관					
	전체사정관					

■ 작성지침

【전입사정관】: 채용사정관 + 교수사정관 + 전환사정관

【위촉사정관】: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타대학 교수, 지역사회 인사, 퇴직한 교직원 등 입학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 중 학생선발 기간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학사정관으로 위촉된 자

【전체사정관】: 전입사정관 + 위촉사정관

【서류평가 참여 입학사정관 인원】: 입학사정관 중 202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의 수

【모집인원】: 모집요강을 통해 공고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

【서류평가 대상인원】: 지원자 중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대상자 수

【서류평가 건수】: 입학사정관별 실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건수 합

【입학사정관 1명당 서류평가 건수】: 서류평가 건수 / 서류평가 참여 입학사정관 인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예시: 66.666... → 66.67)

■ 참고사항

-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 항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총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 4-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 4-라. 학생 총원 현황(편입학 포함)
- 4-마. 재적 학생 현황
-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 4-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 4-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2026년 3~5월(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공시시기】: 2026년 6월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

【공시내용】: 2026학년도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공시양식】: 다음의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6년 3월 학기 신입생(3월 기준))

(단위: 명, %)

기준 연도	정원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대분류)	전형명 (중분류)	전형명 (소분류)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정원내													
	정원의외													
		합계												
		자율			최종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 원격대학은 '최종'만 입력, 기술대학은 본 항목 공시대상에서 제외

■ 검증사항

【최종 등록인원】: <4-나> 총 입학자, <4-자> 총 입학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전형유형별, 모집시기별(수시/정시"가"/정시"나"/정시"다"/추가/자율) 모집인원, 등록인원 및 등록률 기입

【전형유형】: 학생부위주(교과), 학생부위주(종합), 실기/실적위주, 수능위주, 논술위주, 기타 중 핵심 전형요소 위주로 구분

【전형명(대분류)】

- ① 전형명(대분류)은 지정(지정된 전형명칭은 변경하지 않음)
- ② 모집시기별로 구분하여 모두 표기
- ③ 일반전형: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 ④ 특별전형: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전형명(중분류)], 【전형명(소분류)】

- ① 일반학생 / 취업자 / 산업대학특별전형우선선발 / 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의,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 농어촌학생(정원의,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 / 특성화고졸업자(정원의,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정원의,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정원의,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 /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 / 서해 5도 학생(정원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자립지원대상자(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 북한이탈주민(정원의,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 만학도 / 성인학습자(정원의,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2의2호) / 지역인재(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정원의,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전 교육과정 이수자(정원의,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산업체위탁학생(정원의,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 계약학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 ② 사이버대학의 경우, 일반학생 / 특별전형(정원내) / 산업체·군위탁생(정원의) / 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의)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 기회균형선발(정원의) / 전 교육과정 이수자(정원의) 등은 전형명을 지정(전형명칭 변경하지 않음)
- ③ 특기분야 및 세부전형유형: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이 다른 각각의 특기분야 및 세부전형으로 구분하여 아래로 서식을 늘려서 활용하며, 모집인원은 특기분야 및 세부유형별로 구분 작성
- ④ 특기자 특별전형은 특기분야별 구분(어학 / 체육 / 컴퓨터 등)
- ⑤ 대학 독자적 기준 특별전형은 각 기준별 전형 구분(학생부교과우수자 / 학생부종합우수자 / 사회배려대상자(사회기여·봉사 등) / 학교장추천자 등)
- ⑥ 전형기간 자율화 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전 교육과정 이수자(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의 구분 없이 선발 일정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선발함

모집시기	모집인원	등록인원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일 기준 수시모집 모집인원	학기 개시일 전일 기준 수시모집 등록인원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일 기준 정시모집 모집인원	학기 개시일 전일 기준 정시모집 등록인원
추가	등록 마감일 기준 추가모집 모집인원	학기 개시일 전일 기준 추가모집 등록인원
지율	등록 마감일 기준 모집인원	학기 개시일 전일 기준 등록인원
최종	시행계획 수립 기준 모집인원	

【모집인원】: 당해연도 모집요강에서 공고하는 선발인원(단, 9월 학기 입학자 제외)

※ 학칙이 정하는 학년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따름

- ① 총모집인원 = 입학정원 + 이월인원 - 모집정지인원 - 초과선발인원 - 정원 유보 인원 + 재외국민 및 외국인(총 입학정원 2%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모집단위별 20% 이내) + 농어촌학생(총 입학정원 4%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 + 특성화고졸업자(총 입학정원의 1.5%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총 입학정원 5.5% 이내)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총 입학정원 11% 이내) + 서해 5도 학생(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총 입학정원 1% 이내, 모집단위별 5% 이내)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체위탁학생 + 계약학과 + 장애인 등 대상자 + 만학도(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 기타
- ② 총모집인원 (사이버대학) = 입학정원 + 이월인원 - 모집정지인원 - 사이버대학 3학년 별도편입학 입학정원 + 위탁생(총 입학정원 20% 이내)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2호)(총 입학정원 2% 이내) + 기회균형선발(총 입학정원 9% 이내) + 장애인 등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6호) + 전 교육과정 이수자(제7호) 등
- ③ 농어촌학생특별전형(정원의)은 총 입학정원의 4% 이내, 특성화고졸업자특별전형(정원의)은 총 입학정원의 1.5% 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정원외)은 총 입학정원의 2% 이내(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제외), 서해 5도 학생(정원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모집단위별 5% 이내)

※ 참고: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은 사전예고(시행계획)된 모집인원으로 하되, 해당 학년도의 실제 모집인원(모집단위별 모집인원 포함)은 추후 해당 모집시기 전에 공고되는 모집요강에서 당해 학년도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확정 변경됨

※ 모집인원의 제한이 없는 전형은, 해당 전형의 등록인원 수대로 모집인원을 입력

※ 최종 모집인원은 당초 계획(시행계획)된 인원 입력(수시, 정시, 추가 모집인원의 합이 아님)

【등록인원】: 2026학년도 입학전형 결과로 선발된 인원 중 등록을 완료한 인원수

※ 제외: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재입학 및 편입학,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 3학년 별도편입학자, 의학과/치위학과/한의학과외 본과 진급생 및 교육대학의 계절제 편입생

※ 계약학과는 재교육형/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인원 모두를 기재해야 함

【등록률(%)】: (등록인원 / 모집인원) × 100

※ 모집시기별 등록률은 동점자 발생 여부에 따라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외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2026년 3~5월(전문대학입학정보시스템)

【공시시기】: 2026년 6월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공시내용】: 2026학년도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공시양식】: 다음의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6년 3월 학기 신입생(3월 기준))

(단위: 명)

기준연도	정원구분	전형명	최종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정원내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	재외국민 및 외국인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졸 등 재직자			
		장애인 등			
		전문대학·대학졸업자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각종 외국인			
		서해 5도 학생			
		기타 전형			
	합계				

■ 검증사항

【최종 등록인원】: <4-나> 총 입학자, <4-자> 총 입학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입학전형 유형별 등록 현황】: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등록인원 및 등록률 기입

【전형명】

- ① 전형유형은 지정(지정된 전형명칭은 변경하지 않음)
- ② 일반전형: 특별한 재능이나 특기, 수상경력 등을 지원자격으로 제한하지 않는 전형

【모집인원】: 당해연도 모집요강에서 공고하는 선발인원(단, 9월 학기 입학자 제외)

- ※ 학칙이 정하는 학년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따름
- ※ 총모집인원 = 정원내 모집인원 + 정원의 모집인원

【정원내 모집인원】: 정원내 모집인원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

【정원의 모집인원】: 정원의 모집인원 = 재외국민 및 외국인(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총 입학정원 2%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 + {농어촌학생(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 총 입학정원 4%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 총 입학정원 농어촌 포함한 5.5% 이내, 모집단위별 20% 이내) + 특성화고졸 등 재직자(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총 입학정원 농어촌 및 기초생활포함한 11% 이내, 보건, 의료, 유아교육과 모집금지) +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간호과: 모집단위별 30% 이내, 기타보건계열: 모집단위별 10% 이내) + 장애인 등(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총 입학정원 5% 이내, 간호과: 모집단위별 5% 이내, 기타보건계열: 모집단위별 5% 이내. 단, 지방전문대학만 모집 가능) + 각종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서해 5도 학생(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모집단위별 5% 이내) + 기타 전형(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 및 5항, 총 입학정원 10%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

※ 모집인원의 제한이 없는 전형은, 해당 전형의 입학자 수대로 모집인원을 입력

※ 참고: 사전예고 시의 모집인원은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으로 하며, 해당 학년도의 실제 모집인원은(모집단위별 모집인원 포함) 추후 해당 모집시기 전에 공고되는 모집요강에서 당해 학년도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확정 변경됨

【등록인원】: 2026학년도 입학전형 결과로 선발된 인원 중 등록을 완료한 인원수만 기입

※ 제외: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재입학 및 편입학, 산업체위탁과정, 군위탁과정, 계약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 석사과정

【등록률(%): (등록인원 / 모집인원) × 100

■ 참고사항

-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입학정보시스템)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4-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2026년 3~5월(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공시시기】: 2026년 6월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

【공시내용】: 2026학년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해당하는 선발 결과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6년 3월 학기 신입생(3월 기준))

(단위: 명, %)

기준 연도	총 입학자 (A)	합계 (B)	기회 균형 선발 결과																	
			제1호																	
			장애인 등 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원내	정원외	소계	정원내	정원외	소계	정원내	정원외	소계	정원내	정원외	소계	정원내	정원외	소계	정원내	정원외	소계			

기회 균형 선발 결과															기회 균형 선발 비율(% (B/A×100))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아동복지 보호(종료) 대상자 등				북한이탈주민 또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민학도 (성인학습자)	
정원내	정원외	소계	정원내 합계	정원외 합계	소계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소계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소계	정원내	정원외	소계				

※ 기술대학은 본 항목 공시대상에서 제외

■ 검증사항

【총 입학자】: <4-가> 최종 등록인원, <4-자> 총 입학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기회 균형 선발】: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제1항 각호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구체적으로는 위 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의미

【총 입학자】: 2026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 정원내와 정원외를 포함

【제1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14호 각 목의 사람

【1호_장애인 등 대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의거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한 지원자격에 따른 대상자

참고

- 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 한자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참고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호: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 ※ 장애 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다. 국가 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 등급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1호_농어촌학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의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 【1호_특성화고 졸업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에 의거 특성화고(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졸업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입학한 자
- 【1호_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의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
- 【1호_기초생활수급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 【1호_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1호_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참고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법 제4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2호_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3호_서해5도학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한 각호의 사람
- 【4호_아동복지보호(종료) 대상자】: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 ※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보호조치가 종료 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호_북한이탈주민 및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6호_만학도(성인학습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차등적 보상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의 5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
- ※ 만학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2의2호에 따른 성인학습자
- 【기회 균형 선발 비율(%)】: (기회 균형 선발에 의한 입학자 수 / 총 입학자 수) × 100

■ 참고사항

- 기회 균형 선발 결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외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4-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2026년 3~5월(전문대학입학정보시스템)

【공시시기】: 2026년 6월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공시내용】: 2026학년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해당하는 선발 결과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6년 3월 학기 신입생(3월 기준))

(단위: 명, %)

기준연도	총 입학자 (A)	기회 균형 선발 결과							
		합계 (D=B+C)	정원외						
			소계 (B)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졸 등 재직자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 학생

기회 균형 선발 결과			기회 균형 선발 비율(%) (D/A×100)
정원내			
소계 (C)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명	...	

4. 정원외 지원생 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사항

■ 검증사항

【총 입학자】: <4-가> 최종 등록인원, <4-자> 총 입학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기회 균형 선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에 의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해당하는 선발이며, 구체적으로는 위 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의미

【총 입학자】: 2026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 정원내와 정원외를 포함

※ 제외: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재입학 및 편입학, 산업체위탁과정, 군위탁과정, 계약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전문 기술석사과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정원외로 입학한 자

참고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참고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법 제4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농어촌 학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의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으로 정원의외로 입학한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특성화고졸 등 재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의거 1년 이상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및 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로 정원의외로 입학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장애인 등 대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의거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여 정원의외로 입학한 자

참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정원의외 입학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호: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 장애 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서해5도학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서해 5도 출신 학생 중 정원의외로 입학한 자

【대학 독자적 기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 대상자로서 정원의외로 입학한 자

(예: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2)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3) 다문화·다자녀가정의 자녀, 4) 농어촌학교 출신자, 5) 농어민 후계자 및 자녀, 6)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자녀, 7)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8) 기타)

※ 사회봉사자, 만학도, 주부, 검정고시 출신자, 지역할당 등의 전형은 해당하지 않음

※ 전형명은 학교 자체 전형명을 기입하고, 해당 입학자 수를 기입

【기회 균형 선발 비율(%): (기회 균형 선발에 의한 입학자 수 / 총 입학자 수) × 100

■ **참고사항**

- 기회 균형 선발 결과(정원의외)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입학정보시스템)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기회 균형 선발 결과(정원내)는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2026년 8월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2026년 신입생 총원 현황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입학정원) 2026년 신입생 입학정원, (입학자) 2026년 3월 학기 신입생(4월 기준))

(단위: 명, %)

기준 연도	단과대학	학과 (모집단위)	구분	학과 특성	입학 정원 (A)	모집인원			지원자			입학자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D/B)×100	경쟁률 (C/B)
						계	정원내 (B)	정원의외	계	정원내 (C)	정원의외	정원내(D)		정원의외			
												남	여	남	여		
		합계															

■ 작성지침

【학과(모집단위)】: 2026년 신입생이 있는 모든 학과

- ※ 학과는 '모집단위'를 의미(예: '국제학부'가 모집단위일 경우, 학과란에 '국제학부'로 입력)
- ※ 당해연도 2+4 약학대학 모집인원, 지원자, 입학자는 신입생 총원현황에 입력하지 않음

【입학정원】: 학칙에서 정한 2026학년도 신입생의 입학정원

【모집인원】: 당해연도 모집요강에서 공고하는 선발인원

- ※ 학칙에서 정한 모집단위별 학과에 입력
- ※ 총모집계획인원 = 정원내 모집인원 + 정원의외 모집인원
- ※ 모집인원은 해당 연도의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입력, 그러나 모집요강에 학과별로 정원의외 모집인원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
 1. 모집단위의 정원의외 모집인원의 총 수는 정해져 있지만 학과별 파악이 어려운 전형의 경우, '기타 모집단위'에 모집인원 입력
 2. 모집단위의 정원의외 모집인원 총 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전형의 경우, 실제 해당 학과로 입학한 학생수를 해당 학과 모집인원으로 입력
- ※ 제외: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정원내 모집인원】: 정원내 모집인원 = 입학정원 + 이월인원 - 모집정지인원

- ※ 모집인원과 입학정원이 불일치할 경우(예: 모집정지인원 발생, 이월인원 발생 등) 비고란에 사유 명시
- ※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 3학년 별도편입학 모집인원은 포함

【정원의외 모집인원】: 정원의외 모집인원 = 재외국민 및 외국인(총 입학정원 2%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모집단위별 20% 이내) + 농어촌학생(총 입학정원 4%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 + 특성화고교졸업자(총 입학정원의 1.5%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총 입학정원 5.5% 이내)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총 입학정원 11% 이내) + 서해 5도 학생(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모집단위별 5% 이내)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체위탁학생 + 계약학과(해당 학년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총 입학정원 20% 이내, 단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총 입학정원 50% 이내) + 장애인 등 대상자 + 기타

【지원자】: 2026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한 정원내, 정원의 지원자(수시 및 일반·특별전형 등의 지원자 포함)

- ※ 제외: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 ※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 3학년 별도편입 지원자는 포함

【입학자】: 2026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모집인원 미달로 추가 모집한 입학자 포함), 정원내와 정원외로 구분

- ※ 제외: 재입학 및 편입학,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 의 본과 진급생 및 교육대학의 계절제 편입생
- ※ 입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함
- ※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포함
- ※ 수업연한이 6년인 의학과로 신입학한 학생은 입학자로 포함

【정원내 입학자】: 정원내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

- ※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 3학년 별도편입학자는 포함

【정원의 입학자】: 전형유형에 따라 산업체위탁생, 계약학과, 군위탁생, 농어촌학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등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입학자 수 / 정원내 모집인원) × 100

【경쟁률】: (정원내 지원자 수 / 정원내 모집인원), 소수돌짜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 참고사항

- 신입생 충원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2026년 8월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2026년 신입생 충원 현황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입학정원) 2026년 신입생 입학정원, (입학자) 2025년 9월(후기)과 2026년 3월(전기) 학기 신입생)

(단위: 명)

기준연도	학위과정	입학정원 (A)	지원자				입학자					
			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B)		정원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총계											

■ 작성지침

【입학정원】: 학칙에서 정한 2026학년도 신입생의 입학정원

※ 입학정원을 학위과정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연도 상반기에 입학한 4.1. 기준 정원내 재학생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입력

【지원자】: 2025년 9월(후기)과 2026년 3월(전기)의 신입생 전형에 지원한 모든 지원자

※ 제외: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입학자】: 2025년 9월(후기)과 2026년 3월(전기)의 모든 입학자(연구생은 입학자에서 제외)

※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포함

■ 참고사항

- 신입생 충원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6년 신입생 총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입학정원) 2026년 신입생 입학정원, (입학자) 2026년 3월 학기 신입생(4월 기준))

(단위: 명, %)

기준 연도	단과대학	학과 (모집단위)	구분	학과 특성	입학 정원 (A)	모집인원			지원자			입학자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D/B)×100	경쟁률 (C/B)	
						계	정원내 (B)	정원외	계	정원내 (C)	정원외	계	정원내(D)		정원외			
													남	여	남			여
		합계																

■ 작성지침

【학과(모집단위)】 : 2026년 신입생이 있는 모든 학과

※ 학과는 '모집단위'를 의미(예: '국제학부'가 모집단위일 경우, 학과란에 '국제학부'로 입력)

【입학정원】 : 학칙에서 정한 2026학년도 신입생의 입학정원

【모집인원】 : 당해연도 모집요강에서 공고하는 선발인원(단, 9월 학기 입학자 제외)

※ 학칙에서 정한 모집단위별 학과에 입력

※ 총모집계획인원 = 정원내 모집인원 + 정원외 모집인원

※ 모집인원은 해당 연도의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입력, 그러나 모집요강에 학과별로 정원의 모집인원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

1. 모집단위의 정원의 모집인원의 총 수는 정해져 있지만 학과별 파악이 어려운 전형의 경우, '기타 모집단위'에 모집인원 입력
2. 모집단위의 정원외 모집인원 총 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전형의 경우, 실제 해당 학과로 입학한 학생 수를 해당 학과 모집인원으로 입력

※ 제외: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정원내 모집인원】 : 정원내 모집인원 = 입학정원 - 모집정지인원

※ 모집인원과 입학정원이 불일치할 경우(예: 모집정지인원 발생, 이월인원 발생 등) 비교란에 사유 명시

※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 3학년 별도편입학 모집인원은 포함

【정원외 모집인원】 : 정원외 모집인원 = 재외국민 및 외국인(총 입학정원 2%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 + (농어촌학생(총 입학정원 4%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총 입학정원 농어촌 포함한 5.5% 이내, 모집단위별 20% 이내) + 특성화고졸 재직자(총 입학정원 농어촌 및 기초생활 포함 11% 이내, 보건, 의료, 유아교육과 모집금지)) +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간호과: 모집단위별 30% 이내, 기타보건계열: 모집단위별

10% 이내) + 장애인 등 대상자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총 입학정원 5% 이내, 간호과: 모집단위별 5% 이내, 기타보건계열: 모집단위별 5% 이내, 단, 지방전문대학만 모집 가능) + 각종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서해 5도 학생(총 입학정원의 1% 이내, 모집단위별 5% 이내) + 기타 전형(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 및 5항, 총 입학정원 10%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 + 산업체위탁 + 계약학과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총 입학정원 20% 이내)

【지원자】 : 2026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한 정원내, 정원외 지원자(수시 및 일반·특별전형 등의 지원자 포함)

- ※ 제외: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 ※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 3학년 별도편입 지원자는 포함

【입학자】 : 2026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모집인원 미달로 추가 모집한 입학자 포함), 정원내와 정원외로 구분

- ※ 제외: 재입학 및 편입학
- ※ 입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함
- ※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포함

【정원내 입학자】 : 정원내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

- ※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 3학년 별도편입입학자는 포함

【정원외 입학자】 : 전형 유형에 따라 산업체위탁생, 군위탁생, 농어촌학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자,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등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정원내 입학자 수 / 정원내 모집인원) × 100

【경쟁률】 : (정원내 지원자 수 / 정원내 모집인원), 소수돌출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 참고사항

- 신입생 충원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4-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4-라-1. 재학생 충원을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6년 계열별 재학생 충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학생정원) 2025. 4. 1. 및 2026. 4. 1. (재학생) 2025. 10. 1. 및 2026. 4. 1.)

(단위: 명, %)

기준연도	계열	학생정원 (A)	학생모집 정지인원 (B)	재학생			재학생 충원율(%) {C/(A-B)}×100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D/(A-B)}×100
				계 (C)	정원내 (D)	정원외		
2025년 하반기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합계							
2026년 상반기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합계							

■ 검증사항

【2026년 상반기 재학생 수 합계】 : <4-마> 재학생 합계(정원내, 정원외)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계열】 : 「대학설립·운영 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별표 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인문·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의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류

② 기술대학: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 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사회실무계열	경영·관광·유통·보험 및 실용예술 등
자연·공학계열	해양·농학·수산·의학 및 공학 등

【2025년 하반기 학생정원(2025. 4. 1.)】

①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편제완성여부	최종 학년	산출공식
완성	5개학년	2025 ~ 2021학년도 입학정원의 합
	4개학년	2025 ~ 2022학년도 입학정원의 합
미완성	3개학년	2025학년도 입학정원 + 2024학년도 입학정원 + 2023학년도 입학정원
	2개학년	2025학년도 입학정원 + 2024학년도 입학정원
	1개학년	2025학년도 입학정원
의예과, 의학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등	의예과 1, 2학년 정원	자연과학계열 2025학년도, 2024학년도에 입력
	의학과 1 ~ 4학년 정원	의학계열 2025 ~ 2022학년도에 입력

※ 학생정원 산정 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② 사이버대학: 2025~2022학년도 신입학 입학정원 + 2025~2024학년도 별도편입학 입학정원

③ 전문대학: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산출

편제완성 여부	구 분		학생정원
			학과별 학년 입학정원의 합계
완성	단일 학과명	2년제(1·2학년 모두 있는 경우)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
		3년제(1·2·3학년 모두 있는 경우)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3학년 입학정원
	학과 명칭 변경 (A→B)	학칙에 따라 기존 학생의 학적까지 모두 B학과로 이동할 경우	2년제: B학과 =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 3년제: B학과 =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3학년 입학정원
		학칙에 따라 기존 학생의 학적은 A학과로 유지할 경우	2년제: B학과 1학년 입학정원, A학과 2학년 입학정원 3년제: B학과 1학년 입학정원, A학과 2~3학년 입학정원
	2025년 1학년 입학정원이 없는 학과의 경우		2년제(2학년만 있는 경우): 2학년 입학정원
			3년제(2·3학년만 있는 경우): 2학년 입학정원+3학년 입학정원
3년제(3학년만 있는 경우): 3학년 입학정원			
미완성	2025학년도에 기존의 학과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어 1학년만 있는 경우		2년제: 학과별 1학년 입학정원 3년제: 학과별 1학년 입학정원
	2025학년도에 신설되어 1·2학년만 있는 3년제 학과의 경우		3년제(1·2년만 있는 경우):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

※ 학생정원 산정 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4. 정원별 제학생 수 및 학생인원에 관한 사항

【2026년 상반기 학생정원(2026. 4. 1.)】

①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편제완성여부	최종 학년	산출공식
완성	5개학년	2026 ~ 2022학년도 입학정원의 합
	4개학년	2026 ~ 2023학년도 입학정원의 합
미완성	3개학년	2026학년도 입학정원 + 2025학년도 입학정원 + 2024학년도 입학정원
	2개학년	2026학년도 입학정원 + 2025학년도 입학정원
	1개학년	2026학년도 입학정원
의예과, 의학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등	의예과 1, 2학년 정원	자연과학계열 2026학년도, 2025학년도에 입력
	의학과 1 ~ 4학년 정원	의학계열 2026 ~ 2023학년도에 입력

※ 학생정원 산정 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② 사이버대학: 2026 ~ 2023학년도 신입학 입학정원 + 2026~2025학년도 별도편입학 입학정원

③ 전문대학: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산출

편제완성 여부	구 분		학생정원
			학과별 학년 입학정원의 합계
완성	단일 학과명	2년제(1·2학년 모두 있는 경우)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
		3년제(1·2·3학년 모두 있는 경우)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3학년 입학정원
	학과 명칭 변경 (A→B)	학칙에 따라 기존 학생의 학적까지 모두 B학과로 이동할 경우	2년제: B학과 =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 3년제: B학과 =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3학년 입학정원
		학칙에 따라 기존 학생의 학적은 A학과로 유지할 경우	2년제: B학과 1학년 입학정원, A학과 2학년 입학정원 3년제: B학과 1학년 입학정원, A학과 2~3학년 입학정원
	2026년 1학년 입학정원이 없는 학과의 경우		2년제(2학년만 있는 경우): 2학년 입학정원
			3년제(2·3학년만 있는 경우): 2학년 입학정원+3학년 입학정원
3년제(3학년만 있는 경우): 3학년 입학정원			
미완성	2026학년도에 기존의 학과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어 1학년만 있는 경우		2년제: 학과별 1학년 입학정원 3년제: 학과별 1학년 입학정원
	2026학년도에 신설되어 1·2학년만 있는 3년제 학과의 경우		3년제(1·2년만 있는 경우):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

※ 학생정원 산정 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2025년 하반기 재학생】 : 2025. 10. 1. 기준 정원내, 정원의 재학생

【2026년 상반기 재학생】 : 2026. 4. 1. 기준 정원내, 정원의 재학생

※ 학교의 학적변동 행정처리 상 학적변동이 적용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인원 입력

(예: 학생이 '26. 4. 1.부터 휴학을 하겠다고 신청하였고 학교의 행정처리가 '26. 4. 1. 이후에 완료되더라도 처리 완료일을 소급적용하여 '26. 4. 1.부터 휴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학생으로 보므로 재학생이 아님)

【학생모집정지인원】 :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모집이 정지된 인원

【재학생 충원율(%)】 : {재학생 수 / (학생정원 - 학생모집정지인원)} × 100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정원내 재학생 수 / (학생정원 - 학생모집정지인원)} × 100

■ 참고사항

- 재학생 충원율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편제 미완성교의 학생정원은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당해연도 상반기 재학생 수는 2026년 <4-마> 재학생 현황, 전년도 하반기 재학생 수는 2025년 교육기본통계 하반기 조사의 재학생 현황 연계 활용

4-라. 학생 총원 현황(편입학 포함)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6년 계열별 재학생 총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 4. 1.)

(단위: 명, %)

기준 연도	계열	학생 정원 (A)	학생모집 정지인원 (B)	재학생						재학생 총원율(%) {C/(A-B)}×100	정원내 재학생 총원율(%) {D/(A-B)}×100	
				계 (C)	정원내(D)			정원외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합계											

■ 검증사항

【재학생 합계】 : <4-마> 재학생 합계(석사+박사+석박사통합)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계열】 : 「대학설립·운영 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별표 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인문·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류

② 기술대학: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의 [별표 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사회실무계열	경영·관광·유통·보험 및 실용예술 등
자연·공학계열	해양·농학·수산·이학 및 공학 등

【학생정원(입학정원 계)】 :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은 아래와 같음

편제완성여부	최종 학기	산출공식
완성	4학기	2026학년도 입학정원 + 2025학년도 입학정원
	5학기	2026학년도 입학정원 + 2025학년도 입학정원+2024학년도 입학정원의 1/2
	6학기	2026학년도 입학정원 + 2025학년도 입학정원+2024학년도 입학정원
	8학기	2026학년도 입학정원 + 2025학년도 입학정원+2024학년도 입학정원 + 2023학년도 입학정원
미완성	1~2학기(1차년도)	2026학년도 입학정원
	3~4학기(2차년도)	2026학년도 입학정원 + 2025학년도 입학정원
	5~6학기(3차년도)	2026학년도 입학정원 + 2025학년도 입학정원 + 2024학년도 입학정원

※ 학생정원 산정 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 ※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입학정원을 산정하여 학생정원 계산
 - 당해연도: 상반기에 신입학한 4. 1. 기준 정원내 재학생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입력
 - 2015년 ~: 각 해당연도에 신입학한 10. 1. 기준 정원내 재학생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입력
 - ~ 2014년: 각 해당연도 4. 1. 기준 재학생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입력

【재학생】 : 2026. 4. 1. 기준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대학원 재학생

- ※ 학교의 학적변동 행정처리 상 학적변동이 적용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인원 입력
(예: 학생이 '26. 4. 1.부터 휴학을 하겠다고 신청하였고 학교의 행정처리가 '26. 4. 1. 이후에 완료되더라도 처리 완료일을 소급적용하여 '26. 4. 1.부터 휴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학생으로 보므로 재학생이 아님)

【학생모집정지인원】 :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재학생 충원율(%)】 : {재학생 수 / (학생정원 - 학생모집정지인원)} × 100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정원내 재학생 수 / (학생정원 - 학생모집정지인원)} × 100

■ 참고사항

- 학생 충원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재학생 수는 2026년 <4-마> 재학생 현황 연계 활용

4-라-2. 편입학 선발 결과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8월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편입학 선발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학년도 9월(후기), 2026학년도 3월(전기))

(단위: 명)

기준 연도	모집 시기	학과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자					등록인원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일반 편입	기타	학사 편입	특별 편입학	기타	일반 편입	기타	학사 편입	특별 편입학	기타	일반 편입	기타	학사 편입	특별 편입학	기타	
	합계																	

■ 작성지침

【모집시기】 : 전기, 후기 중 선택

【학과(모집단위)】 : 2025학년도 9월(후기), 2026학년도 3월(전기) 편입생이 있는 모든 학과. 학과는 '모집단위'를 의미

【모집인원】 : 당해연도 모집요강에서 공고하는 선발인원

※ 총모집계획인원 = 정원내 편입학 모집인원(일반편입 및 기타) + 정원외 편입학 모집인원(학사편입 및 기타)

※ 모집인원은 해당 연도의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입력, 그러나 모집요강에 학과별로 정원의 모집인원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

1. 모집단위의 정원의 모집인원의 총 수는 정해져 있지만 학과별 파악이 어려운 전형의 경우, '기타 모집단위'에 모집인원 입력
2. 모집단위의 정원의 모집인원 총 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전형의 경우, 실제 해당 학과로 입학한 학생 수를 해당 학과 모집인원으로 입력

【정원내 모집인원】

① 모집인원의 정원내 편입학(일반편입) = {전년도(4. 1., 10. 1. 기준) 1, 2학년 총 결손인원 × 4대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 비율} +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인원 + 기타

※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인원: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에서 교육부로부터 차년도(또는 차차년도)의 신입생 인원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인원을 신입생 인원으로 이월 신청하지 않은 인원

(예: A학과 모집인원이 50명이고, 당해연도에 10명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또는 차차년도)의 신입생 인원으로 이월 신청 가능한 인원이 1명인데, 동 1명에 대해 차년도(또는 차차년도)의 신입생 인원으로 이월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편입학 여석으로 사용 가능)

※ 정원내 기타에는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전환에 따른 학사편입학자, 산업대학 중 당해연도 입학정원으로 3학년 편입학을 모집한 인원을 입력

② 정원내 편입학 모집인원(사이버대학의 경우만 해당) = 해당 연도 입학정원 - {전년도(4. 1., 10. 1. 기준) 1, 2학년 총 결손인원}

【정원의 모집인원】 : 모집인원의 정원의 편입학(학사편입 및 기타) = 학사편입학 + 폐교에 따른 특별편입학자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 농어촌학생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학생 + 의료인력·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소지자 + 2+4 약학대학 입학자 + 특성화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산업체 재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타

【정원의 모집인원-특별편입학】 : 「고등교육법」 제62조(학교 등의 폐쇄)의 교육부 학교폐쇄 명령 또는 자진 폐교인가에 따라 폐교된 대학에서 본 대학으로 정원의 특별편입학한 자

【정원의 모집인원-기타】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 농어촌학생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학생 + 의료인력·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소지자 + 2+4 약학대학 입학자 + 특성화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산업체 재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타

※ 참고: 학과별로 구분되는 경우 학과별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학과별로 구분이 안될 경우 합계수준에서 기입

【지원자】 : 2025학년도 9월(후기) 및 2026학년도 3월(전기) 편입학 모집에 지원한 모든 지원자

【등록인원】 : 편입학 시험에 합격하여 편입학이 허가되고 등록을 완료한 인원

※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 3학년 별도편입학자는 제외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4-라-2. 편입학 선발 결과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8월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편입학 선발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학년도 9월(후기), 2026학년도 3월(전기))

(단위: 명)

기준연도	모집시기	학과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자			등록인원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특별편입학	기타		특별편입학	기타		특별편입학	기타
	합계										

■ 작성지침

【모집시기】 : 전기, 후기 중 선택

【학과(모집단위)】 : 2025학년도 9월(후기), 2026학년도 3월(전기) 편입생이 있는 모든 학과. 학과는 '모집단위'를 의미

【모집인원】 : 당해연도 모집요강에서 공고하는 선발인원

※ 총모집계획인원 = 정원내 편입학 모집인원(일반편입 및 기타) + 정원외 편입학 모집인원(학사편입 및 기타)

※ 모집인원은 해당 연도의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입력, 그러나 모집요강에 학과별로 정원의 모집인원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

1. 모집단위의 정원외 모집인원의 총 수는 정해져 있지만 학과별 파악이 어려운 전형의 경우, '기타 모집단위'에 모집인원 입력
2. 모집단위의 정원의 모집인원 총 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전형의 경우, 실제 해당 학과로 입학한 학생 수를 해당 학과 모집인원으로 입력

【정원내 모집인원】 : 모집인원의 정원내 편입학 = 총 결손인원

【정원외 모집인원】 : 모집인원의 정원외 편입학 = 폐교에 따른 특별편입학 + 기타

【정원의 모집인원-특별편입학】 : 「고등교육법」 제62조(학교 등의 폐쇄)의 교육부 학교폐쇄 명령 또는 자진 폐교인가에 따라 폐교된 대학에서 본 대학으로 정원의 특별편입학한 자

【정원의 모집인원-기타】 : 학사편입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 순수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제7호) + 기타

【지원자】 : 2025학년도 9월(후기) 및 2026학년도 3월(전기) 편입학 모집에 지원한 모든 지원자

【등록인원】 : 편입학 시험에 합격하여 편입학이 허가되고 등록을 완료한 인원

※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 3학년 별도편입학자는 제외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4-마. 재적 학생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6년 학과별 재적 학생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 4. 1.)

(단위 : 명)

기준연도	단과 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 특성	학과 상태	계열	학생정원	재학생(A)									
								계			남		여				
								소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합계																	
휴학생(B)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C)										
계			남		여		계			남		여					
소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소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재적 학생(D=A+B+C)																	
계			남		여												
소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4. 정원외 재학생 수 및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 검증사항

【재학생 합계】 : <4-라-1> 2026년 상반기 재학생 합계(정원내, 정원외)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학과(전공)】 : 2026. 4. 1. 기준 재적 학생이 있는 모든 학과

【계열】 : 「대학설립·운영 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별표 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인문·사회계열	여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의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류

② 기술대학: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 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사회실무계열	경영·관광·유통·보험 및 실용예술 등
자연·공학계열	해양·농학·수산·이학 및 공학 등

【학생정원】

①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편제완성여부	최종 학년	산출공식
완성	5개학년	2026 ~ 2022학년도 입학정원의 합
	4개학년	2026 ~ 2023학년도 입학정원의 합
미완성	3개학년	2026학년도 입학정원 + 2025학년도 입학정원 + 2024학년도 입학정원
	2개학년	2026학년도 입학정원 + 2025학년도 입학정원
	1개학년	2026학년도 입학정원
의예과, 의학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등	의예과 1, 2학년 정원	자연과학계열 2026학년도, 2025학년도에 입력
	의학과 1 ~ 4학년 정원	의학계열 2026 ~ 2023학년도에 입력

※ 학생정원 산정 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② 사이버대학: 2026~2023학년도 신입학 입학정원 + 2026~2025학년도 별도편입학 입학정원

③ 전문대학: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산출

편제완성 여부	구 분		학생정원
			학과별 학년 입학정원의 합계
완성	단일 학과명	2년제(1·2학년 모두 있는 경우)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
		3년제(1·2·3학년 모두 있는 경우)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3학년 입학정원
	학과 명칭 변경 (A→B)	학칙에 따라 기존 학생의 학적까지 모두 B학과로 이동할 경우	2년제: B학과 =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 3년제: B학과 =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3학년 입학정원
		학칙에 따라 기존 학생의 학적은 A학과로 유지할 경우	2년제: B학과 1학년 입학정원, A학과 2학년 입학정원 3년제: B학과 1학년 입학정원, A학과 2~3학년 입학정원
	2026년 1학년 입학정원이 없는 학과의 경우		2년제(2학년만 있는 경우): 2학년 입학정원 3년제(2·3학년만 있는 경우): 2학년 입학정원+3학년 입학정원 3년제(3학년만 있는 경우): 3학년 입학정원
미완성	2026학년도에 기존의 학과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어 1학년만 있는 경우		2년제: 학과별 1학년 입학정원 3년제: 학과별 1학년 입학정원
	2026학년도에 신설되어 1·2학년만 있는 3년제 학과의 경우		3년제(1·2년만 있는 경우):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

※ 학생정원 산정 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재학생】: 2026. 4. 1. 기준 재학생을 정원내·외로 구분하여 기입

【휴학생】: 2026. 4. 1. 기준 휴학생을 정원내·외로 구분하여 기입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2026. 4. 1. 기준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자

【재적 학생】: 2026. 4. 1. 재학생 수, 휴학생 수,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수를 합한 수

■ 참고사항

- 재적 학생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4-마. 재적 학생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6년 학과별 재적 학생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 4. 1.)

(단위 : 명)

기준연도	단과대학	학과(전공)	구분	학과특성	과정	학과상태	계열	재학생(A)							
								계			남		여		
								소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합계															
휴학생(B)							재적 학생(C=A+B)								
계			남		여		계			남		여			
소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소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 검증사항

【재학생 합계】 : <4-라> 재학생 합계(정원내, 정원외)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학과(전공)】 : 2026. 4. 1. 기준 재적 학생이 있는 모든 학과

【계열】 : 「대학설립·운영 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 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인문·사회계열	여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류

② 기술대학 :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의 [별표 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사회실무계열	경영·관광·유통·보험 및 실용예술 등
자연·공학계열	해양·농학·수산·이학 및 공학 등

【재학생】 : 2026. 4. 1. 기준 정원내·외 대학원 재학생 수

【휴학생】 : 2026. 4. 1. 기준 정원내·외 대학원 휴학생 수

【재적 학생】 : 2026. 4. 1. 기준 재학생 수와 휴학생 수를 합한 수

■ **참고사항**

- 재적 학생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4-바-1. 외국 학생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6년 국가별 외국 학생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 4. 1.)

○ 대학

(단위: 명, %)

기준 연도	국가	계 (D=A+B+C)	학위과정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B)	연수과정				
			소계 (A)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 계열		소계 (C)	어학 연수생	교환 학생	방문 학생	기타 연수생
	합계													

언어능력				언어능력 충족 학생비율(%) (E/A)×100	기숙사 수용 여부					
소계 (E)	TOPIK 4급 이상 (예·체능 3급) 이상 학생 수	영어트랙 TOEFL IBT 59 수준 이상 학생 수	영어권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소계 (F)	수용	미수용	소계 (G)	수용	미수용

○ 전문대학

(단위: 명, %)

기준 연도	국가	계 (D=A+B+C)	학위과정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B)	연수과정				
			소계 (A)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 계열		소계 (C)	어학 연수생	교환 학생	방문 학생	기타 연수생
	합계													

언어능력				언어능력 충족 학생비율(%) (E/A)×100	기숙사 수용 여부					
소계 (E)	TOPIK 3급 이상 학생 수	영어트랙 TOEFL IBT 59 수준 이상 학생 수	영어권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소계 (F)	수용	미수용	소계 (G)	수용	미수용

○ 대학원, 대학원대학

(단위: 명, %)

기준 연도	국가	계 (D= A+B+C)	학위과정															계 (A= A'+B'+C')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소개 (A')	인문· 사회 계열	자연· 과학 계열	공학 계열	예· 체능 계열	의학 계열	소개 (B')	인문· 사회 계열	자연· 과학 계열	공학 계열	예· 체능 계열	의학 계열	소개 (C')	인문· 사회 계열	자연· 과학 계열		공학 계열	예· 체능 계열	의학 계열
합계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						언어능력				언어능력 충족 학생비율(%) (E/A)×100								
소개 (B)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	소개 (C)	여학 연수생	교환 학생	방문 학생	기타 연수생	소개 (E)	TOPIK 4급 이상 (예·체능 3급) 이상 학생 수	영어트랙 TOEFL IBT 59 수준 이상 학생 수	영어권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여부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소개 (F)	수용	미수용	소개 (G)	수용	미수용	소개 (G)	수용	미수용	소개 (G)	수용	미수용	소개 (G)	수용	미수용	소개 (G)	수용	미수용				

■ 검증사항

【기숙사 수용 여부-학위과정】: 소개(F)는 학위과정 소개(A)와 일치해야 함

【기숙사 수용 여부-비학위과정】: 소개(G)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소개(B), 연수과정 소개(C)의 합과 일치해야 함

○ 한명의 학생이 두 개 이상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한쪽에만 입력함

■ 작성지침

【국가】: 재적중인 외국 학생의 수를 출신 국가별로 입력(순수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재외동포도 포함)

※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국가: 재외OO동포

※ 연변(조선)족: 재외중국동포

※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이 아니므로 제외

【학위과정】

① 2026. 4. 1. 기준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인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 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취득 유예학생 모두 입력(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동향의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포함하되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및 편입생 등을 포함

【계열】: 「대학설립·운영 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별표 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인문·사회계열	여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류

② 기술대학: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 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사회실무계열	경영·관광·유통·보험 및 실용예술 등
자연·공학계열	해양·농학·수산·이학 및 공학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협약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내·외국인 학생

【연수과정-어학연수생】: 대학부설 어학원 등 비학위과정(Non-degree Program)인 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지만 학점은 취득하지 않는 유학생

【연수과정-교환학생】: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연수과정-방문학생】: 학교간의 협정이 아닌 개인이 해당 대학 방문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연수과정-기타 연수생】: 정규학위과정 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을 제외한 기타 연수생

【언어능력-TOPIK 4급 이상(예·체능 3급 이상) 학생 수(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학위과정생 중 TOPIK 시험에 응시하여 4~6급(예·체능계의 경우 3~6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TOPIK IBT도 포함)

【언어능력-TOPIK 3급 이상 학생 수(전문대학)】: 학위과정생 중 TOPIK 시험에 응시하여 3~6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TOPIK IBT도 포함)

【언어능력-영어트랙 TOEFL IBT 59 수준 이상 학생 수】: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영어 능력 TOEFL IBT 59(또는 IELTS 5.5, CEFR B2, NEW TEPS 202) 이상 취득한 자. 단, TOEIC 성적은 해당되지 않음

※ 1인의 학생이 TOPIK 4급 이상(예·체능 3급 이상)(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TOPIK 3급 이상(전문대학) 자격과 영어트랙 TOEFL IBT 59 수준 이상일 경우, 둘 중 하나에만 입력

【언어능력-영어권 외국인 유학생】: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으로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한 자(출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

* 외교부)영사·국가/국가/지역 정보에서 국가를 검색한 후 언어 정보 확인

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list.do

【언어능력 충족 학생비율(%)】: 학위과정생 중 TOPIK 4급 이상(예·체능계의 경우 3급 이상), 영어 능력 TOEFL IBT 59(또는 IELTS 5.5, CEFR B2, NEW TEPS 202) 이상 획득한 학생 및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 비율(단, TOEIC 성적은 해당되지 않음) (언어능력 총계 / 학위과정(대학) 소계) × 100

【기숙사 수용 여부-학위과정(수용/미수용)】: 2026. 4. 1. 기준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인 학위과정 유학생

【기숙사 수용 여부-비학위과정(수용/미수용)】: 2026. 4. 1. 기준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인 비학위과정 유학생

※ 원격대학은 학제특성을 고려하여 기숙사 수용여부, 언어능력은 입력하지 않음

■ 참고사항

- 외국 학생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4-바-2. 외국 학생 중도탈락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5년 외국 학생 중도탈락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재적 학생) 2025. 4. 1., (중도탈락) 2025. 3. 1. ~ 2026. 2월 말일)

○ 대학, 전문대학

(단위: 명, %)

기준연도	국가	외국 재적 학생						
		소계 (A)	학위과정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합계							
중도탈락 학생							외국 학생 중도탈락률(% (B/A)×100	
소계 (B)	학위과정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 대학원, 대학원대학

(단위: 명, %)

기준연도	국가	외국 재적 학생								
		소계 (A)	학위과정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합계									
중도탈락 학생									외국 학생 중도탈락률(% (B/A)×100	
소계 (B)	학위과정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 검증사항

【외국 재적 학생 소계】 : 2025년 <4-바-1> 외국 학생 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한 명의 학생이 두 개 이상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한쪽에만 입력함

■ 작성지침

【국가】 : 재적중인 외국 학생의 수를 출신 국가별로 입력(순수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재외동포도 포함)

- ※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국가: 재외OO동포
- ※ 연변(조선)족: 재외중국동포
- ※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이 아니므로 제외

【학위과정】

- ① 2025. 4. 1. 현재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인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 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모두 입력(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동항의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포함하되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및 편입생 등을 포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협약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내·외국인 학생

【어학연수생】 : 대학부설 어학원 등 비학위과정(Non-degree Program)인 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지만 학점은 취득하지 않는 유학생

【교환학생】 :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방문학생】 : 학교간의 협정이 아닌 개인이 해당 대학 방문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기타 연수생】 : 정규학위과정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을 제외한 기타 연수생

【중도탈락 학생】 : 2025. 3. 1. ~ 2026. 2월 말일까지 제적생과 자퇴생의 합

【외국 학생 중도탈락률(%)】 : $(\text{중도탈락 학생 수} / \text{외국 재적 학생 수}) \times 100$

- ※ 외국 재적 학생 수 자료기준일(2025. 4. 1.)과 중도탈락 학생 수 자료기준일(2025. 3. 1. ~ 2026. 2월 말일)의 차이로 인하여 외국 학생 중도탈락률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예: A국가의 학생 중 2025. 4. 1. 기준 재적 학생은 5명, 2025년 9월에 입학했다가 중도탈락한 학생이 7명일 경우, 중도탈락학생비율은 $7명 / 5명 \times 100 = 140\%$)

■ 참고사항

- 중도탈락 학생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재적 학생은 '2025년 상반기'에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중도탈락 학생은 '2026년 상반기'에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외국 재적 학생 수는 2025년 <4-바-1> 외국 학생 현황 연계 활용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5년 학과별 중도탈락 학생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재적 학생) 2025. 4. 1., (신입생) 2025년 3월 학기 신입생(4월 기준), (중도탈락) 2025. 3. 1. ~ 2026. 2월 말일)

○ 대학, 전문대학

(단위: 명, %)

기준 연도	단과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 특성	학과 상태	재적 학생 (A)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중도탈락 학생비율 (%) (B/A)×100	
							계 (B)	미 등록	미 복학	자퇴	학사 경고	학생 활동	유급 제적	재학 연한 초과		기타
			합계(신입생 포함)													
			신입생													

○ 대학원, 대학원대학

(단위: 명, %)

기준 연도	단과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 특성	과정	학과 상태	재적 학생 (A)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중도탈락 학생비율 (%) (B/A)×100
								계 (B)	미 등록	미 복학	자퇴	학사 경고	학생 활동	유급 제적	재학 연한 초과	
			합계													

■ 작성지침

【학과(전공)】 : 2025. 4. 1. 기준 재적 학생 또는 2025. 3. 1. ~ 2026. 2월 말일 중도탈락 학생이 있는 모든 학과

【재적 학생】 : 2025. 4. 1. 기준 재학생 수, 휴학생 수,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수를 합한 수

【신입생】 : 2025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모집인원 미달로 추가 모집한 입학자 포함)

※ 제외: 재입학 및 편입학, 2+4 약학대학 입학자,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의 본과 진급생 및 교육대학의 계절제 편입생

※ 입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함

※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포함

【중도탈락 학생】 : 2025. 3. 1. ~ 2026. 2월 말일까지 제적생과 자퇴생의 합

※ 사망자는 학교의 학적처리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함

【미등록】 : 등록하지 않아서 제적된 자

【미복학】 : 휴학 중인 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

【자퇴】 : 스스로 학적을 포기하여 제적된 자

【학사경고】 : 성적경고 또는 기타 사유로 횡수 누적되어 제적된 자

【학생활동】 : 학생활동으로 인해 징계 제적된 자

【유급제적】 : 동일학년 유급횟수 누적되어 제적된 자

【재학연한 초과】 : 재학연한 경과로 제적된 자

【기타】 : 위에 열거한 사유 외의 내용으로 제적된 자

【중도탈락학생비율(%)】 : $(\text{중도탈락 학생 수} / \text{재적 학생 수}) \times 100$

※ 재적 학생 수 자료기준일(2025. 4. 1.)과 중도탈락 학생 수 자료기준일(2025. 3. 1. ~ 2026. 2월 말일)의 차이로 인하여 중도탈락학생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예: A학과 3월 입학생 20명 중 12명이 3월에 중도탈락하여 2025. 4. 1. 기준 재적 학생이 8명일 경우, 중도탈락학생비율은 $12\text{명} / 8\text{명} \times 100 = 150\%$)

■ 참고사항

- 중도탈락 학생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재적 학생은 '2025년 상반기'에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중도탈락 학생은 '2026년 상반기'에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재적 학생 수는 2025년 <4-마> 재적 학생 현황 연계 활용

4-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5월(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공정성팀)

【공시내용】 : 2026학년도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및 고등학교 지역정보별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년 3월 학기 신입생(3월 기준))

(단위: 명, %)

기준 연도	정원 구분	전형 유형	전형명 (대분류)	총 입학자수	출신학교 유형별 입학자 수 및 비율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학교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정원내															
	정원외															
	합계															

출신학교 유형별 입학자 수 및 비율															
자율고				기타										소계	
사립		공립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고등학교		검정고시		그 외 기타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출신학교 지역정보별 입학자 수 및 비율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중소도시		읍면		특수		기타		소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 기술대학은 본 항목 공시대상에서 제외

■ 검증사항

【총 입학자수】 : <4-가> 최종 등록인원, <4-나> 총 입학자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전형유형】

- 대학: 표준대입전형체계에 따른 전형유형(학생부위주(교과)·학생부위주(종합)·실기/실적위주·수능위주·논술위주·기타)
- 전문대학: 전형방법 표준체계에 따른 전형유형(학생부위주·실기위주·수능위주·서류위주·면접위주)

【총 입학자】 : 2026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모집인원 미달로 추가 모집한 입학자 포함), 정원내와 정원외를 포함

※ 제외

(대학)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재입학 및 편입학,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 3학년 별도편입학,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
본과 진급생 및 교육대학의 계절제 편입생

(전문대학)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재입학 및 편입학, 산업체위탁과정, 군위탁과정, 계약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 (대학) 계약학과는 재교육형/재용조건형으로 입학한 인원 모두를 기재해야 함

※ 학교유형은 2026학년도 3월 신입생이 졸업한 고교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입력(2015. 1. 1. 시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50호) 기준)

(예 1 : 2023년 A고교(일반고)에 입학했지만 B고교(특성화고)로 전학하여 2026년 2월 B고교에서 졸업한 경우, B고교
(특성화고)의 2023년 고교유형으로 입력(졸업하는 학교의 2023년 유형))

(예 2 : 2023년 A고교(일반고)에 입학했지만 2024년에 A고교가 자율고로 전환된 경우, A고교의 2023년 고교유형
(일반고)으로 입력(입학연도 기준의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항의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의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 특성화고 포함)

【자율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4항의 자율고등학교

【영재학교】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지정된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외국고등학교】 : 국외에 소재한 학교로서 해당 출신학교 입학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

【검정고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출신학교 유형별-그 외 기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의 외국교육기관 및 제223조의 국제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폐교 등

【특별시】 : 2026학년도 신입생 중 출신고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광역시·특별자치시】 : 2026학년도 신입생 중 출신고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인 자

※ 광역시·특별자치시 지역 내 군/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은 읍면지역에 포함

【중소도시】 : 2026학년도 신입생 중 출신고교의 소재지가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시지역인 자

※ 중소도시 지역 내 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은 읍면지역에 포함

【읍·면】 : 2026학년도 신입생 중 출신고교의 소재지가 읍 또는 면지역인 자

※ 출신지역이 광역시/중소도시이면서 군/읍면지역일 경우 읍면지역에 포함

【특수】 : 2026학년도 신입생 중 출신고교의 소재지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에 해당하는 자

【출신학교 지역정보별-기타】 : 외국고등학교 등

■ 참고사항

-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0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5-가. 졸업생 현황

5-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5-가. 졸업생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5년 8월과 2026년 2월 학과(전공)별 졸업생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 4. 1.)

(단위 : 명)

기준 연도	졸업연도	단과대학	학과(전공)	구분	학과특성	입학연도	졸업자			졸업소요기간
							계	남	여	
	2025년 8월									
	2026년 2월									
합계										

■ 검증사항

【졸업자(남, 여)】 : <2-가-4>의 졸업자 수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학과(전공)】 : 2025년 8월과 2026년 2월 졸업생이 있는 모든 학과

【입학연도】 : 졸업자의 입학연도를 '0000년 00월'로 기입

※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한 연도를 입학연도로 기입

【졸업자】 : 2025년 8월과 2026년 2월 졸업자로 학사 등록이 된 자

※ 외국 학생 중 학위과정생은 포함(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졸업소요기간】 : (졸업연도 - 입학연도), 각 연도별 졸업생의 졸업소요 기간을 '00년 00개월'로 산출하여 기입, 졸업소요 기간의 소계와 합계에는 평균치를 기입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고란에 특이사항을 명기

■ 참고사항

- 졸업생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5-가. 졸업생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5년 8월과 2026년 2월 학과(전공)별 졸업생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 4. 1.)

(단위: 명)

기준 연도	졸업연도	단과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 특성	석사학위				박사학위					
						입학 연도	학위취득자			졸업소요 기간	입학 연도	학위취득자			졸업소요 기간
							계	남	여			계	남	여	
	2025년 8월														
	2026년 2월														
		합계													

■ 검증사항

【학위취득자(남, 여)】 : <2-가-4>의 졸업자 수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학과(전공)】 : 2025년 8월과 2026년 2월 졸업생이 있는 모든 학과

【입학연도】 : 2025년 8월과 2026년 2월 학위취득자의 입학연도(3월 또는 9월 학기 포함)를 '0000년 00월'로 기입

※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한 연도를 입학연도로 기입

【학위취득자】

① 2025년 8월과 2026년 2월 대학원별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

② 석·박사통합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 시 '석사학위'로, 박사학위 취득 시 '박사학위'로 구분

※ 외국 학생 중 학위과정생은 포함(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졸업소요기간】 : (졸업연도 - 입학연도), 각 연도별 졸업생의 졸업소요기간을 '00년 00개월'로 산출하여 기입, 졸업소요기간의 소계와 합계에는 평균치를 기입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고란에 특이사항을 명기

■ 참고사항

○ 졸업생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국내 전문대학】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의 전문대학으로 진학한 자

【국내 대학】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의 대학으로 진학한 자

【국내 대학원】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의 대학원에 진학한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을 통해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경우 ‘국내 대학원’ 진학자로 입력

【국외 전문대학】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전문대학에 준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국외 대학】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 준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국외 대학원】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원에 준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진학률(%)】 : (진학자 수 / 졸업자 수) × 100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

■ 참고사항

○ 졸업생의 진학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학점은행제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예: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훈련기관, 평생교육원 등)에 입학한 자
- 직업전문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로 진학한 자
-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 및 기능장과정으로 진학한 자

【대학원】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국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을 통해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진학자’로 입력

【기타】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국외 전문대학 및 대학에 진학한 자

【진학률(%)】 : (진학자 / 학위취득자) × 100

■ 참고사항

- 졸업생의 진학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졸업자】 : 2024년 8월과 2025년 2월 졸업자

- ※ 외국 학생 중 학위과정생은 포함(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 ※ 외국 학생 중 학위과정생은 졸업자에는 포함하나 진학자, 취업자에서는 제외

【취업자】 : 2024년 8월과 2025년 2월 졸업자 중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건강보험 DB를 통해 확인)

-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가입자로 확인된 자는 취업자로 인정
- ※ 대학의 재정(교비, 산학협력단 회계 및 정부재정지원금 등 대학의 모든 회계를 포함)으로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업에 지원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 ※ 비상근근로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자는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해외취업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해외 국가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농림어업종사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

- ※ 농림어업종사자 인정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자,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을 제출한 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예술활동증명이 확인된 자(근로복지공단 DB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DB 통해 확인)

- ※ 2026년 조사에 한하여 2026.1.1.~2026.4.30. 기간 동안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도 포함

【1인 창(사)업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국세청 DB에서 2025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2025년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6,288,810원 이상이 확인된 자

【프리랜서】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국세청 DB에서 2025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이 6,288,810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자

【진학자】

①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 및 재진학한 자

*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대학원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② 진학자에서 제외되는 자: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아래의 경우는 진학자에서 제외함

- 국내·외 교육기관으로부터 2026년 입학허가서를 받은 진학예정자
- 국외 교육기관으로부터 2026년 입학허가서를 받고 학위 준비과정으로 어학코스에 입학한 자
- 해외 어학연수자
- 학점은행제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예: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훈련기관, 평생교육원 등)에 입학한 자
- 직업전문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로 진학한 자
-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 및 기능장과정으로 진학한 자

【입대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군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수행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외국인유학생】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외국국적을 가진 유학생(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으로서, 학위를 취득한 자

※ 진학, 취업 등 졸업 후 상황과 관계없음

【제외인정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취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여자군인 중 입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기타】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취업, 진학, 입대, 취업불가능, 미상, 제외인정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미상】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

【취업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해외취업자 + 농림어업종사자 +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 1인(창)사업자 + 프리랜서)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제외인정자)}] × 100

【입학당시 기취업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입학당시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가진 자

【교내취업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학교법인 및 관련기관에 1년 이상 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2025년 : 2,096,270원, 2026년 : 2,156,880원)를 받는 자

※ 계약만료 이전에 사직한 교내취업자는 사직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직 후 후임자가 없을 경우 취업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유지취업률(%)】 : 취업통계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일정기간 경과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수시(4회))

$$\text{- 1차 유지취업률} = \frac{\text{'25년 12월·'26년 3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text{'25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text{- 2차 유지취업률} = \frac{\text{'25년 12월·'26년 3월·6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text{'25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text{- 3차 유지취업률} = \frac{\text{'25년 12월·'26년 3월·6월·9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text{'25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text{- 4차 유지취업률} = \frac{\text{'25년 12월·'26년 3월·6월·9월·11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text{'25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

■ 참고사항

- 졸업생의 취업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학위취득자】

- ① 2024년 8월과 2025년 2월 대학원별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
- ② 석·박사통합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 시 '석사학위'로, 박사학위 취득 시 '박사학위'로 구분
 - ※ 외국 학생 중 학위과정생은 포함(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 ※ 외국 학생 중 학위과정생은 학위취득자에는 포함하나 진학자, 취업자에서는 제외

【취업자】 : 2024년 8월과 2025년 2월 학위취득자 중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 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건강보험 DB를 통해 확인)

-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가입자로 확인된 자는 취업자로 인정
- ※ 대학의 재정(교비, 산학협력단 회계 및 정부재정지원금 등 대학의 모든 회계를 포함)으로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업에 지원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 ※ 비상근근로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자는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해외취업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해외 국가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농림어업종사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

- ※ 농림어업종사자 인정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자,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을 제출한 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예술활동증명이 확인된 자(근로복지공단 DB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DB 통해 확인)

- ※ 2026년 조사에 한하여 2026.1.1.~2026.4.30. 기간 동안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도 포함

【1인 창(사)업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국세청 DB에서 2025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25년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6,288,810원 이상이 확인된 자

【프리랜서】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국세청 DB에서 2025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이 6,288,810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자

【진학자】

- ①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 및 재진학한 자
 - *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대학원대학
 -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 ② 진학자에서 제외되는 자: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아래의 경우는 진학자에서 제외함
 - 국내·외 교육기관으로부터 2026년 입학허가서를 받은 진학예정자
 - 국외 교육기관으로부터 2026년 입학허가서를 받고 학위 준비과정으로 어학코스에 입학한 자
 - 해외 어학연수자
 - 학점은행제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예: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훈련기관, 평생교육원 등)에 입학한 자
 - 직업전문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로 진학한 자
 -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 및 기능장과정으로 진학한 자

【입대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군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외국인유학생】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외국국적을 가진 유학생(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으로서, 학위를 취득한 자

※ 진학, 취업 등 졸업 후 상황과 관계없음

【제외인정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취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여자군인 중 입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기타】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취업, 진학, 입대, 취업불가능, 미상, 제외인정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미상】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

【취업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해외취업자 + 농림어업종사자 + 개인창업활동 종사자 + 1인(창)사업자 + 프리랜서)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제외인정자)} × 100

【입학당시 기취업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입학당시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가진 자

【교내취업자】 :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학교법인 및 관련기관에 1년 이상 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2025년: 2,096,270원, 2026년: 2,156,880원)를 받는 자

※ 계약만료 이전에 사직한 교내취업자는 사직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직 후 후임자가 없을 경우 취업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유지취업률(%)】 : 취업통계 조사기준일(2025.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일정기간 경과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수시(4회))

$$\text{- 1차 유지취업률} = \frac{\text{'25년 12월·'26년 3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text{'25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text{- 2차 유지취업률} = \frac{\text{'25년 12월·'26년 3월·6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text{'25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text{- 3차 유지취업률} = \frac{\text{'25년 12월·'26년 3월·6월·9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text{'25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text{- 4차 유지취업률} = \frac{\text{'25년 12월·'26년 3월·6월·9월·11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text{'25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

■ 참고사항

- 졸업생의 취업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0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 6-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 작성지침

【학과(전공)】 : 2026. 4. 1. 기준 모든 학과를 가리키며, 교원의 소속에 따라 입력

(예 : 대학의 경영학과 소속일 경우 경영학과 소속으로, 경영대학원 소속일 경우 경영대학원 소속으로 입력)

※ 교원의 임용/발령된 소속학과가 없을 경우, '소속학과없음'으로 입력, 혹은 강의 담당 비율이 높은 학과로 입력, 혹은 담당 업무와 밀접한 학과로 입력(전임, 비전임 모두 해당하는 공통사항)

【교원 조사대상】 : 휴직교원을 포함한 전체 재직교원(동일교원 중복입력 불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19. 6. 11.〉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단위: 년)

연구·교육 직명	학력 경력연수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강사		1	1	2	1	2	3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학 교원 정년(근거: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17840호(2019. 11. 19., 대학 교원 정년 관련 안내))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전임교원	만 65세	전임교원 확보율에 반영하는 전임교원의 상한 연령은 만 65세 (단, 실제 정년은 개별 대학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름)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		개별 대학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름

-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시행(2019. 8. 1.)에 따라 국·공립대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 조항(정년 65세)을 준용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명예교수규칙」 등에 따라 명예교수는 정년과 관계없이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자를 교원으로 임용 가능

- 전임교원 확보율에 반영하는 국·공·사립대학 전임교원의 상한 연령이 만 65세이므로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는 만 65세까지만 전임교원으로 입력 가능

<조사대상별 인정기준>

【전임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①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 ② 2026. 4. 1.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국·공립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④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고 교양교육 등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강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 HK, 중점연구소사업 등)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
※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가능

○ 국·공립대 기금교수는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학연금에 가입된 교원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교원

○ HK교수

- 국·공립대는 「HK교수 운영규정」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되고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교원
- 사립대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국·공립대는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
- 사립대는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전임교원으로 입력 불가

전임교원 인정 제외대상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②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또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③ 학교교육·지도, 학문연구 및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 ④ 학과(부) 학생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여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비전임교원】 :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기타교원을 입력

【겸임교원】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제4항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① 2026. 4. 1. 기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 ②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 ③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각호, 제17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
- ④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교원
- ⑤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본직)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포함)이 3년 이상인 사람(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본직)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 포함)
- ⑥ 겸임교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자이면서 민간 산업체 소속된 자가 대학에 파견 나와 대학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교원으로 입력

겸임교원 인정 제외대상
① 겸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②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교원
③ 강의 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와 유사하지 않거나 순수 학술이론을 강의하는 교원
④ 본직기관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교원
⑤ 타대학 또는 자대학(부설기관 포함)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

【초빙교원】: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제4항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① 2026. 4. 1. 기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 ②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 ③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각호, 제17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
- ④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교원
- 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인 교원
 -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부터 임용 위임을 받은 산학협력단, 사립대 병원 직장가입자 연구교수 등은 학교 직장가입자로 인정
 - 단, 국립대학 병원은 국립대학과 분리된 독립법인으로 학교 직장가입자로 인정 불가
- ⑥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자이면서 전일제(full-time)근무 계약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교원으로 입력

초빙교원 인정 제외대상
① 초빙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② 타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

【강사】: 「고등교육법」 제14조2, 제1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8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①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2019. 8. 1.)에 따라 임용되어 2026. 4. 1. 기준 본교에 재직 중인 강사
- ②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 ③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

④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

※ 본 대학 직원이면서 강사인 경우 직원 및 교원으로 중복 입력 가능

※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강사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교원으로 입력

【기타교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교원

① 2026. 4. 1. 기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을 제외한 교원

② 2026. 4. 1. 기준 본교에 재직 중이며, 본교에서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으로 임용하였지만 각 교원별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거나 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교원

■ 참고사항

-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6-가-2. 전체 신규 전임교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6년 학과별 신규 전임교원 현황(전체, 대학원 소속 교원 포함)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6. 4. 1.)

(단위: 명)

대학(원)명	기준일자	단과대학	학과 (전공)	신규 전임교원									
				합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26. 4. 1.												

■ 작성지침

【학과(전공)】: 2026. 4. 1. 기준의 모든 학과를 가리키며, 교원의 소속에 따라 입력

(예: 대학의 경영학과 소속일 경우 경영학과 소속으로, 경영대학원 소속일 경우 경영대학원 소속으로 입력)

※ 교원의 임용/발령된 소속학과가 없을 경우, '소속학과없음'으로 입력, 혹은 강의 담당 비율이 높은 학과로 입력, 혹은 담당업무와 밀접한 학과로 입력

【신규 전임교원】: 2025. 4. 2. ~ 2026. 4. 1. 동안 신규 임용되어 2026. 4. 1. 기준 근무 중인 전임교원

■ 참고사항

- 전체 신규 전임교원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6-나-(1)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6년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생 1인당 전임교원 확보율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6. 4. 1.)

○ 대학

(단위: 명, %)

기준 연도	계열	학생 현황				전임교원 현황		교원 법정정원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임교원 확보율	
		학부		대학원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B)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B')	학생정원 기준 (C)	재학생 기준 (C')	학생정원 기준 (A/B)	재학생 기준 (A'/B')	학생정원 기준 (B/C ×100)	재학생 기준 (B'/C' ×100)
		학생 정원	재학생	학생 정원	재학생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합계												

○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단위: 명, %)

기준 연도	계열	학생 현황		전임교원 현황		교원 법정정원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정원 (A)	재학생 (A')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B)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B')	학생정원 기준 (C)	재학생 기준 (C')	학생정원 기준 (A/B)	재학생 기준 (A'/B')	학생정원 기준 (B/C ×100)	재학생 기준 (B'/C' ×100)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합계										

■ 작성지침

【학생현황】 : 학부 및 대학원 학생정원과 재학생

【계열】 : 「대학설립·운영 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별표 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인문·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 등 예과는 자연과학계열에 포함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류

② 기술대학 :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 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사회실무계열	경영·관광·유통·보험 및 실용예술 등	
자연·공학계열	해양·농학·수산·이학 및 공학 등	

【학생정원】

①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편제완성여부	최종 학년	산출공식
완성	5개학년	2026 ~ 2022학년도 입학정원의 합
	4개학년	2026 ~ 2023학년도 입학정원의 합
미완성	3개학년	2026학년도 입학정원 + 2025학년도 입학정원 + 2024학년도 입학정원
	2개학년	2026학년도 입학정원 + 2025학년도 입학정원
	1개학년	2026학년도 입학정원
의예과, 의학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등	의예과 1, 2학년 정원	자연과학계열 2026학년도, 2025학년도에 입력
	의학과 1 ~ 4학년 정원	의학계열 2026 ~ 2023학년도에 입력

※ 학생정원 산정 시, ‘결손인원’ 또는 ‘편입학여석’ 활용을 통한 ‘첨단학과 증원 인원’(총 정원범위 내 자체조정, 또는 국립대 증원을 통한 첨단학과 정원 증원분은 입학정원에 포함)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 제외해야 하는 첨단학과 결손인원/편입학여석 활용분

- 결손인원 활용 방식: 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위해 활용한 결손인원에서 타 학과 누적 감축정원을 뺀 값
- 편입학 여석 활용 방식: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증원한 첨단학과 정원
- * 결손인원 활용과 편입학 여석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결손인원 활용분과 편입학 여석 활용분을 합산

② 대학원, 대학원대학 : 입학정원의 합을 의미하며, 대학원의 종류에 따라 입학정원을 근거로 대학원 학생정원 산출 기준에 따라 환산

편제완성여부	구분	산출공식	비고
완성	4학기제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대학원대학	(2026+2025학년도 입학정원) × 1.5
	5학기제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대학원대학	(2026+2025+2024학년도 입학정원의 1/2) × 1.5

편제완성여부	구분		산출공식	비고
미완성	6학기제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대학원대학	$(2026+2025+2024\text{학년도 입학정원}) \times 1.5$	
	8학기제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대학원대학	$(2026+2025+2024+2023\text{학년도 입학정원}) \times 1.5$	
	1~2학기 (1차연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대학원대학	$(2026\text{학년도 입학정원}) \times 1.5$	
미완성	3~4학기 (2차연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대학원대학	$(2026+2025\text{학년도 입학정원}) \times 1.5$	
	5~6학기 (3차연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대학원대학	$(2026+2025+2024\text{학년도 입학정원}) \times 1.5$	

〈대학원〉

- ※ 학생정원 산정 시, '결손인원' 활용을 통한 '첨단학과 증원 인원'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 ※ 제외해야 하는 첨단학과 결손인원
 - 타 학과 정원 감축형: 첨단학과 정원에서 타 학과 누적 감축정원을 뺀 값(즉, 미감축 정원)
 - 타 학과 정원 유지형: 첨단학과 정원
 - * 타 학과 정원 감축형과 유지형이 혼재하는 경우, 각각의 활용분을 합산

〈대학원대학〉

- ※ 학생정원 산정 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③ 전문대학: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산출

편제완성 여부	구분		학생정원
			학과별 학년 입학정원의 합계
완성	단일 학과명	2년제(1·2학년 모두 있는 경우)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
		3년제(1·2·3학년 모두 있는 경우)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3학년 입학정원
	학과 명칭 변경 (A→B)	학칙에 따라 기존 학생의 학적까지 모두 B학과로 이동할 경우	2년제: B학과 =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 3년제: B학과 =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3학년 입학정원
		학칙에 따라 기존 학생의 학적은 A학과로 유지할 경우	2년제: B학과 1학년 입학정원, A학과 2학년 입학정원 3년제: B학과 1학년 입학정원, A학과 2~3학년 입학정원
	2026년 1학년 입학정원이 없는 학과의 경우		2년제(2학년만 있는 경우): 2학년 입학정원
			3년제(2·3학년만 있는 경우): 2학년 입학정원+3학년 입학정원
3년제(3학년만 있는 경우): 3학년 입학정원			
미완성	2026학년도에 기존의 학과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어 1학년만 있는 경우		2년제: 학과별 1학년 입학정원 3년제: 학과별 1학년 입학정원
	2026학년도에 신설되어 1·2학년만 있는 3년제 학과의 경우		3년제(1·2년만 있는 경우):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

- ※ 학생정원 산정 시, '결손인원' 또는 '편입학여석' 활용을 통한 '첨단학과 증원 인원'(총 정원범위 내 자체조정, 또는 국립대 증원을 통한 첨단학과 정원 증원분은 입학정원에 포함)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 ※ 제외해야 하는 첨단학과 결손인원/편입학여석 활용분
 - 결손인원 활용 방식: 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위해 활용한 결손인원에서 타 학과 누적 감축정원을 뺀 값
 - 편입학 여석 활용 방식: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증원한 첨단학과 정원
 - * 결손인원 활용과 편입학 여석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결손인원 활용분과 편입학 여석 활용분을 합산
- ※ 학생정원 산출 공식에 따라 산출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산정

④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학생정원 환산 방법

- 총정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

$$\text{계열별 환산정원} = (500\text{명} - \text{총정원}) \times \frac{\text{계열별 학생정원}}{\text{총정원}} + \text{계열별 학생정원}$$

- 총정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

$$\text{계열별 환산정원} = (200\text{명} - \text{총정원}) \times \frac{\text{계열별 학생정원}}{\text{총정원}} + \text{계열별 학생정원}$$

【재학생】 : 2026. 4. 1. 기준 재학 중인 자(단, 계약학과 및 원격학과 재학생 수 제외, 원격대학원 재학생 수 제외)

① 대학, 전문대학: 2026. 4. 1. 기준 재학 중인 학생 수

② 대학원, 대학원대학: 2026. 4. 1. 기준 재학생 수를 대학원 종류에 따라 아래 산출 공식에 따라 환산 인원 산출

〈대학원 재학생 환산 인원 공식〉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대학원대학, 계절제 교육대학원 : $(A+B+D+E) \times 1.5 + (C/2) \times 1.5$

○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대학원대학/계절제 교육대학원의 경우

구분	수업연한별 재학생 수						공식	재학생 환산 인원 계 $(A+B+D+E) \times 1.5 + (C/2) \times 1.5$
	2년(4학기) (A)	2.5년(5학기)		3년(6학기) (D)	4년(8학기) (E)	계 (F)		
		올해+전년도 입학자 (B)	재작년 이전 입학자 (C)					
석사과정							1.5	
박사과정							1.5	
석/박사통합과정							1.5	
소계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①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 ② 2026. 4. 1.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국·공립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④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고 교양교육 등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강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HK, 중점연구소사업 등)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
- ※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가능

○ 국·공립대 기금교수는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학연금에 가입된 교원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교원

○ HK교수

- 국·공립대는 「HK교수 운영규정」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되고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교원
- 사립대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계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국·공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
- 사립대는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전임교원으로 입력 불가

전임교원 인정 제외대상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②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또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③ 학교교육·지도, 학문연구 및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 ④ 학교(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휴직상태의 교원 중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경우(아래의 사유 외에 기타 청원에 의한 휴직은 교원확보율에서 제외됨)

- ①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의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정관에 명시된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 ③ 고용휴직(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에 휴직하고 산업체에서 급여를 받음.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참고)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6-가-1. 전체 교원대비 전임교원 현황의 기타(소속학과없음)에 입력된 교원)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의 전임교원 수에서 제외됨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 재학생 기준 교원확보율 및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산출 시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에서 안식년/연구년제 교원(국립·공립·사립), 파견 교원(국립·공립) 중 전임교원 조건 미충족자를 제외한 교원 수

참고

〈교원확보율 및 교원1인당 학생 수(재학생 기준)에서 제외되는 전임교원〉

구분	설립구분	관련 규정	제외 교원
안식년/연구년제	국립·공립·사립	연구의무 부과, 선발요건 및 인원제한, 종료 후 의무복무 근거 마련, 지정제한 등	안식년/연구년제 근거 및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안식년/연구년제 교원
파견	국립·공립	안식년/연구년제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 부여 및 이와 연계한 지정제한 등	파견규정 근거 및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파견교원

〈안식년/연구년 교원(국립·공립·사립) 및 파견교원(국립·공립) 전임교원 인정 조건〉

- 1) 안식년/연구년 교원(국립·공립·사립)
 - 학칙 또는 규정에 안식년/연구년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연구의무 부과, 선발요건 및 인원제한, 종료 후 의무복무 근거 마련, 지정제한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전임교원에 포함

안식년/연구년 관련 규정 예시(안)

- ▶ (의무사항) 1) 종료 후 연구보고서 제출, 2) 안식년·연구년 기간 00배 의무복무
- ▶ (선발요건) 재직기간 00년 이상인 자
- ▶ (선발인원) 안식년·연구년 및 파견 포함 전체 교수의 00% 이내
- ▶ (지정제한) 최근 00년 이내 안식년·연구년, 최대 00회, 통산 00년 등

참고

2) 파견교원(국립·공립)

- 학칙 또는 규정에 파견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7호 파견교원에게는 안식년/연구년과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여, 안식년/연구년과 연계한 지정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전임교원에 포함
-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7호: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7호 파견 관련 규정 예시(안)

- ▶ (지정제한) 최근 00년 이내 안식년/연구년/파견인 경우 제한
- ▶ (기타 선발요건·인원·의무사항) 안식년/연구년 교원과 유사하게 규정

【교원 법정정원】

-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별표 5]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학생정원, 재학생별)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예: 환산인원이 5.2명일 경우 6명) 교원 법정정원을 산출

대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25	20	20	20	8

- 기술대학: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제1항 [별표 4]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학생정원, 재학생별)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예: 환산인원이 5.2명일 경우 6명) 교원 법정정원을 산출

대계열	사회실무	자연·공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25	20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학생정원 기준】 : (학생정원 /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 자리로 표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재학생 기준】 : (재학생 /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전임교원확보율-학생정원 기준】 :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 학생정원 기준 교원 법정정원 × 100),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전임교원확보율-재학생 기준】 :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 재학생 기준 교원 법정정원 × 100),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 참고사항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6-나-(2)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사이버대학)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8월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2026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6. 4. 1.)

○ 대학

(단위: 명, %)

기준 연도	학생 현황							전임교원 현황		교원 법정정원		교원(겸임, 초빙) 인정인원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정원			재학생				학생정원 기준 (B)	재학생 기준 (B')	학생정원 기준 (C)	재학생 기준 (C')	학생정원 기준 (D)	재학생 기준 (D')	학생정원 기준 (A/B)	재학생 기준 (A'/B')
	학부	대학원	계 (A)	학부	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계 (A')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겸임, 초빙 포함) 1인당 학생 수					교원(겸임, 초빙 포함) 확보율							
학생정원 기준 (B/C×100)			재학생 기준 (B'/C'×100)		학생정원 기준 {A/(B+D)}		재학생 기준 {A'/(B'+D')}		학생정원 기준 {(B+D)/C×100}		재학생 기준 {(B'+D')/C'×100}				

○ 전문대학

(단위: 명, %)

기준 연도	학생 현황				전임교원 현황		교원 법정정원		교원(겸임, 초빙) 인정인원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정원	재학생			학생정원 기준 (B)	재학생 기준 (B')	학생정원 기준 (C)	재학생 기준 (C')	학생정원 기준 (D)	재학생 기준 (D')	학생정원 기준 (A/B)	재학생 기준 (A'/B')
		학부	시간제 등록생	계 (A')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겸임, 초빙 포함) 1인당 학생 수				교원(겸임, 초빙 포함) 확보율					
학생정원 기준 (B/D×100)			재학생 기준 (B'/D'×100)		학생정원 기준 {A/(B+D)}		재학생 기준 {A'/(B'+D')}		학생정원 기준 {(B+D)/C×100}		재학생 기준 {(B'+D')/C'×100}	

■ 작성지침

【학생현황】 : 학생정원, 재학생 및 시간제등록생

【학생정원】

- ① 학부: 2026~2023년도 신입학 입학정원 + 2026~2025학년도 별도편입학 입학정원
- ② 대학원: 입학정원의 합을 의미하며, 대학원의 종류에 따라 입학정원을 근거로 대학원 학생정원 산출기준에 따라 환산

〈대학원〉

편제완성여부	구분		산출공식
완성	4학기제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2026+2025학년도 입학정원) × 1.5
	5학기제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2026+2025+2024학년도 입학정원의 1/2) × 1.5
	6학기제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2026+2025+2024학년도 입학정원) × 1.5
	8학기제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2026+2025+2024+2023학년도 입학정원) × 1.5
미완성	1~2학기 (1차연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2026학년도 입학정원) × 1.5
	3~4학기 (2차연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2026+2025학년도 입학정원) × 1.5
	5~6학기 (3차연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2026+2025+2024학년도 입학정원) × 1.5

③ 전문대학 :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산출

편제완성 여부	구 분		학생정원
			학과별 학년 입학정원의 합계
완성	단일 학과명	2년제(1·2학년 모두 있는 경우)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
		3년제(1·2·3학년 모두 있는 경우)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3학년 입학정원
	학과 명칭 변경 (A→B)	학칙에 따라 기존 학생의 학적까지 모두 B학과로 이동할 경우	2년제: B학과 =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 3년제: B학과 =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3학년 입학정원
		학칙에 따라 기존 학생의 학적은 A학과로 유지할 경우	2년제: B학과 1학년 입학정원, A학과 2학년 입학정원 3년제: B학과 1학년 입학정원, A학과 2·3학년 입학정원
	2026년 1학년 입학정원이 없는 학과의 경우		2년제(2학년만 있는 경우): 2학년 입학정원
			3년제(2·3학년만 있는 경우): 2학년 입학정원+3학년 입학정원
3년제(3학년만 있는 경우): 3학년 입학정원			
미완성	2026학년도에 기존의 학과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어 1학년만 있는 경우		2년제: 학과별 1학년 입학정원 3년제: 학과별 1학년 입학정원
	2026학년도에 신설되어 1·2학년만 있는 3년제 학과의 경우		3년제(1·2학년만 있는 경우): 1학년 입학정원+2학년 입학정원

【재학생】

- ① 대학, 전문대학: 2026. 4. 1. 기준 재학중인 자(정원내 및 정원의 전체. 단, 계약학과 재학생 수 제외)
- ② 대학원: 학생정원(입학정원 합)의 1.5배(학생정원 산출 기준과 동일함)
- ③ 시간제등록생: 2026. 4. 1. 기준 시간제등록생 수 3명을 1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①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 ② 2026. 4. 1.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국·공립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④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고 교양교육 등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강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HK, 중점연구소사업 등)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
※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가능

- 국·공립대 기금교수는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학연금에 가입된 교원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교원

- HK교수

- 국·공립대는 「HK교수 운영규정」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되고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교원
- 사립대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국·공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

- 사립대는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전임교원으로 입력 불가

전임교원 인정 제외대상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②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또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③ 학교교육·지도, 학문연구 및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
④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여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휴직상태의 교원 중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경우(아래의 사유 외에 기타 청원에 의한 휴직은 교원확보율에서 제외됨)

- ①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의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정관에 명시된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 ③ 고용휴직(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에 휴직하고 산업체에서 급여를 받음.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참고)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6-가-1. 전체 교원대비 전임교원 현황의 기타(소속학과없음)에 입력된 교원)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의 전임교원 수에서 제외됨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 재학생 기준 교원확보율 및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산출 시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에서 안식년/연구년제 교원(국립·공립·사립), 파견 교원(국립·공립) 중 전임교원 조건 미충족자를 제외한 교원 수

참고			
〈교원확보율 및 교원1인당 학생 수(재학생 기준)에서 제외되는 전임교원〉			
구분	설립구분	관련 규정	제외 교원
안식년/연구년제	국립·공립·사립	연구의무 부과, 선발요건 및 인원제한, 종료 후 의무복무 근거 마련, 지정제한 등	안식년/연구년제 근거 및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안식년/연구년제 교원
파견	국립·공립	안식년/연구년제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 부여 및 이와 연계한 지정제한 등	파견규정 근거 및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파견교원

참고

<안식년/연구년 교원(국립·공립·사립) 및 파견교원(국립·공립) 전임교원 인정 조건>

1) 안식년/연구년 교원(국립·공립·사립)

- 학칙 또는 규정에 안식년/연구년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연구의무 부과, 선발요건 및 인원제한, 종료 후 의무복무 근거 마련, 지정제한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전임교원에 포함

안식년/연구년 관련 규정 예시(안)

- ▶ (의무사항) 1)종료 후 연구보고서 제출, 2)안식년·연구년 기간 00배 의무복무
- ▶ (선발요건) 재직기간 00년 이상인 자
- ▶ (선발인원) 안식년·연구년 및 파견 포함 전체 교수의 00% 이내
- ▶ (지정제한) 최근 00년 이내 안식년·연구년, 최대 00회, 통산 00년 등

2) 파견교원(국립·공립)

- 학칙 또는 규정에 파견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7호 파견교원에게는 안식년/연구년과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여, 안식년/연구년과 연계한 지정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전임교원에 포함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7호 :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7호 파견 관련 규정 예시(안)

- ▶ (지정제한) 최근 00년 이내 안식년/연구년/파견인 경우 제한
- ▶ (기타 선발요건·인원·의무사항) 안식년/연구년 교원과 유사하게 규정

【교원 법정정원】 : 학생의 학생정원과 재학생 수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200명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이하는 올림하여(예: 환산인원이 5.2명일 경우 6명) 교원 법정정원을 산출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1. 사이버대학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 등을 둔다.
2.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 등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 또는 학부 등에 전공별로 교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총수는 학생 수를 2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인원을 합한 수 또는 학생정원 중 그 수가 많은 인원
 - 가. 대학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 다. 시간제등록 인원을 3으로 나눈 수
 -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제1호의 학생 수와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 수
 - ※ 대학원이 있는 대학의 교원 법정정원은 학부와 대학원의 학생 학생정원, 재학생을 각각 합한 후 교원 법정정원을 산출하는 교육기본통계조사의 교원 법정정원 지침을 따름

【교원(겸임, 초빙) 인정 인원】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 또는 초빙교원 중 전체 교원법정정원(학생정원 및 재학생)의 범위 내(교원 법정정원의 1/5 이내)에서 산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학생정원 기준】 : (학생정원 /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재학생 기준】 : (재학생 /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전임교원확보율-학생정원 기준】 : $(\text{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 \text{학생정원 기준 교원 법정정원} \times 100)$,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전임교원확보율-재학생 기준】 : $(\text{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 \text{재학생 기준 교원 법정정원} \times 100)$,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교원(겸임, 초빙 포함) 1인당 학생 수-학생정원 기준】 : $(\text{학생정원} / (\text{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 \text{학생정원 기준 교원(겸임, 초빙) 인정인원}))$,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로 표시

【교원(겸임, 초빙 포함) 1인당 학생 수-재학생 기준】 : $(\text{재학생} / (\text{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 \text{재학생 기준 교원(겸임, 초빙) 인정인원}))$,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로 표시

【교원(겸임, 초빙 포함) 확보율-학생정원 기준】 : $(\text{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 \text{학생정원 기준 교원(겸임, 초빙) 인정인원}) / \text{학생정원 기준 교원법정정원} \times 100$,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로 표시

【교원(겸임, 초빙 포함) 확보율-재학생 기준】 : $(\text{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 \text{재학생 기준 교원(겸임, 초빙) 인정인원}) / \text{재학생 기준 교원법정정원} \times 100$,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로 표시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6-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6-다-1.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6년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6. 4. 1.)

(단위: 명)

기준연도	국가	전임교원							
		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 검증사항

【전임교원 합계】 : <6-다-2> 전임교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국가】 : 출신 국가명을 기입하고,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분류

【전임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인원을 입력

■ 참고사항

- 국가별 외국인 교원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6-다-2. 전공계열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6년 계열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 4. 1.)

(단위: 명)

기준연도	계열	전임교원							
		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소속학과 없음								
	합계								

■ 검증사항

【전임교원 합계】 : <6-다-1> 전임교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계열】 : 「대학설립·운영 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별표 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인문·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류

② 기술대학 :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 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사회실무계열	경영·관광·유통·보험 및 실용예술 등	
자연·공학계열	해양·농학·수산·이학 및 공학 등	

【전임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인원을 입력

■ 참고사항

- 전공계열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0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7-가.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 : 2026. 4. 1. 기준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2025. 1. 1. ~ 12. 31. 기간에 한국연구재단의 우수 등재,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국내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는 제외)에 게재한 논문 수

【기타 국내발간 일반학술지】 : 2026. 4. 1. 기준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2025. 1. 1. ~ 12. 31. 기간에 기타 국내발간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SCI급/SCOPUS 제외)에 게재한 논문 수

【SCI급/SCOPUS 학술지】 : 2026. 4. 1. 기준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2025. 1. 1. ~ 12. 31. 기간에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에 게재한 논문 수, 국내에서 발행되는 SCI급/SCOPUS 학술지 게재 논문을 포함
※ SCOPUS의 문서 유형 중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 Editorial, Letter, Note는 SCI급/SCOPUS학술지에서 제외(Editorial, Letter, Note는 2017. 3. 1.부터 제외 적용)

【기타 국제발간 일반학술지】 : 2026. 4. 1. 기준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2025. 1. 1. ~ 12. 31. 기간에 기타 국제발간 학술지 (SCI급, SCOPUS 학술지 제외)에 게재한 논문 수

【논문게재실적】 : 논문게재 실적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

※ ISSN 번호 혹은 e-ISSN 번호가 존재하는 논문실적만 인정

※ 논문게재 실적 산정 기준

- 단독저자인 경우 실적은 1건이며

- 논문저자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주저자 실적= $\frac{2}{n+2}$, 교신저자 실적= $\frac{2}{n+2}$, 공동저자 실적= $\frac{1}{n+2}$

* n = 논문저자 수, 논문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n=100으로 처리

- 학과별 논문실적: 논문 1편당 실적은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학과별 논문실적은 해당학과 전임 교원의 논문실적의 합계를 소수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넷째자리까지 표시

- 단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 학과별 논문실적 / 전임교원 수, 소수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넷째자리까지 표시

※ 저자의 구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함

- 저자의 구분(학문분야나 학술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아래의 지침을 따름)

· 주저자: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의 저자 목록 중 첫 번째로 표기된 제1저자나 논문 작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

· 교신저자: 학술지의 편집자와 서신 등을 주고받으며 논문 출판에 최종적으로 기여한 자 또는 연구프로젝트 책임자

· 공동저자: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공동 참여 저자

【저·역서】 : 2026. 4. 1. 기준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2025. 1. 1. ~ 12. 31. 기간에 출판한 단행본 저·역서 실적(단위: 건수)을 의미하며, 저·역서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

※ ISBN이 수록된 출판물만 인정

※ 제외: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 저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편집저자 등

※ 저·역서 수 산정 기준

- 단독저술 실적은 1건이며,

- 공동저술의 경우: $\frac{1}{n}$

* n = 저술에 참여한 인원수, 연구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 학과별 저·역서 실적: 저·역서 1편당 실적은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학과별 저·역서 실적은 해당

- 학과 전임교원의 저·역서 실적의 합계를 소수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넷째자리까지 표시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국내】 : 국내논문실적 /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국제】 : 국제논문실적 /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 : 한국연구재단의 우수등재, 등재 또는 등재후보(논문수) /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SCI급/SCOPUS 학술지】 : (SCI급 논문수 + SCOPUS 논문수) /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 저·역서 실적 / 전임교원 수

■ 참고사항

-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및 저·역서 실적은 한국연구재단(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8-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 8-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 8-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 8-사. 적립금 현황
- 8-아. 기부금 현황
- 8-자. 산학협력단회계 현황
- 8-차. 등록금 현황
- 8-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 8-타. 대학의 장, 이사장 및 상근(常勤)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8-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8-가-1. 국·공립대 대학회계 예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6월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국·공립대 대학회계 예산(당해연도 예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년 예산)

(단위: 원)

구분	관	항	목	금액		
세입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지원금		
	자체수입	교육활동수입		입학금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최고경영자과정 수업료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전형료 및 논문심사료	전형료 논문심사료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생활관 사용료수입	
				부담금	부담금	
				자산매각수입	유형자산매각수입 무형자산매각수입	
				이자수입	이자수입	
				제재금수입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연체료	
				기타수입	지원금 생산물 매각수입 동식물 매각수입 그외수입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등 사용잔액	보조금 사용잔액 지원금 사용잔액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입비		
	내부거래 및 기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산학협력단회계 전입금		
				발전기금회계 전입금		
	세입 합계					

(단위: 원)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금액
세출	유아교육	어린이집운영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역량강화	
		교직원인사관리	
		교직원단체관리	
		교직원복지지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교육활동운영지원	입학지원	
		교무학사지원	
		국제화지원	
		취업 및 창업 활성화	
	산학연활동지원	학술연구활동지원	
		연구기관운영	
	교육복지지원	장학금	
		학생활동 및 후생복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확충비	
		실험실 및 강의실여건개선	
	교육행정일반	기획 및 교육협력관리	
		도서관 및 정보화운영	
		기관운영관리	
예비비 및 기타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		
보조금 및 지원금	보조금		
	지원금		
세출 합계			

■ 작성지침

【예산】 : 2026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자료

※ 세입·세출 예·결산서 과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참조

【유의사항】 : 세입예산합계와 세출예산합계는 일치해야함

※ 국·공립대 예산 현황에 ‘별도의 회계를 사용하는 부속기관(부속중고, 부속병원 등)’의 현황은 포함되지 않음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가-2. 국·공립대 대학회계 결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8월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국·공립대 대학회계 결산(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구분	관	항	목	금액
세입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지원금	
	자체수입	교육활동수입	입학금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최고경영자과정 수업료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전형료 및 논문심사료	전형료
			논문심사료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생활관 사용료수입	
		부담금	부담금	
		자산매각수입	유형자산매각수입	
			무형자산매각수입	
		이자수입	이자수입	
		제재금수입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연체료			
	기타수입	지원금		
		생산물 매각수입		
		동식물 매각수입		
		그외수입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등 사용잔액	보조금 사용잔액	
			지원금 사용잔액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내부거래 및 기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신학협력단회계 전입금		
		발전기금회계 전입금		
세입 합계				

(단위: 원)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금액
세출	유아교육	어린이집운영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역량강화	
		교직원인사관리	
		교직원단체관리	
		교직원복지지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교육활동운영지원	입학지원
	교무학사지원		
	국제화지원		
	취업 및 창업 활성화		
	산학연활동지원	학술연구활동지원	
		연구기관운영	
	교육복지지원	장학금	
		학생활동 및 후생복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확충비	
		실험실 및 강의실여건개선	
	교육행정일반	기획 및 교육협력관리	
		도서관 및 정보화운영	
		기관운영관리	
		예비비 및 기타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	
	보조금 및 지원금	보조금	
지원금			
세출 합계			

■ 작성지침

【결산】 : 2025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자료

- ※ 세입·세출 예·결산서 과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참조
- ※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아닌 수납액을 기준으로 작성
- ※ 국·공립대 결산 현황에 '별도의 회계를 사용하는 부속기관(부속중고, 부속병원 등)'의 현황은 포함되지 않음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8-다-1.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예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3~4월(등록금 공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장학재단)

【공시내용】 :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예산(당해연도 예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년 예산)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세입	이월금		세출	경상비		
	기부금			목적사업비	장학사업비	
				연구지원비		
	법인세환급금			교육기자재 및 시설확충비		
잡수입		기타사업비				
세입 합계			기본재산증자비			
			차기이월금			
			예비비			
			세출 합계			

■ 작성지침

【예산】 : 2026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자료

【이월금】 : 전년도 이월액을 의미

【기부금】 : 지정기부금(목적사업)과 일반기탁금을 모두 포함

【법인세 환급금】 : 법인세 환급금액을 의미

【잡수입】 :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을 의미

【경상비】 : 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 재단 운영에 사용한 경비

【목적사업비 중 기타사업비】 : 장학사업, 연구지원, 교육기자재 및 시설확충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

【기본재산증자비】 : 발전기금회계의 기본재산 증자비

■ 참고사항

-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다-2.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결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7~8월(등록금 공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장학재단)

【공시내용】 :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결산(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세입	이월금		세출	경상비		
	기부금			목적사업비	장학사업비	
				연구지원비		
	법인세환급금			교육기자재 및 시설확충비		
				기타사업비		
	잡수입			기본재산증자비		
				차기이월금		
		예비비				
세입 합계		세출 합계				

■ 작성지침

【결산】 : 2025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자료

【이월금】 : 전년도 이월액을 의미

【기부금】 : 지정기부금(목적사업)과 일반기탁금을 모두 포함

【법인세 환급금】 : 법인세 환급금액을 의미

【잡수입】 :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을 의미

【경상비】 : 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 재단 운영에 사용한 경비

【목적사업비 중 기타사업비】 : 장학사업, 연구지원, 교육기자재 및 시설확충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

【기본재산증자비】 : 발전기금회계의 기본재산 증자비

■ 참고사항

-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2월(당해년도 예산), 5월(전년도 결산)(사립대학 예산·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6월(당해년도 예산), 8월(전년도 결산)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국립대법인, 특별법인인 예·결산 현황(당해년도 예산, 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년 예산, 2025년 결산)

(단위: 원)

수입 구분	당해년도 예산(A)	전년도 추가경정예산(B)	결산(C)	차액(B-C)	비고
법인회계(a)					
교비회계(b)					
내부거래제거(c)					
합계(a+b-c)					

※ 국립대법인, 특별법인인은 당해년도 수입지출 예산(6월),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8월) 현황을 대학 자체 양식에 따라 항 단위까지 작성하여 PDF파일로 공시

■ 작성지침

【법인회계】 : 법인일반회계

【교비회계】 : 특별회계를 포함

【당해년도 예산】 : 2026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자료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 2025 회계연도의 최종 세입·세출 예산자료

【결산】 : 2025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자료

■ 참고사항

- 사립대 예·결산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국립대법인, 특별법인인은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PDF 파일을 직접입력('8-라-(1). 예·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 (국립대법인, 특별법인) [PDF]' 항목에 직접입력)

8-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8-마-1. 법인회계 자금예산서(예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2월(사립대학 예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법인회계 자금예산서(당해연도 예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년 예산)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운영수입	전입금		운영지출	보수	
	기부금			관리운영비	
	국고보조금			연구학생경비	
	교육외수입			교육외비용	
		전출금			
			예비비		
자산 및 부채수입			자산 및 부채지출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수입 합계			지출 합계		

■ 작성지침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예산서에만 표시됨)

【국고보조금수입】 : 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합계】 :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 법인회계 자금예산서(예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마-2. 법인회계 자금계산서(결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법인회계 자금계산서(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운영수입	전입금		관리 운영비	보수		
	기부금			운영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국고보조금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교육외수입				그 외	
				운영비 외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				
자산 및 부채수입			자산 및 부채지출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수입 합계			지출 합계			

■ 작성지침

【국고보조금수입】 : 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합계】 :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 법인회계 자금계산서(결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마-2-(1) 법인회계 감사증명서[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법인회계 감사증명서(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PDF 파일 형태로 공시(자료기준일: 2025년 결산)

■ 작성지침

【감사증명서】 :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PDF 업로드)

※ 감사증명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전체를 의미함

■ 참고사항

- 사립대 법인회계 감사증명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마-3. 법인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법인회계 운영(손익)계산서(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운영수익	전입금		운영비용	보수	
	기부금			관리운영비	
	국고보조금			연구학생경비	
	교육외수입			교육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전출금	
수익 합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기본금 대체액		
			운영차액대체액		
			당기운영차액		
			비용 합계		

■ 작성지침

【운영수익/운영비용】 : 자금계산서 동일 계정의 금액과 일반적으로 동일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전입액은 결산서 반영 시 작성

【국고보조금수입】 : 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운영차액대체액】 : “+”값으로 입력, 운영비용합계에서 운영차액대체가 차감

【당기운영차액】 : 운영수익 - 운영비용(보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의 합계) - 기본금대체액 + 운영차액대체액

【합계】 : 수입합계와 비용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 법인회계 운영(손익) 계산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마-4. 법인회계 재무상태표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법인회계 재무상태표(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유동자산		유동부채	
투자외 기타자산		고정부채	
고정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자산 합계		기본금	
		부채와 기본금 합계	

■ 작성지침

【합계】 : 자산 합계와 부채와 기본금 합계(고유목적사업준비금 포함)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 법인회계 재무상태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마-5. 법인회계 적립금 운용계획서[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2월(사립대학 예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법인회계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당해연도 예산)

【공시양식】 : PDF 파일 형태로 공시(자료기준일 : 2026년 예산)

■ 작성지침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참조

■ 참고사항

- 사립대 법인회계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8-바-1.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예산)

8-바-1-(1) 교비회계(통합) 자금예산서(예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2월(사립대학 예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교비회계 자금예산서(당해연도 예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년 예산)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운영수입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등록금수입	운영지출	보수
		수강료수입		관리운영비
	전입금	법인전입금		연구학생경비
		기타전입금		교육외비용
	기부금			전출금
	국고보조금			예비비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자산 및 부채지출
	교육부대수입			자산 및 부채지출
교육외수입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자산 및 부채수입		자산 및 부채지출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수입 합계			지출 합계	

■ 작성지침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등록금수입】 : 학생들에게 받는 등록금수입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수강료수입】 : 특별강좌·특별교육강좌 개설 등의 단기교육 수강료

【전입금-법인전입금】 : 법인이 학교에 전출하는 전입금의 합(경상비 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전입금-기타전입금】 : 법인 이외에서 학교에 전출하는 전입금의 합(부속병원 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교내전입금)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예산서에만 표시됨)

【국고보조금수입】 : 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합계】 :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예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바-1-(2)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예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2월(사립대학 예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당해연도 예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년 예산)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운영수입	등록금수입		운영지출	보수	
	전입금			관리운영비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연구학생경비	
	교육외수입			교육외비용	
			전출금		
			예비비		
자산 및 부채수입			자산 및 부채지출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수입 합계			지출 합계		

■ 작성지침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예산서에만 표시됨)

【합계】 :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예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바-1-(2)-1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2월(사립대학 예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공시양식】 : PDF 파일 형태로 공시(자료기준일 : 2026 회계연도)

■ 작성지침

【잉여금】 : 2025 회계연도 자금계산서 결산의 차기이월자금 - 2026 회계연도 자금예산서(본예산) 전기이월자금

【잉여금 처리 원칙】 : 본예산 편성 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

【회의개최일】 : 해당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날

■ 참고사항

- 사립대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바-1-(3)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예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2월(사립대학 예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당해연도 예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년 예산)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운영수입	수강료수입		운영지출	보수	
	전입금			관리운영비	
	기부금			연구학생경비	
	국고보조금			교육외비용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전출금	
	교육부대수입			예비비	
	교육외수입				
자산 및 부채수입			자산 및 부채지출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수입 합계			지출 합계		

■ 작성지침

【수강료수입】 : 특별강좌·특별교육강좌 개설 등의 단기교육 수강료

【국고보조금】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교육부대수입】 : 교육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부대수입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예산서에만 표시됨)

【합계】 :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예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바-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

8-바-2-(1) 교비회계(통합) 자금계산서(결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위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통합공시 및 비교공시(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과목			수입 본예산 (A)	수입 결산 (B)	과목			지출 본예산 (A)	지출 결산 (B)		
운영 수입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등록금수입			운영 지출	보수					
		입학금 수업료				관리 운영비	운영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수강료수입					그 외			
	전입금	법인전입금					운영비 외				
		기타전입금				연구학생경비					
	기부금						교육외비용				
	국고보조금						전출금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예비비				
	교육부대수입						자산 및 부채지출				
	교육외수입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자산 및 부채수입					지출 합계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수입 합계											

■ 작성지침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등록금수입】 : 대학 신입생(편입생 포함)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수강료수입】 : 특별강좌·특별교육강좌 개설 등의 단기교육 수강료

【전입금-법인전입금】 : 법인이 학교에 전출하는 전입금의 합(경상비 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전입금-기타전입금】 : 법인 이외에서 학교에 전출하는 전입금의 합(부속병원 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교내전입금)

【국고보조금수입】 : 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본예산】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2025년 6월 공시된 본예산 자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예산서에만 표시됨)

【결산】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합계】 :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바-2-(2)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결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통합공시 및 비교공시(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과목		수입 본예산 (A)	수입 결산 (B)	과목		지출 본예산 (A)	지출 결산 (B)
운영 수입	등록금수입	입학금		운영 지출	보수		
		수업료			관리 운영비	운영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그 외	
			운영비 외				
	전입금				연구학생경비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교육외비용		
	교육외수입				전출금		
			예비비				
자산 및 부채수입				자산 및 부채지출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수입 합계				지출 합계			

■ 작성지침

【등록금수입】 : 대학 신입생(편입생 포함)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및 수업료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본예산】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예산서에만 표시됨)

【결산】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합계】 :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바-2-(3)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결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통합공시 및 비교공시(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과목		수입 본예산 (A)	수입 결산 (B)	과목			지출 본예산 (A)	지출 결산 (B)	
운영 수입	수강료수입			운영 지출	보수				
	전입금				관리 운영비	운영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기부금						그 외		
	국고보조금					운영비 외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연구학생경비				
	교육부대수입				교육외비용				
	교육외수입				전출금				
			예비비						
자산 및 부채수입				자산 및 부채지출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수입 합계				지출 합계					

■ 공시지침

【수강료수입】 : 특별강좌·특별교육강좌 개설 등의 단기교육 수강료

【국고보조금】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교육부대수입】 : 교육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부대 수입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본예산】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2025년 6월 공시된 본예산 자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예산서에만 표시됨)

【결산】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합계】 :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바-3. 교비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8-바-3-(1) 교비회계(통합) 운영(손익) 계산서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교비회계 운영(손익) 계산서(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운영수익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운영비용	보수	
	전입금			관리운영비	
	기부금			연구학생경비	
	국고보조금			교육외비용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전출금	
	교육부대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교육외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수익 합계			기본금대체액		
			운영차액대체액		
			당기운영차액		
			비용 합계		

■ 작성지침

【운영수익/운영비용】 : 자금계산서 동일 계정의 금액과 일반적으로 동일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전입액은 결산서 반영 시 작성

【국고보조금수입】 : 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운영차액대체액】 : “+”값으로 입력, 운영비용합계에서 운영차액대체가 차감

【당기운영차액】 : 운영수익 - 운영비용 - 기본금대체액 + 운영차액대체액

【합계】 : 수익합계와 비용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 교비회계 운영(손익) 계산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바-3-(2)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운영(손익) 계산서(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운영수익	등록금수입		운영비용	보수	
	전입금			관리운영비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연구학생경비	
	교육외수입			교육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전출금	
수익 합계			당기운영차액		
			비용 합계		

■ 작성지침

【운영수익/운영비용】 : 자금계산서 동일 계정의 금액과 일반적으로 동일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전입액은 결산서 반영 시 작성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당기운영차액】 : 운영수익 - 운영비용 + 운영차액대체액

【합계】 : 수익합계와 비용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 교비회계 운영(손익) 계산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바-3-(3)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운영(손익) 계산서(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운영수익	수강료수입		운영비용	보수	
	전입금			관리운영비	
	기부금			연구학생경비	
	국고보조금			교육외비용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전출금	
	교육부대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교육외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수익 합계			기본금대체액		
			운영차액대체액		
			당기운영차액		
			비용 합계		

■ 작성지침

【운영수익/운영비용】 : 자금계산서 동일 계정의 금액과 일반적으로 동일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전입액은 결산서 반영 시 작성

【국고보조금수입】 : 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은 합산하지 않음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운영차액대체액】 : “+”값으로 입력, 운영비용합계에서 운영차액대체가 차감

【당기운영차액】 : 운영수익 - 운영비용 - 기본금대체액 + 운영차액대체액

【합계】 : 수익합계와 비용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 교비회계 운영(손익) 계산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바-4. 교비회계 재무상태표

8-바-4-(1) 교비회계(통합) 재무상태표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교비회계 재무상태표(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유동자산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예수금
			선수금
			기타유동부채
투자외 기타자산		고정부채	
고정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자산 합계		기본금	
		부채와 기본금 합계	

■ 작성지침

【합계】 : 자산합계와 부채·기본금 합계(고유목적사업준비금 포함)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 교비회계 재무상태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바-4-(2)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재무상태표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재무상태표(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유동자산		유동부채	
투자외 기타자산		고정부채	
고정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자산 합계		기본금	
		부채와 기본금 합계	

■ 작성지침

【합계】 : 자산합계와 부채·기본금 합계(고유목적사업준비금 포함)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 교비회계 재무상태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바-4-(3)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재무상태표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재무상태표(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유동자산		유동부채	
투자외 기타자산		고정부채	
고정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자산 합계		기본금	
		부채와 기본금 합계	

■ 작성지침

【합계】 : 자산합계와 부채·기본금 합계(고유목적사업준비금 포함)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 사립대 교비회계 재무상태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바-5. 교비회계 적립금 운용계획서[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2월(사립대학 예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당해연도 예산)

【공시양식】 : PDF 파일 형태로 공시(자료기준일 : 2026년 예산)

■ 작성지침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참조

■ 참고사항

-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사. 적립금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적립금 현황(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

회계별	구 분	전기말 누계액 (A)	당기 인출액 (B)	당기 적립액 (C)	기타 증감 (D)	당기말 누계액 (E=A-B+C+D)	당기말 비율
법인 회계	원금보존 연구기금						
	원금보존 건축기금						
	원금보존 장학기금						
	원금보존 퇴직기금						
	원금보존 특정목적기금						
	계						
	임의연구기금						
	임의건축기금						
	임의장학기금						
	임의퇴직기금						
	임의특정목적기금						
	계						
소계						100%	
교비 회계	원금보존 연구기금						
	원금보존 건축기금						
	원금보존 장학기금						
	원금보존 퇴직기금						
	원금보존 특정목적기금						
	계						
	임의연구기금						
	임의건축기금						
	임의장학기금						
	임의퇴직기금						
	임의특정목적기금						
	계						
소계						100%	

(단위: 원, %)

회계별	구 분	전기말 누계액 (A)	당기 인출액 (B)	당기 적립액 (C)	기타 증감 (D)	당기말 누계액 (E=A-B+C+D)	당기말 비율
법인· 교비 회계 합계	원금보존 연구기금						
	원금보존 건축기금						
	원금보존 장학기금						
	원금보존 퇴직기금						
	원금보존 특정목적기금						
	계						
	임의연구기금						
	임의건축기금						
	임의장학기금						
	임의퇴직기금						
	임의특정목적기금						
	계						
	합계						100%

■ 작성지침

- 【전기말 누계액】 : 전년도 재무상태표 상 적립금 기말잔액과 일치
- 【당기인출액】 : 당해연도 자금계산서 상 적립금 인출액과 일치
- 【당기적립액】 : 당해연도 자금계산서 상 적립금 적립액과 일치
- 【기타 증감】 : 평가손익 등으로 인한 기타 증감
- 【당기말 누계액】 : 당해연도 재무상태표 상 적립금 기말잔액과 일치

■ 참고사항

- 사립대 적립금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아. 기부금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사립대 기부금 현황(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 원)

구 분	법인회계 (A)	교비회계 (B)	산학협력단회계 (C)	당해연도 합계 (D=A+B+C)	전년도 합계 (E)	당기 증감액 (F=D-E)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연구기부금						
합계						

■ 작성지침

【일반기부금】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연구기부금】 :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는 기부금

■ 참고사항

- 사립대 기부금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자. 산학협력단회계 현황

8-자-1. 산학협력단회계 현금예산서(예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2월(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예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국·공·사립대 산학협력단회계 현금예산서(당해연도 예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년 예산)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현금 유입액	운영활동 현금유입	산학협력수익		운영활동 현금유출	산학협력비	
		지원금수익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수익			간접비사업비	
		전입및기부금수익			일반관리비	
		운영외수익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			
	투자활동 현금유입	투자자산수입		투자활동 현금유출	투자자산지출	
		유형자산매각대			유형자산취득지출	
		무형자산매각대			무형자산취득지출	
		기타비유동자산수입			기타비유동자산지출	
	재무활동 현금유입	부채의치입		재무활동 현금유출	부채의상환	
		기본금의조달			기본금의반환	
	소계			소계		
	현금의 증감(유입-유출)					
예비비						
기초의 현금						
기말의 현금						

■ 작성지침

【예비비】 : 예산항목에서는 나타나나 결산에 나타나지 않은 값

【등식】 : 현금유입액 + 기초의 현금 = 현금유출액 + 예비비 + 기말의 현금

■ 참고사항

- 산학협력단회계 현금예산서(예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자-2.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결산)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국·공·사립대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현금 유입액	운영활동 현금유입	산학협력수익	현금 유출액	운영활동 현금유출	산학협력비		
		지원금수익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수익			간접비사업비		
		전입및기부금수익			일반관리비		
		운영외수익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					
	투자활동 현금유입	투자자산수입		투자활동 현금유출	투자자산지출		
		유형자산매각대			유형자산취득지출		
		무형자산매각대			무형자산취득지출		
		기타비유동자산수입			기타비유동자산지출		
	재무활동 현금유입	부채의차입		재무활동 현금유출	부채의상환		
		기본금의조달			기본금의반환		
	소계				소계		
	현금의 증감(유입-유출)						
기초의 현금							
기말의 현금							

■ 작성지침

【등식】 : 현금유입액 + 기초의 현금 = 현금유출액 + 기말의 현금

■ 참고사항

-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결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자-3. 산학협력단회계 운영 계산서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국·공·사립대 산학협력단회계 운영 계산서(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운영 수익	산학협력수익		운영 비용	산학협력비	
	지원금수익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수익			간접비사업비	
	전입및기부금수익			일반관리비	
	운영외수익			운영외비용	
수입 합계			비용 합계		
				학교회계전출금	
				당기운영차손익	

■ 참고사항

- 산학협력단회계 운영 계산서(결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자-4. 산학협력단회계 재무상태표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국·공·사립대 산학협력단회계 재무상태표(전년도 결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자산		기본금	출연기본금	
				적립금	
				운영차익	
자산 합계			부채와 기본금 합계		

■ 작성지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무관련 항목으로 비유동부채 또는 기본금으로 계상되어 있음

■ 참고사항

- 산학협력단회계 재무상태표(결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차. 등록금 현황

8-차-1. 등록금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3~4월, 7~8월(등록금 공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4월(등록금 현황), 8월(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장학재단)

【공시내용】 : 학과별·학년별 학생 1인당 등록금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등록금) 2026년, (계절학기) 2025년)

○ 대학, 전문대학

(단위: 명, 원)

등록금 현황(4월)															
기준연도	단과대학	학과(전공)	계열	구분	학과특성	학년구분	입학정원	수업료(B)	등록금(D=B)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과 평균									
						인문·사회계열 평균									
						자연과학계열 평균									
						공학계열 평균									
						예·체능계열 평균									
						의학계열 평균									
						학교 평균									

○ 대학

(단위: 학점, 원)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8월)				
구분		총 신청 학점(A)	총 수강료수입(B)	학점당 평균액 (C=B/A)
대학 (2025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대학원 (2025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 전문대학

(단위: 학점, 원)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8월)				
구분		총 신청 학점(A)	총 수강료수입(B)	학점당 평균액 (C=B/A)
전문대학 (2025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 작성지침

【입학정원】 : 대학이 정하는 정원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 ※ 계절제·원격·산업체위탁·특별과정·계약학과·산학협력 취업약정제·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은 제외(단, 총정원내 입학정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 ※ 진학 가능한 학과별 입학정원이 학칙상 정해지지 않은 전공자율선택제의 경우, 진학 가능한 학과(전공)의 등록금 합을 진학 가능한 학과 수로 나눠 학과 등록금을 산정
(예 : (등록금) A학과 300만 원, B학과 400만 원, C학과 500만 원, D학과 600만 원, (학과 수) 4개인 경우
 $(300+400+500+600) \div 4 = 450$ 만 원)
 - 진학 가능한 학과별 입학정원이 학칙상 정해진 경우, 진학 가능한 학과(전공)들의 입학정원 가중평균 방식을 통해 등록금을 산정
 - 학년별 진학 가능한 학과의 등록금이 동일하다면 책정된 동일 등록금을 입력
- ※ 학과별 진학 가능한 입학정원이 학칙상 정해지지 않은 자율전공학부의 경우 또는 동일 모집단위에서 계열별·학과별·전공별 수업료가 상이한 경우, 통합·학과별 관리기준에 따라 산정 방식을 달리하여 입학정원 및 등록금을 산정
 - (통합관리) 입학정원은 학칙상 정해진 입학정원을 입력하되, 등록금은 전공자율선택제 산정 방식을 준용함
 - (학과별 관리) 입학정원은 대학원 총정원제*로 배정하여 입력하되, 등록금은 학과별 책정된 등록금을 입력

〈통합·학과별 관리기준 입력방식 예시〉									
구분	학과명	입학정원				등록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통합관리	자율전공학부	□	□	□	□	□	□	□	□
학과별관리	자율전공학부	△	-	-	-	△	-	-	-
	A학과	-	△	△	△	-	△	△	△
	B학과	-	△	△	△	-	△	△	△
	C학과	-	△	△	△	-	△	△	△
	D학과	-	△	△	△	-	△	△	△

* 자율전공학부 총입학정원(정원 내)을 자율전공학부에서 진학가능한 총학과 수(정원 내)로 나눠 학과별 입학정원을 산출하여 입력(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되, 반올림 결과 전체 입학정원과의 차이에 한하여 학교 재량에 따름)

- 진학 가능한 학과별 입학정원이 학칙상 정해진 경우, 진학 가능한 학과(전공)들의 입학정원 가중평균 방식을 통해 등록금을 산정
- 학년별 진학 가능한 학과의 등록금이 동일하다면 책정된 동일 등록금을 입력
- ※ 같은 학부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전공이 운영되며(4년, 5년 등) 입학정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5학년 정원은 대학에서 정한 정원내로 입력(만약 정해지지 않은 경우 5학년 정원은 전년도 4학년 입학정원에서 전년도 4학년 재학생 중 5학년 진학(예정)자 비율로 당해연도 5학년 입학정원을 산출하여 입력)
(예 : 전년도 4학년 입학정원이 100명, 전년도 4학년 재학생이 95명, 5학년 진학(예정)자가 30명인 경우
 $(30 / 95) \times 100 = 32$ 명)

【수업료】 : 학과별 2026년 책정된 학생 1인당 연간 수업료

【등록금】 : 학과별 2026년 책정된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 ※ 계절제·원격·산업체위탁·특별과정·계약학과·산학협력 취업약정제·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의 수업료가 책정된 경우 수업료 입력
- ※ 신청한 학점으로 등록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함
- ※ 사이버대학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함
 - 1~3학년 : 학점당 등록금 × 연 36학점
 - 4학년 : 학점당 등록금 × 연 32학점
-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중 수업연한 2년 과정은 3, 4학년에, 수업연한 1년 과정은 4학년에 등록금 입력

【학과 평균】 : 해당학과 전체학년(학년별 등록금 × 학년별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 해당학과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계열 평균】 : 해당계열 전체학과(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 학년별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 해당계열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학교 평균】 : 전체학과(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 학년별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 전체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 :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은 이에 관련한 총 신청 학점과 총 수강료수입을 위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고, 결정사항은 여름학과 겨울학과를 각각 모두 작성함(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입력 가능)

※ '9-가-1. 등록금 산정근거'를 통해 8월 조사하며, 4월 공시된 '8-차. 등록금 현황'에 추가 반영되는 사항임

■ 참고사항

- 등록금 현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은 대학 장표에 대학 부설 대학원의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
- 학점당 등록금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교란에 '학점당 등록금제'로 기재

8-차. 등록금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3~4월, 7~8월(등록금 공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4월(등록금 현황), 8월(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장학재단)

【공시내용】 : 학과별·학기별 학생 1인당 등록금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등록금) 2026년, (계절학기) 2025년)

○ 대학원, 대학원대학

(단위: 명, 원)

기준 연도	단과대학	학과(전공)	계열	구분	학과특성	과정	학기 구분	입학 정원	입학금 (A)	수업료 (B)	등록금 (D=B)	비고
							1학기	해당없음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학과 평균										
		인문·사회계열 평균										
		자연과학계열 평균										
		공학계열 평균										
		예·체능계열 평균										
		의학계열 평균										
		학교 평균										

○ 대학원대학

(단위: 학점, 원)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8월)				
구분		총 신청 학점(A)	총 수강료수입(B)	학점당 평균액(C=B/A)
대학원대학 (2025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 작성지침

【입학정원】 : 대학원이 정하는 정원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홀수 학기에 연간정원을 입력)

※ 계절제·원격·산업체위탁·특별과정·계약학과·산학협력 취업약정제·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은 제외(단, 총정원내 입학 정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 총정원제로 운영하여 학과별 입학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총정원(정원 내)를 총학과 수(정원 내)로 나눠 학과별 입학 정원을 산출하여 입력(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되, 반올림 결과 전체 입학정원과의 차이에 한하여 학교 재량에 따름)

- 1학기(2026 입학정원), 3학기(2025 입학정원), 5학기(2024 입학정원)에 각각 산출한 입학정원을 입력

- 이때 4학기 과정은 입학정원을 1, 3학기에만 입력하고 5학기 과정은 1, 3, 5학기에 입력하며 6학기 이상의 과정의 경우에도 1, 3, 5학기까지에만 입력
- 학과·전공을 공동운영하는 경우, 총입학정원(정원 내)을 총학과수(정원 내)로 나눈 다음 전공과정 운영하는 해당학과 입학정원을 전공수(정원 내)로 나누어 입력
- 학과별 입학정원이 학칙상 정해진 경우, 해당 입학정원을 입력

예시

- 2026년도 총정원(정원 내)이 200명이고, 총학과 수(정원 내)가 총 4개인 대학원의 당해연도 학과별 예상 입학정원은?
 ☞ 학과별 입학정원: 총정원 200 ÷ 총학과 수 4 = 50명
- (학과·전공 공동운영) 2026년도 총정원(정원 내)이 200명이고, 총학과 수(정원 내)가 총 4개이며 그중 A학과는 3개의 전공으로 관리할 시 대학원의 당해연도 학과별 예상 입학정원은?
 ☞ (A학과 제외)학과별 입학정원: 총정원 200 ÷ 총학과 수 4 = 50명
 ☞ (A학과)전공별 입학정원: 학과별 입학정원 50 ÷ 전공 수 3 = 16.7명(단수조정은 대학 재량)

※ 총정원제 대학원의 입력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공시조사 지침 참조

【입학금】 : 학과별 2026년 책정된 학생 1인당 입학금

【수업료】 : 학과별 2026년 책정된 학생 1인당 학기별 수업료

- 수업료, 등록금은 1~6학기에 각 학기별 금액을 학과 편제에 맞춰 입력

※ 수업료는 해당 학과의 편제에 맞추어 입력하고, 홀수·짝수(1·2학기, 3·4학기) 학기의 수업료가 다른 경우, 수업료의 평균을 홀수·짝수학기에 각각 입력

【등록금】 : 학과별 2026년 책정된 학생 1인당 학기별 등록금

※ 계절제·원격·산업체위탁·특별과정·계약학과·산학협력 취업약정제·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의 입학금, 수업료가 책정된 경우 입학금, 수업료 입력

【학과 평균】 : (전체학기(학기별 등록금 ×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학기 입학정원의 합)

【계열 평균】 : (해당계열 전체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 해당계열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학교 평균】 : (전체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 ×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참고사항**

- 등록금 현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은 대학 장표에 대학 부설 대학원의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
- 학점당 등록금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학점당 등록금제'로 기재

8-차-2.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3~4월, 7~8월(등록금 공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4월(실시 현황), 8월(이용 현황)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장학재단)

【공시내용】 : 2026년 1학기 등록금 납부제도 및 이용학생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실시 현황) 2026년 1학기, (이용 현황) 2026. 6. 30.)

(단위: 회, 건, 명, 원, %)

기준 연도	등록금 납부방법		실시 현황(4월)								이용 현황(8월)			
			최초 시행 연도	당해연도 실시 여부	분납 개월수	분납 가능 횟수	분할납부제 관련 제한 여부			분할 납부 시스템 서비스 여부	거래 카드사수	이용 학생 수	이용 금액	학교 부담 카드 수수료율
							장학금 수혜자 제한	행정사항						
								제 증명서 발급제한	장학금 지급 제한					
납부 방법	분할													
	일시													
납부 수단	계좌이체													
	학교창구													
	카드													
등록금 고지서 반영	분할납부제 표기 여부													
	카드납부제 표기 여부													
합계														

■ 작성지침

【분할】 : 월별분납, 분기납, 납부연기 등 등록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납 횟수나 분납 개월 수는 최댓값으로 표기

- ① 월별분납: 등록금을 월별로 분납하는 경우
- ② 분기납: 등록금을 분기별로 분납하는 경우
- ③ 납부연기: 등록금의 납입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계좌이체】 : 등록금의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학교 대표계좌,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고지서 및 지로영수증을 통한 계좌이체 등 포함)

【학교창구】 : 대학 창구를 이용하여 오프라인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카드】 : 등록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부담 카드수수료율】 : 카드납부시 학교에서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

※ 카드사가 둘 이상인 경우 평균으로 기재

【최초 시행연도】 : 등록금 납부제도별 최초 시행연도를 선택

【당해연도 실시여부】 : 당해연도에 실시한 경우 [예, 아니오] 중 [예] 선택

【분납 개월수】 : 해당 학기 개시 후 분할납부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

【분납 가능 횟수】 : 해당 학기 개시 이전 납부 횟수를 포함한 총 분할납부 횟수

※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제5조(징수기일)

(예: 해당 학기 개시 후 3개월 동안, 해당 학기 개시 이전 납부 횟수를 포함하여 4회 나누어 납부할 경우, 분납 개월수는 3개월, 분납 횟수는 4회로 기재)

【분할납부제 관련 제한 여부】 : 분할납부 신청에 있어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

① '장학금 수혜자'의 분할납부 신청 제외 대상 포함 유무

(예: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 분할납부 신청을 제한할 경우, 제한여부 '예'로 기재)

【행정사항】 : 분할납부 이용자에게 대학의 행정제재가 있는지 여부

① 제증명 발급 제한: 분할납부 신청자의 제증명 발급 제한 여부 또는 분납금 미납 또는 연체자의 제증명 발급 제한 여부

② 장학금 지급 제한: 분할납부 대상학생에게(일시납부 재학생과 차별적으로) 교내·외 장학금의 지급을 제한하는지 여부

【분할납부 시스템 서비스 여부】 : 온라인상에서 분할납부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거래카드사 수】 : 카드납부 이용이 가능한 카드사 수

【등록금 고지서 반영】

① 고지서상 '당해연도 실시여부'에 대한 고지여부

② 고지서상 '분납 개월수'에 대한 고지여부(매월 납부일 고지 여부)

③ 고지서상 '분납 가능횟수'에 대한 고지여부

④ 고지서상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제한 사항 고지여부

⑤ 고지서상 '제증명서 발급 제한 유무'에 대한 고지여부

⑥ 고지서상 '장학금 지급 제한'에 대한 고지여부

⑦ 고지서상 '분할납부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고지여부

⑧ 고지서상 '거래카드사'에 대한 고지여부

【이용학생 수】 : 2026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방법별 학부 및 대학원 이용학생 수의 합(2026. 6. 30. 기준)

【이용금액】 : 2026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방법별 학부 및 대학원 이용금액의 합(2026. 6. 30. 기준)

※ 등록금 납부 후 자퇴하여 일부 금액을 환불한 경우, 환불 후 남은 금액을 이용금액에 포함하여 입력

※ 선감면 장학금과 후지급 장학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 실수납액 기준으로 입력하며, 등록금 고지서상 선감면 장학금은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입력

(예: 등록금이 100만원이고 선감면이 20만원일 때, 학생이 등록금을 낼 때 80만원만 내므로 80만원 입력
 등록금이 100만원이고 후지급이 20만원일 때, 후지급은 학생이 등록금을 100만원을 내고 추후에 지급하는 장학금이므로 100만원 입력)

■ 참고사항

-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에서 등록금이란 입학금 및 수업료의 합계임

8-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8-카-1.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8-카-1-(1) 입학 전형료 수입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6월(대학 입학 전형료 관리시스템), 8월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화지원팀), 직접입력

【공시내용】 : 2025년 결산 기준 입학 전형료 수입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명, 원)

기준연도	구분	학부 신입학		합계
		수시	정시	
	입학 전형료 납부 인원			
	입학 전형료 수입 총액			

■ 작성지침

【입학 전형료 납부 인원】 : 회계연도 범위 내 입학 전형료를 납부한 지원자 수

【입학 전형료 수입 총액】 : 입학원서대, 일반관리비, 수험료, 전형료, 실기고사료, 논술고사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학의 입학과 관련하여 입시지원자로부터 수수하는 금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상의 가액

※ 사립대의 경우 입학 전형료 수입 총액은 교비회계 수입 항목의 일부인 '입시수수료수입' 항목으로 들어오는 금액이어야 함(편입학, 대학원, 기타 특수과정^{*}의 입학 전형료는 제외하므로 '입시수수료수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평생교육원, 시간제등록제·특별과정 등 단기과정

※ 단,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입학 전형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시관리비에 포함되었다면 입력에서 모두 제외할 것

■ 참고사항

-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 입학 전형료 관리시스템)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대학 입학 전형료 관리시스템 조사대상: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이 실시하는 신입생 모집(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원격대학 및 전문대학은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카-1-(2) 입학전형 관련 지출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6월(대학 입학 전형료 관리시스템), 8월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화지원팀), 직접입력

【공시내용】 : 2025년 결산 기준 입학 전형료 지출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기준연도	내역		학부 신입학			합계
			수시	정시	공통(수시·정시)	
	수당	출제 수당				
		평가 수당				
		감독 수당				
		준비·진행 수당				
		전형안내 수당				
		회의 수당				
	경비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주차료				
		시설 사용료				
	기타					
	합계					

* 기타는 전문대학만 해당

■ 작성지침

【입학 전형료 지출】 : 입시수당과 입시경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학의 입학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상의 가액

※ 사립대의 경우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합계는 교비회계 지출 항목의 일부인 '입시관리비' 항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어야 함(편입학, 대학원, 기타 특수과정*의 입학 전형료는 제외하므로 '입시관리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평생교육원, 시간제등록제·특별과정 등 단기과정

※ 단,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입학 전형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시관리비에 포함되었다면 입력에서 모두 제외할 것

【수당】 :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출제 수당】 : 논술 및 실기 등 문제 출제에 따른 비용

【평가 수당】 : 서류, 논술 및 실기 등의 채점 및 평가에 따른 비용

【감독 수당】 : 논술 및 실기 등 시험 감독에 따른 비용

【준비·진행 수당】 : 면접, 논술 및 실기 등 입학전형 준비 및 진행에 따른 비용

【전형안내 수당】 :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 등 입학전형 홍보에 따른 비용

【회의 수당】 :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의 참석에 따른 비용

【경비】 :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비용

【홍보비】 :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회의비】 :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업무위탁 수수료】 :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인쇄비】 : 입학원서, 모집요강, 안내책자 등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비용

【자료 구입비】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 구입 비용

【소모품비】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 구입 비용

【공공요금】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우편료 등의 비용

【식비】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여비】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주차료】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시설 사용료】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기타】 : 위에 속하지 아니한 비용으로 입시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전문대학만 입력)

■ 참고사항

-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 입학 전형료 관리시스템)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대학 입학 전형료 관리시스템 조사대상: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이 실시하는 신입생 모집(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원격대학 및 전문대학은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카-2. 입학 전형료 산정근거[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6월(대학 입학 전형료 관리시스템), 8월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화지원팀), 직접입력

【공시내용】 : 2027학년도 입학 전형료 산정근거 및 2027학년도 입시수당 산정기준

【공시양식】 : 대학의 자체 양식(PDF 파일 형태)(자료기준일 : 2027학년도)

■ 작성지침

【입학 전형료 산정근거】 : 입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당과 경비 등 입학 전형료 예산편성 내역(2027학년도 기준)

※ 지출항목 구분별 소요 예산추계 금액 및 주요내역을 PDF로 공시

【입시수당 산정기준】 : 입시업무를 수행한 교직원에게 실비(實費) 변상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산정기준(2027학년도 기준)

※ 출제수당, 감독수당, 평가수당, 회의수당 등 입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대학별 자체 기준)을 PDF로 공시

예시

□ 2027학년도 입학 전형료 산정근거

(단위 : 원)

구분		예산추계	주요내역
수당	출제수당	2,000,000	논술출제(위촉) 1,000,000 논술출제(직원) 1,000,000
	평가수당	3,500,000	서류평가(위촉) 1,750,000 실기평가(직원) 1,750,000
	감독수당	1,000,000	논술감독(직원) 500,000 실기감독(직원) 500,000
	준비·진행수당	2,000,000	면접준비(직원) 1,000,000 실기진행(직원) 1,000,000
	전형안내수당	1,500,000	지역설명회 1,000,000 대교협박람회 500,000
	회의수당	1,000,000	전형관리위원회 300,000 수시전형준비회의 500,000 출제위촉회의 200,000
경비	홍보비	100,000,000	온라인홍보 100,000,000
	회의비	2,000,000	전형관리위원회 1,000,000 출제회의 1,000,000
	업무위탁수수료	20,000,000	원서접수대행 20,000,000
	인쇄비	15,000,000	모집요강 15,000,000
	자료 구입비	1,000,000	수능온라인제공 1,000,000
	소모품비	3,000,000	A4용지 구입 1,000,000 프린트토너 구입 2,000,000

예시

(단위: 원)

구분	예산추계	주요내역
공공요금	10,000,000	우편발송비 5,000,000 SMS통신비 5,000,000
식비	5,000,000	수시 면접고사 수험생 식음료 5,000,000
여비	10,000,000	수시박람회 5,000,000 정시박람회 5,000,000
주차료	5,000,000	수시 면접고사 수험생 주차료 5,000,000
시설사용료	11,000,000	실기고사장 대관 1,000,000 차량 임대료 10,000,000
합계	193,000,000	

□ 2027학년도 입시수당 산정기준

(단위: 원)

구분	세목	지급금액	비고
출제수당	출제위원장 및 위원	300,000	1일 지급 기준
	출제진행요원	150,000	
감독수당	감독 및 진행수당	70,000	1일 지급 기준. 시험시간 및 업무난이도에 따라 차등지급
	외부인사 감독	100,000	
평가수당	교수	200,000	1,000자 논술/1일 150매 내외 기준이며, 논술자수 및 매수의 증감에 따라 차등 지급
	직원	100,000	일일 8시간 기준
	외부교수	250,000	연합관리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변경 지급
합계		1,170,000	

■ 참고사항

- 입학 전형료 산정근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 입학 전형료 관리시스템)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대학 입학 전형료 관리시스템 조사대상: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이 실시하는 신입생 모집(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원격대학 및 전문대학은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8-타. 대학의 장, 이사장 및 상근(常勤)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8월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총장, 이사장,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내역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 원)

구분	사용 일자	사용 내역	장소	금액
총장	2025-00-00	(예) 유관기관 업무협의		
이사장				
상임이사				
		총장 합계		
		이사장 합계		
		상임이사 합계		

■ 작성지침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 및 기관 운영 등을 위해 총장, 이사장, 상임이사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금액을 총장, 이사장, 상임이사로 구분하여 작성

※ 총장 및 이사장, 상임이사 업무추진비는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지출 항목의 일부인 ‘기관장 업무추진비(이사장, 총장)’, ‘상임이사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함

※ 자료기준일은 2025년 결산이므로 업무추진비를 2026년 2월에 사용했으나 출납폐쇄기간 이후에 집행하여 2025년 결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2026년 공시에는 입력하지 않음

내용	집행 구분	결산 연도	공시 연도
2025년 2월에 업무추진비 사용	출납폐쇄기간 이전에 집행	2024년	2025년
	출납폐쇄기간 이후에 집행	2025년	2026년
2026년 2월에 업무추진비 사용	출납폐쇄기간 이전에 집행	2025년	2026년
	출납폐쇄기간 이후에 집행	2026년	2027년

【사용 일자】 :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실제 사용(거래) 일자

※ 업무추진비 정산일이 아닌 실제 사용(거래)일이며, 일괄 정산하는 경우에도 정산일 기준이 아닌 사용(거래)일 기준으로 각각 입력

【장소】 :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곳의 구체적인 거래처명 등을 기재

※ 단, 경조사비 현금 집행 등으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내역에 따른 장소를 입력
(예 : (사용내역) 축의금, 조의금 등/(장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0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가. 등록금 산정근거[PDF]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9-가. 등록금 산정근거

9-가-1. 등록금 산정근거

9-가-1-(1) 등록금 산정근거[PDF](국·공립대)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3~4월, 7~8월(등록금 공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4월,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장학재단)

【공시내용】 : 등록금 산정근거(등록금 책정 절차, 등록금 책정의 기본방향, 등록금 산정 세부내역, 등록금 책정 결정 사항, 계절학기 수업료 등)

【공시양식】 : 제공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공시하되, 대학의 자체 양식을 추가할 수 있음(등록금 산정근거 전체 내용을 PDF 파일(전체 A4 10장 내외) 형태로 공시(작성자 및 확인자 명시))

■ 작성지침

1. 등록금 책정 절차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

〈국·공립대 등록금 책정 절차〉

책정 단계명	책정 조직	참여 주체	활동 내용
등록금 책정 관련 자료 수집			
등록금 책정(안) 마련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등록금 책정(안) 확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	해당 구성위원	구성비율	비고
교직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기위원			
학부모 및 동문위원			
총계			

○ 등록금 책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의견수렴 및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조직 및 기능, 의사결정 단계별 참여주체, 의견 수렴 내용 및 활동 등을 기술함

【책정 단계명】 : 등록금 책정 단계의 명칭을 제공

【책정 조직】 : 등록금 책정을 위한 조직 또는 기구 명칭을 기재

【참여 주체】 : 등록금 책정을 위한 조직 또는 기구에 참여하는 주체의 구성단위를 기재

【활동 내용】 : 등록금 책정에 관한 활동 내용을 기재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 : 당해연도 등록금 정보공시 입력(상반기) 시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입력

II. 등록금 책정의 기본방향(원칙) 및 고려 요소

1. 등록금 책정의 기본방향(원칙)

〈등록금 책정의 기본방향 및 원칙〉

관 점	내 용
고객관점(학생, 학부모 경제부담)	
지속성장관점(대학장기발전계획 등)	
사회경제적관점(물가, 여론 등)	

- “고객관점”, “지속성장관점”, “사회경제적관점”에서 등록금 책정의 기본방향 또는 원칙을 기술함
- “지속성장관점”은 대학의 특수성, 재정여건, 재정운용 계획 등 대학 장기발전 계획을 고려하여 기술함

2.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고려 요소	결과값	고려 여부	내 용
물가상승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전년도 평균 등록금 수준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			
인건비 증감률			
기본 운영비 증감률			
주요사업비 증감률			
기타			

【물가상승률】 : 통계청이 발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며, 결과값은 제공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을 의미하며, 결과값은 제공

【전년도 평균 등록금수준】 : 공시기관별 전년도 평균 등록금 수준으로, 결과값은 제공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 : 공시기관별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로, 결과값은 제공

- 【물가상승률】부터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까지의 결과값은 한국장학재단 등록금·장학금 공시조사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이하 자료는 결과값, 고려여부, 내용 등을 직접입력하도록 함
- 대학의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고려 여부’에 표시하고, ‘내용’에는 각 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며, 위에서 제시한 고려 요소 외에 대학이 고려하는 요소를 추가하여 제시할 수 있음

Ⅲ. 등록금 산정 세부내역

1. 국·공립대 세입 및 세출 세부내역

1-1. 국·공립대 세입 세부내역

〈국·공립대 세입 세부내역〉

(단위: 원, %)

구분	예산(4월 공시 입력)					결산(8월 공시 입력)			
	전년도 본예산 (A)	전년도 최종추경 (B)	당해연도 본예산 (C)	증감액 (D=C-B)	증감률 (E=D/B ×100)	전전년도 결산 (F)	전년도 결산 (G)	증감액 (H=G-F)	증감률 (I=H/F ×100)
1.세입총계									
2.일반회계									
3.재산수입									
3.경상이전수입									
3.재화및용역판매수입									
4.면허료및수수료									
4.입학금및수업료									
4.기타잡수입									
3.수입대체경비									
3.관유물매각대									
3.용지및전대차관원금회수									
3.전년도이월금									
3.(세출과의 차액)									
2.기성회계									
3.회비수입									
3.이월금									
3.보조금									
3.잡수입									
3.수입대체경비									
2.대학회계									
3.(~2017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2017년) 자체 수입금									
3.(2018년~) 이전수입									
3.(2018년~) 자체수입									
3.(2018년~) 세계잉여금									
3.(2018년~) 내부거래 및 기타									
2.발전기금회계									
3.전기이월금									
3.기부금									
3.법인세환급금									
3.잡수입									

- 국·공립대 세입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기성회계,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를 통합한 세입 결과를 제공된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전년도 본예산”,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당해연도 본예산”은 4월 공시에 맞추어 작성하며, 8월 공시에는 4월에 공시한 국·공립대 수지분석 결과를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당해연도 본예산” 확정본으로 수정하여 공시함.
또한, 전전년도 결산과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공시함

9. 등록금 및 학생 인건비 관련 사항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1-2. 국·공립대 세출 세부내역

〈국·공립대 세출세부내역〉

(단위: 원, %)

구 분	예산(4월 공시 입력)					결산(8월 공시 입력)			
	전년도 본예산 (A)	전년도 최종추경 (B)	당해연도 본예산 (C)	증감액 (D=C-B)	증감률 (E=D/B ×100)	전전년도 결산 (F)	전년도 결산 (G)	증감액 (H=G-F)	증감률 (I=H/F ×100)
1.세출총계									
2.일반회계									
3.인건비									
3.물건비									
3.이전지출									
3.자산취득									
3.예비비									
2.기성회계									
3.인건비									
3.운영비									
3.경상이전비									
3.자본지출경비									
3.수입대체경비									
3.기타									
2.대학회계									
3.(~2017년) 인적경비									
3.(~2017년)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3.(~2017년) 운영비									
3.(~2017년) 자산적경비									
3.(~2017년) 예비비 및 기타									
3.(2018년~) 인건비									
3.(2018년~) 물건비									
3.(2018년~) 이전지출									
3.(2018년~) 자산취득 및 운용									
3.(2018년~) 예비비 및 기타									
2.발전기금회계									
3.경상비									
3.목적사업비									
4.장학사업비									
4.연구지원비									
4.교육기자재및시설확충비									
4.기타사업비									
3.기본재산증자비									
3.차기이월금									
3.예비비									

- 국·공립대 세입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기성회계,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를 통합한 세입 결과를 제공된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전년도 본예산”,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당해연도 본예산”은 4월 공시에 맞추어 작성하며, 8월 공시에는 4월에 공시한 국·공립대 수지분석 결과를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당해연도 본예산” 확정본으로 수정하여 공시함. 또한, 전전년도 결산과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공시함

2-1.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관점	당해연도	전년도
입학금 결정	○	○
수업료 결정	○	○

-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결정은 이에 관련한 결정사항과 결정액을 위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결정사항은 당해연도와 전년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모두 작성함

2-2. 등록학생 수 추정

〈등록학생 수 추정〉

(단위: 명)

구분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연도	추정오차		비고	
	추정학생 수 (A)	추정학생 수 (B)	최종등록 (4월 1일) (C)	최종등록 (10월 1일) (D)	최종등록 (E=[C+D]/2)	추정학생 수 (F)	전년도 (G=E-B)		당해연도 (H=F-E)
합계									
학부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5~6학년								
	소계(전과정)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관점	당해연도(H)				전년도(G)				
추정오차 주요원인	○				○				

- 추정오차 전년도(G)에는 전년도 최종등록 수와 전년도 추정학생 수 간의 추정오차를 기재함
- 추정오차 당해연도(H)에는 당해연도 추정학생 수와 전년도 최종등록 수 간의 추정오차를 기재함
- 전년도(G)와 당해연도(H)의 추정오차가 발생한 주요원인에 대해 “추정오차 주요원인”에 기재함

○ 등록금 및 학생 인당 교원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2-3. 등록금 인상 및 인하 책정 내역

〈등록금 인상 및 인하 책정 내역〉

(단위: 원, %)

구분		학부(연간액)				대학원(학기액)				비고
		전년등록금 (A)	금년등록금 (B)	인상률 (C=[B-A]/A ×100)	인상여부 (인상/인하/동결)	전년등록금 (D)	금년등록금 (E)	인상률 (F=[E-D]/ D×100)	인상여부 (인상/인하/동결)	
입학금	평균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수업료	평균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 계열별 입학금 및 수업료의 책정결과를 기재함
- 학점당으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경우, 비교란에 기준이 되는 연간 학점을 기재함
- 인상률은 평균등록금의 변동률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되, 인상여부는 변동률의 원자료로 판정
- 전문기술석사과정(전문대학)은 편제 완성 연도까지 해당과정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 산출

3. 계절학기 수업료 현황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

(단위: 학점, 원)

구분(8월 공시 입력)		총 신청 학점 (A)	총 수강료수입 (B)	학점당 평균액 (C=B/A)
대학 (2025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대학원 (2025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은 이에 관련한 총 신청 학점과 총 수강료수입을 위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결정사항은 여름학과 겨울학과를 각각 모두 작성함
- 8월에 작성하며, 4월 공시된 '8-차. 등록금 현황'에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임

■ 참고사항

- 등록금 산정근거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4월 공시: 전년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서의 본예산과 최종 추가경정예산을, 당해연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서의 본예산을 토대로 공시

- 8월 공시: 전년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서의 최종 추가경정예산, 당해연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서의 본예산을 토대로 4월에 공시한 등록금 산정근거를 수정하여 공시함. 또한, 전년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결산서의 전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결산서의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공시(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9-가-1-(2) 등록금 산정근거[PDF](사립대)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3~4월, 7~8월(등록금 공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4월,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장학재단)

【공시내용】 : 등록금 산정근거(등록금 책정 절차, 등록금 책정의 기본방향, 등록금 산정 세부내역, 등록금 책정 결정 사항, 계절학기 수업료 등)

【공시양식】 : 제공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공시하되, 대학의 자체 양식을 추가할 수 있음(등록금 산정근거 전체 내용을 PDF 파일(전체 A4 10장 내외) 형태로 공시(작성자 및 확인자 명시))

■ 작성지침

1. 등록금 책정 절차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사립대 등록금 책정 절차〉

책정 단계명	책정 조직	참여 주체	활동 내용
등록금 책정 관련 자료 수집			
등록금 책정(안) 마련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등록금 책정(안) 확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	해당 구성위원	구성비율	비고
교직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가위원			
학부모 및 동문위원			
총계			

○ 등록금 책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의견수렴 및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조직 및 기능, 의사결정 단계별 참여주체, 의견 수렴 내용 및 활동 등을 기술함

【책정 단계명】 : 등록금 책정 단계의 명칭을 제공

【책정 조직】 : 등록금 책정을 위한 조직 또는 기구 명칭을 기재

【참여 주체】 : 등록금 책정을 위한 조직 또는 기구에 참여하는 주체의 구성단위를 기재

【활동 내용】 : 등록금 책정에 관한 활동 내용을 기재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 : 당해연도 등록금 정보공시 입력(상반기) 시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입력

II. 등록금 책정의 기본방향(원칙) 및 고려 요소

1. 등록금 책정의 기본방향(원칙)

〈등록금 책정의 기본방향 및 원칙〉

관 점	내 용
고객관점(학생, 학부모 경제부담)	
지속성장관점(대학장기발전계획 등)	
사회경제적관점(물가, 여론 등)	

- “고객관점”, “지속성장관점”,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등록금 책정의 기본방향 또는 원칙을 기술함
- “지속성장관점”은 대학의 특수성, 재정여건, 재정운용 계획 등 대학장기발전 계획을 고려하여 기술함

2.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고려 요소	결과값	고려 여부	내 용
물가상승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전년도 평균 등록금 수준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			
인건비 증감률			
기본 운영비 증감률			
주요사업비 증감률			
기타			

【물가상승률】 : 통계청이 발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며, 결과값은 제공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을 의미하며, 결과값은 제공

【전년도 평균 등록금수준】 : 공시기관별 전년도 평균 등록금 수준으로, 결과값은 제공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 : 공시기관별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로, 결과값은 제공

- 【물가상승률】부터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까지의 결과값은 한국장학재단 등록금·장학금 공시조사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이하 자료는 결과값, 고려여부, 내용 등을 직접입력하도록 함
- 대학의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고려 여부’에 표시하고, ‘내용’에는 각 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며, 위에서 제시한 고려 요소 외에 대학이 고려하는 요소를 추가하여 제시할 수 있음

Ⅲ. 등록금 산정 세부내역

1. 사립대 자금 수입 전망

〈사립대 자금수입 전망〉

(단위: 원)

자원부담 주체	수입과목 구분	산출근거	전년도 최종추경 (A)	당해연도 본예산 (B)	증감액 (C=B-A)	증감여부
합계 액	-					
학생이 부담하는 자원	등록금수입					
	수강료수입					
	학생이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등 교육에 부대되는 수입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원	국고보조금수입					
대학조직이 당해연도에 조달예정인 자원	전입금수입					
	이자수입 등 교육외수입					
	전년도 미사용액					
내부조성재산의 매각이나 외부차입 등으로 조달예정인 자원	투자자산의 매각 및 회수 등					
	고정자산의 매각 및 처분 등					
	외부에서 단/장기로 차입					
	임대보증금 수입 등의 부채성 수입					
기타	〈조정항목〉					

【등록금수입】 : 입학금 및 등록금, 학부와 대학원을 분리하여 산출근거를 작성함

【수강료수입】 : 수강료수입

【학생이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등 교육에 부대되는 수입】 : 교육부대 수입

【국고보조금수입】 : 국고보조금수입

【기부금수입】 : 등록금회계에서 받은 기부금수입

【전입금수입】 : 전입금수입

【이자수입 등 교육외수입】 : 교육외수입

【전년도 미사용액】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투자자산의 매각 및 회수 등】 : 투자와기타자산 수입

【고정자산의 매각 및 처분 등】 : 고정자산매각수입

【외부에서 단/장기로 차입】 : 유동부채입금 및 고정부채입금 중 장기차입금액

【임대보증금 수입 등의 부채성 수입】 : 고정부채입금 중 기타고정부채

【기타(조정항목)】 : 기본금(출연)

- 사립대 자금 수입 전망은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를 위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산출근거는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대비 본예산의 수입 전망의 고려요인 또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함
- 증감여부에는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대비 본예산의 “증가”, “감소”, “동결” 여부를 기재함

2. 사립대 자금 지출 전망

〈사립대 자금 지출 전망〉

(단위: 원)

재원환원 주체	지출과목 구분	산출근거	전년도 최종추경 (A)	당해연도 본예산 (B)	증감액 (C=B-A)	증감여부
합계 액	-					
학생에게 직접 환원되는 지출	장학금의 지급					
	실험실습비 등 기타지원 경비					
	입시관리에 따른 지출					
대학 연구 성과를 위한 연구비	연구비 및 연구관리비					
대학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의 지급 (법정부담금 및 퇴직급여 포함)					
기본적 대학 경영을 위한 필수 운영비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운영비					
경상이전성격의 지출	(타회계 등) 전출금					
	이자지출 등 교육외 지출					
추정은 필요하나, 지출 미확정분	당해연도 미사용액의 이월					
	예비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설, 재산 매입이나 외부차입상환 등으로 지출 예정인 재원	투자자산의 매입 및 지출 등					
	고정자산의 매입 및 지출 등					
	외부 단/장기차입금등 상환					

【장학금의 지급】 : 학생경비 중 장학금 및 학비감면액

【실험실습비 등 기타지원 경비】 : 학생경비 중 장학금 및 학비감면액과 입시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입시관리에 따른 지출】 : 학생경비 중 입시관리비

【연구비 및 연구관리비】 :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연구학생경비 중 연구비 및 연구관리비

【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의 지급(법정부담금 및 퇴직급여 포함)】 : 교원보수와 직원보수의 합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 관리운영비 중 시설관리비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 관리운영비 중 일반관리비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운영비】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

【(타회계 등) 전출금】 : 전출금

【이자지출 등 교육외 지출】 : 교육외비용

【당해연도 미사용액의 이월】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예비비】 : 예비비

【투자자산의 매입 및 지출 등】 : 투자와기타자산 지출

【고정자산의 매입 및 지출 등】 : 고정자산매입지출

【외부 단/장기차입금등 상환】 : 유동부채상환 및 고정부채상환액

○ 사립대 자금 수입 전망은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를 위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산출근거는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대비 본예산의 수입 전망의 고려요인 또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함

○ 증감여부에는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대비 본예산의 “증가”, “감소”, “동결” 여부를 기재함

3. 사립대 수지분석 결과

〈사립대 수지분석 결과〉

(단위: 원, %)

구 분	예산 (4월 공시 입력)					결산 (8월 공시 입력)			
	전년도 본예산 (A)	전년도 최종추경 (B)	당해연도 본예산 (C)	증감액 (D=C-B)	증감율 (E=D/B ×100)	전전년도 결산 (F)	전년도 결산 (G)	증감액 (H=G-F)	증감율 (I=H/F× 100)
부족액 추정	◦세입 부족 추정액								
	- 자금수입총계								
	- 자금지출총계								
운영 수지	◦운영수지(수입-지출)								
	- 운영수입항목								
	- 운영지출항목								
자본 수지	◦자본수지(수입-지출)								
	- 자산및부채수입								
	- 자산및부채지출								
점검 항목	◦이월금 증감 여부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수지분석 결과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

- 사립대 수지분석 결과는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의 수지분석 결과를 운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누어 제공된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전년도 본예산”,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당해연도 본예산”은 4월 공시에 맞추어 작성하며, 8월 공시에는 4월에 공시한 사립대 수지분석 결과를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당해연도 본예산” 확정본으로 수정하여 공시함.
또한, 전전년도 결산과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공시함
- 운영수지의 “운영수입항목”에는 “내부조성재산의 매각이나 외부차입 등으로 조달예정인 재원”과 “기타(조정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재하며, “운영지출항목”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설, 재산 매입이나 외부차입상환 등으로 지출 예정인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재함
- 자본수지의 “자산 및 부채수입항목”에는 “내부조성재산의 매각이나 외부차입 등으로 조달예정인 재원”을 기재하며, “운영지출항목”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설, 재산 매입이나 외부차입상환 등으로 지출 예정인 재원”을 기재함
- 점검항목인 “이월금 증감여부”에는 지출항목인 미사용전기이월자금에서 수입항목인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함
- ‘수지분석결과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은 운영수지와 자본수지 각각에 대한 주요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4. 사립대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

4-1. 사립대 수입 세부내역

〈사립대 수입 세부 내역〉

(단위: 원, %)

구분	계정과목	예산 (4월 공시 입력)					결산 (8월 공시 입력)			
		전년도 본예산 (A)	전년도 최종추경 (B)	당해연도 본예산 (C)	증감액 (D=C-B)	증감률 (E=D/B ×100)	전전년도 결산 (F)	전년도 결산 (G)	증감액 (H=G-F)	증감률 (I=H/F ×100)
합계										
운영수입	소계									
	등록금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외수입									
자산및 부채수입	소계									
	투자및기타자산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입금									
	미사용전기이월자금									

- 사립대 수입 세부내역은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의 수입 결과를 제공된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전년도 본예산”,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당해연도 본예산”은 4월 공시에 맞추어 작성하며, 8월 공시에는 4월에 공시한 사립대 수지분석 결과를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당해연도 본예산” 확정본으로 수정하여 공시함.
또한, 전전년도 결산과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공시함

4-2. 사립대 지출 세부내역

〈사립대 지출 세부내역〉

(단위: 원, %)

구분	계정과목	예산 (4월 공시 입력)					결산 (8월 공시 입력)			
		전년도 본예산 (A)	전년도 최종추경 (B)	당해연도 본예산 (C)	증감액 (D=C-B)	증감률 (E=D/B ×100)	전전년도 결산 (F)	전년도 결산 (G)	증감액 (H=G-F)	증감률 (I=H/F ×100)
합계										
운영지출	소계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									
	예비비									
자산및 부채지출	소계									
	투자및기타자산지출									
	고정자산매입지출									
	고정부채상환									
	미사용차기이월자금									

- 사립대 수입 세부내역은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의 수입 결과를 제공된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전년도 본예산”,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당해연도 본예산”은 4월 공시에 맞추어 작성하며, 8월 공시에는 4월에 공시한 사립대 수지분석 결과를 “전년도 최종추경예산”, “당해연도 본예산” 확정본으로 수정하여 공시함.
또한, 전전년도 결산과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공시함

9. 등록금 및 학생 인건비 관련 사항

5. 등록금 책정 결정 사항

5-1.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추정 근거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추정 근거〉

관점	주요 수입 증감 추정 사유	주요 지출 증감 추정 사유
학생부담 관련	○	○
대학운영부담 관련	○	○
대학의 투자증감 관련	○	○

-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추정 근거는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의 결과를 위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주요 수입 증감 추정 사유”와 “주요 지출 증감 추정 사유”는 각각의 증감 사유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공시함
- 입학금 및 수업료 에 대한 증감 추정사유는 당해연도 등록학생 수 추정을 토대로 산출된 금액임을 설명함

5-2.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관점	당해연도	전년도
입학금 결정	○	○
등록금(수업료) 결정	○	○

- 입학금, 등록금(수업료)의 결정은 이에 관련한 결정사항과 결정액을 위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결정사항은 당해연도와 전년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모두 작성함

5-3. 등록학생 수 추정

〈등록학생 수 추정〉

(단위: 명)

구 분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연도 추정학생 수 (F)	추정오차		비고
	추정학생 수 (A)	추정학생 수 (B)	최종등록 (4월 1일) (C)	최종등록 (10월 1일) (D)		최종등록 (E=[C+D]/2)	전년도 (G=E-B)	
합계								
학부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5~6학년							
	소계(전과정)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관점	당해연도(H)				전년도(G)			
추정오차 주요원인	○				○			

- 추정오차 전년도(G)에는 전년도 최종등록 수와 전년도 추정학생 수 간의 추정오차를 기재함
- 추정오차 당해연도(H)에는 당해연도 추정학생 수와 전년도 최종등록 수 간의 추정오차를 기재함
- 전년도(G)와 당해연도(H)의 추정오차가 발생한 주요원인에 대해 “추정오차 주요원인”에 기재함

5-4. 등록금 인상 및 인하 책정 내역

〈등록금 인상 및 인하 책정 내역〉

(단위: 원, %)

구분		학부(연간액)				대학원(학기액)				비고
		전년 등록금 (A)	금년 등록금 (B)	인상률 (C=[B-A]/A ×100)	인상여부 (인상인하/동결)	전년 등록금 (D)	금년 등록금 (E)	인상률 (F=[E-D]/D ×100)	인상여부 (인상인하/동결)	
입학금	평균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수업료	평균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 계열별 입학금 및 수업료의 책정결과를 기재함
- 학점당으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경우, 비교란에 기준이 되는 연간 학점을 기재함
- 인상률은 평균등록금의 변동률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되, 인상여부는 변동률의 원자료로 판정
- 입학금을 폐지한 해에 한하여 입학금 실비용 산입분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 산출(대학별로 '25년 또는 '26년, 학부만 해당)
- 전문기술석사과정(전문대학)은 편제 완성 연도까지 해당과정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 산출

6. 계절학기 수업료 현황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

(단위: 학점, 원)

구분(8월 공시 입력)		총 신청 학점 (A)	총 수강료수입 (B)	학점당 평균액 (C=B/A)
대학 (2025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대학원 (2025년 기준)	여름학기			
	겨울학기			

-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내역은 이에 관련한 총 신청 학점과 총 수강료수입을 위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함
- 결정사항은 여름학과 겨울학과를 각각 모두 작성함
- 8월에 작성하며, 4월 공시된 '8-차. 등록금 현황'에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임

■ 참고사항

- 등록금 산정근거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4월 공시: 전년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서의 본예산과 최종 추가경정예산, 당해연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서의 본예산을 토대로 공시

이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 8월 공시: 전년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서의 최종 추가경정예산, 당해연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서의 본예산을 토대로 4월에 공시한 등록금 산정근거를 수정하여 공시함. 또한, 전년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결산서의 전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의 경우 세입 및 세출결산서의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공시(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9-가-2.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수시

【공시시기】 : 수시(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당해연도에 개최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시양식】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일이 명시된 학교의 자체 양식(PDF 파일 형태)

■ 작성지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당해연도에 개최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PDF 파일) 첨부

※ 등록금심의위원회 각 차수별 모든 회의록을 공시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국·공립대, 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8월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명)

기준연도	대학/법인/일반회계 (A)	발전기금회계 (B)	산학협력단회계 (C)	도서구입비 (D)	기계기구매입비 (E)	총 교육비 (F=A+B+C+D+E)	재학생 수 (G)	학생 1인당 교육비 (H=F/G)

■ 검증사항

- A, B, C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구입비와 기계기구매입비는 D, E에 중복 입력하지 않음

■ 작성지침

- '별도의 회계를 사용하는 부속기관(부속중고, 부속병원 등)'의 현황은 포함되지 않음

【대학/법인/일반회계】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세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학비감면액(장학금 포함) - 운영비 중 지급 이자 -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중 수입대체경비(최고경영자과정, 각종 연수과정, 교양·문화과정, 어학과정, 지역사회과정 등의 평생교육과정 관련 비용, 입시 관련 비용, 국립대학 국유재산활용화비용)

- ※ 사업비를 총괄대학에 일괄 교부하고 총괄대학이 타대학으로 재교부하는 사업(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의 경우, 총괄대학은 재교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입력

【발전기금회계】 : 경상비 + 목적사업비 중 장학사업비 및 연구지원비 + 기금교수인건비

【산학협력단회계】 : 현금흐름표의 산학협력비 + 지원금사업비 + 일반관리비 + 간접비사업비

【도서구입비】 : 대학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중 도서구입비

- ※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출된 도서구입비는 제외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매해 조사되는 대학도서관 통계 조사 중 '5.1. 교육부 제출용 도서구입비 결산 금액'의 대학 회계, 발전기금회계 최종 결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기계기구매입비】 : 대학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중 기계기구매입(취득)비

- ※ 기계기구매입비는 연구 및 교육용만 포함하고, 행정용은 제외함
- ※ 소프트웨어 및 조달수수료는 기계기구매입비에서 제외

【재학생 수】 : 2025. 4. 1. 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수의 합('4-마. 재적 학생 현황' 재학생 수)

- ※ 통폐합대학의 경우, 통합대상 대학 재학생 수도 포함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재학생 수는 2025년 <4-마> 재적 학생 현황 연계 활용

9-나-2. 학생 1인당 교육비(사립대)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명)

기준연도	교비회계 (A)	산학협력단회계 (B)	도서구입비 (C)	기계기구매입비 (D)	총 교육비 (E=A+B+C+D)	재학생 수 (F)	학생 1인당 교육비 (G=E/F)

■ 작성지침

【교비회계】 : 자금계산서의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연구학생경비 중 입시관리비

【산학협력단회계】 : 현금흐름표의 산학협력비 + 지원금사업비 + 일반관리비 + 간접비사업비

【도서구입비】 : 교비회계 중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 : 교비회계 중 기계기구매입비 + 산학협력단회계 중 기계기구취득비

【재학생 수】 : 2025. 4. 1. 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수의 합(‘4-마. 재적 학생 현황’ 재학생 수)

※ 통폐합대학의 경우, 통합대상 대학 재학생 수도 포함

■ 참고사항

-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재학생 수는 2025년 <4-마> 재적 학생 현황 연계 활용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수시

【공시시기】 : 수시(감사 처분 결과 통보일 및 행정처분위원회 확정 처분 통보일, 재심의 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조치 결과 공문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 추가 공시)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2026년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 및 조치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기준연도	감사 구분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처분	처분일	진행 경과	조치 결과	조치 완료일

■ 작성지침

-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관실 감사, 행정처분위원회 결과로 처분 받은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 및 조치 결과 입력
 - ※ 감사 주체가 감사원, 교육부 감사관실(감사총괄담당관, 반부패청렴담당관, 사학감사담당관)인 경우 모두 해당(단, 감사 처분은 감사원, 교육부 감사관실이 아닌 교육부 소관부서를 통해 통보될 수 있음)
 - ※ 정상이행(이행 중), 미이행 건은 이행연도까지 계속 공시
 - ※ 이전 연도에 처분 받았으나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처분 연도와 조치 완료 연도가 다른 경우, 처분 연도부터 조치 완료 연도까지 계속 공시

○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받은 제재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법인 소속의 기타 시설 및 개인에 관한 처분사항일지라도 공시(개인정보 제외)하고, 제재예고의 경우 예고사실을 기재하며 향후 제재예고가 취소될 경우, 해당 내용 삭제 후 수정 공시

【감사 구분】 : 처분 받은 명칭을 기재

【지적 건명】 : 「고등교육법」 제60조 ~ 제62조에 의해 처분 받거나 조치 완료된 위반사항

【지적 내용】 :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지적 내용을 기재(행정처분 및 감사원, 교육부 등 감사에 따른 시정명령 포함)

【처분】 : 상기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교육부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제재예고 등을 받은 내용

【처분일】 : 처분 받은 일자(년, 월)를 기재

【진행 경과】 : 처분에 따른 후속 처리 진행 경과, 이행완료/이행종결/정상이행(이행 중)/미이행

- 이행완료: 감사처분 또는 행정처분위원회 심의결과(확정처분)에 따른 개선, 시정, 통보사항 등이 처분요구대로 이행되거나 사정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처분요구에 상응하는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
- 이행종결: 감사처분 또는 행정처분위원회 심의결과(확정처분)에 따른 개선, 시정, 통보사항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상이행(이행 중): 감사 처분요구 또는 행정처분위원회 심의결과(확정처분)대로 이행중인 경우
- 미이행: 감사 처분요구 또는 행정처분위원회 심의결과(확정처분) 사항을 부당하게 이행하거나 미이행한 경우

【조치 결과】 : 처분에 따른 후속 처리 내용

- ※ 추가 소명 등으로 처분 내역 취소 시, 기 공시한 처분 내역 삭제
- ※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조치 결과’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 공시 후, 결과에 따라 수정 공시

【조치 완료일】 : 조치완료 일자(년, 월)를 기재

참고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1조(휴업 및 휴교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PDF]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1-가-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수시

【공시시기】 : 수시(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공시양식】 : 학교의 자체 양식(PDF 파일 형태)

■ 작성지침

【학교 발전계획】 : 대학/대학원 발전을 위한 대학의 비전과 전략 설정 배경(대내외 환경 분석 등), 대학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교육 여건 개선 계획, 학사구조 개편, 구조개혁, 기타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학교 특성화계획】 : 대학본부 관점에서, 대학원 특성화계획은 대학원 관점에서 특성화 분야, 학교발전계획과의 연계 사항, 재정집행계획(자체투자, 연관 재정지원사업 등), 특성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계획, 특성화 분야 지원인프라 개선계획(교원 등), 특성화학과(전공)명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확정일】 :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확정일(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확정된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이전자료 삭제 후 '최신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만 업로드 후 공시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 12-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 12-다. 장학금 수혜 현황
- 12-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 12-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 12-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 현황[PDF]
- 12-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 12-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 12-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12-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 12-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연구비】

- ① 2025년도 계약(협약)된 금액으로, '현금'만 포함(다년과제인 경우, ④번 참고)
- ② 연구비에는 간접비를 포함하되 KRI 입력 시, 반드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함
- ③ 연구비에는 교내·외 대응자금을 포함하지 않고, 대응자금은 별도로 입력
- ④ 연구과제가 다년 과제인 경우, 2025년 연구비만 계산
 (예: 총 연구비 4억 원에 3년 과제가 2차년도인 2025년도에 연구비가 1억원으로 책정되면 연구비는 1억원으로 기재)
 ※ 제외: 현물(자료의 정확성 검증 불가)
- ⑤ 총괄과제에 포함되는 세부과제일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해당 연구비 입력

【과제】 : 2026. 4. 1. 기준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서 2025년도에 수행한 과제의 계약(협약) 건수

【연구비 지원구분】 : 교내와 교외(중앙정부/지자체/외국/민간)로 구분

- 교내: 대학자체(교내)에서 지원한 연구비
- 중앙정부: 중앙정부(지자체 제외) 및 각 부처 산하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
- 외국: 외국정부, 민간 관계없이 외국에서 지원된 연구비를 의미함
- 민간: 정부 이외의 민간 사업체, 연구소 등에서 지원한 연구비
 ※ 재원과 지원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 지원기관을 기준으로 입력

【대응자금】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협약)된 대응자금 금액

- ※ 제외: 현물(자료의 정확성 검증 불가)
- 교내: 해당 과제의 지원연구비에 대응되는 교내의 계약(협약)된 대응자금(자금 출처-교내)
- 교외: 해당 과제의 지원연구비에 대응되는 교외의 계약(협약)된 대응자금(자금 출처-교내 이외의 기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 교내: (교내연구비 + 교내대응자금) / 전임교원 수
- 교외: (교외연구비 + 교외대응자금) / 전임교원 수

■ 참고사항

- 연구비 수혜 실적은 한국연구재단(KRI 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2-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12-나-1. 학생 규모별 강좌수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5년 학생 규모별 강좌수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학년도에 개설되어 완료된 강좌(계절학기 포함))

(단위: 건)

기준 연도	학기	학생 규모별 강좌수								
		20명 이하	21~30명	31~40명	41~50명	51~60명	61~80명	81~100명	101~200명	201명 이상
	1									
	2									
	3									
	4									
	여름계절학기									
	겨울계절학기									

■ 작성지침

【학기】 :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라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 포함

【학생 규모별 강좌수】 : 학기별로 대학에 개설된 정규학위강좌를 수강인원 20명 이하, 21~30명, 31~40명, 41~50명, 51~60명, 61~80명, 81~100명, 101~200명, 201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입력(원격강좌, 집중강좌, 현장실습, 논문지도, 사회봉사, 채플 등도 반드시 포함하여 입력)

- ※ 입력 제외 대상(아래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입력에서 제외)
 - 조사기준일 시점 폐강되어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강좌
 - OCU, KCU, 각종 공유대학 등 우리 대학이 아닌 타대학에서 진행된 강좌
- ※ 분반은 각각의 강좌로 입력, 합반과 팀티칭은 하나의 강좌로 입력

■ 참고사항

- 학생 규모별 강좌수는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2-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5년 교원 강의담당 비율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학년도에 개설되어 완료된 강의(계절학기 포함))

(단위 : 학점, %)

기준 연도	단과대학	학과 (전공)	구분	학과 특성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총계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기타교원		계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1													
					2													
					3													
					4													
					여름계절학기													
					겨울계절학기													

■ 작성지침

【학기】 :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라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 포함

【교원 강의담당학점】 : 학기별로 대학에 개설된 정규학위강좌 일체에 대해 교원이 실제로 강의한 학점(원격강좌, 집중강좌, 현장실습, 논문지도, 사회봉사, 채플 등도 담당교원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하여 입력)

※ 입력 제외 대상(아래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입력에서 제외)

- 조사기준일 시점 폐강되어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강좌의 강의 내역
- OCU, KCU, 각종 공유대학 등 우리 대학이 아닌 타대학에서 진행된 강좌의 강의 내역
- 담당교수가 미지정된 현장실습 또는 논문지도 등의 강좌의 강의 내역

※ 학점이 0학점이거나 주당수업시간수가 0시간인 강의는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에는 입력하지만 연계 및 공시되지 않음

※ 강의 개설 학과 기준으로 입력하며, 개설 학과가 없는 강좌의 경우 기타(소속학과없음)에 입력

※ 분반은 각각의 강좌로 보고 각 분반에 따른 학과에 교원 강의담당학점을 각각 입력, 탐타칭은 하나의 강좌에 해당하는 학점을 강의시간 비율로 나누어 계산, 합반은 합반 후 해당 강좌를 운영/관리하는 학과에만 하나로 입력

※ 총장, 연구원 및 직원은 제외(다만, 연구원 및 직원은 교원으로 위촉해서 강의한 경우는 포함)

예시

1. 분반의 경우

경영학원론(3학점)을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A반, B반, 비전임교원이 강의하는 C반(총 3개 분반)이 있을 경우,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3(학점)×2(전임교원 수)이며,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3(학점)×1(비전임교원 수)로 하여 실제 운영과 같이 교원강의 담당학점 합계는 9학점이 됨

2. 팀티칭의 경우

경영학원론(3학점)을 전임교원 1명이 2시간, 비전임교원 1명이 1시간으로 하여 팀티칭을 하는 경우,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2(전임교원강의시간수)÷3(총강의시간수)×3(학점)이며,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1(비전임교원 강의시간)÷3(총강의시간수)×3(학점)으로 교원강의담당학점 합계는 3학점이 됨

3. 합반의 경우

- ① 음악학과에서 합창 1(3학점), 합창 2(3학점)를 합반하여 수업하고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경우, 한 강좌로 보아 전임교원 담당 학점에 3학점만 입력
- ②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경제학원론(3학점)을 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에서 강좌를 각각 개설하였지만 합반하여 수업하고 경제학과에서 운영/관리하는 경우, 교원강의담당학점은 경제학과 전임교원 담당학점에 3학점만 입력

【(강의담당) 비율(%)】 : (강의담당학점 / 강의담당학점 총계) × 100,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 **참고사항**

-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2-나-3. 대학 강의 공개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8월(대학 강의 공개 실적)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시내용】 : 2025학년도 대학 강의 공개 실적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학년도)

(단위: 건)

계열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K-MOOC) 강좌수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체제(KOCW)			전체 공개 건수 (주차)
		강의동영상 공개강좌수	멀티미디어 자료 공개강좌수	강의자료 공개강좌수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합계					

■ 작성지침

【용어정의】 : 주차와 차시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주차: 대학에서 개별 강좌를 한 학기 동안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1주 단위)을 정의하는데 활용되는 강의 시간 단위

※ 차시: 주차를 구성하는 소단위로서 1주차에 여러 개의 분절된 차시가 포함될 수 있음

(예: (강좌: 미분적분학2) 1주차 1차시-강의소개, 매개변수 방정식, 1주차 2차시-매개변수곡선에 대한 미분과 적분)

【자료기준일】 : 2025학년도 1학기부터 겨울 계절학기까지 기간(2025. 3. 1. ~ 2026. 2월 말일)에 K-MOOC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는 수강 가능한 K-MOOC 강좌(청강모드 포함) 건수 및 2025학년도 1학기부터 겨울 계절학기까지 기간(2025. 3. 1. ~ 2026. 2월 말일)에 활용한 강좌 중 KOCW에 메타데이터, 강의계획서, 강의동영상, 멀티미디어 자료 및 강의 자료를 탑재 공개한 강좌 건수를 실적으로 인정

※ 제출마감일인 2026. 6. 30.까지 대학에서 강의 정보를 KOCW에 제출한 데이터를 실적으로 인정

【K-MOOC 강좌수】 : 주차와 관계없이 K-MOOC 플랫폼에 탑재되어 운영중인 K-MOOC강좌(청강강좌 포함)

【KOCW 강의동영상 공개강좌】 : 한 학기 강좌 중 10주차 이상의 '강의동영상' 혹은 '강의동영상+강의자료' 공개한 경우, 한 학기 공개강좌로 인정

※ 인정 시간 기준: 1학점(총 150분), 2학점(총 300분), 3학점(총 450분), 주차별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주차의 총 강의 시간으로 산정

※ 강의동영상 자료에 포함되는 범위

- 오프라인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

- 강의자료와 음성 파일로 구성된 콘텐츠

- 이러닝 강의(저작도구를 활용하여 학습 관리가 가능한 강의 콘텐츠, 플래시 애니메이션 포함)

※ 메타데이터에 파일별로 주차 표시(1주차~15주차) 및 차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 학기 강좌로 인정함

(예: 한 학기 3학점 강좌의 경우 10주차 이상 공개 시 한 학기 동영상 강좌로 인정함)

【KOCW 멀티미디어 공개강좌】 : 한 학기 강좌 주차별 분량 중 10주차 이상을 멀티미디어 자료로 공개한 강좌

※ 멀티미디어 공개강좌로 포함되는 유형

- 오프라인 강의를 촬영한 동영상, 이러닝 강의, 외부 동영상 자료 Link(유튜브 등), 퀴즈, 토론, 블로그, 과제, 교재정보, 참고문헌, 강의계획서, 강의자료(Lecture Notes)
- 위의 자료들 중 주차별로 최소한 4가지 종류의 자료로 구성되면 공개 실적 건수로 인정

※ 메타데이터에 파일별로 주차 표시(1주차~15주차) 및 차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 학기 강좌로 인정함

【KOCW 강의자료 공개강좌】 : 강의자료만 공개하는 경우 한 학기 강좌 주차별 분량 중 최소 ⅓ 이상의 강의자료 공개한 경우, 공개 실적 건수로 인정

※ 강의자료: 교수자가 강의 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파워포인트 자료, 워드 파일, 엑셀 파일, 이미지 파일 등

※ 메타데이터에 파일별로 주차 표시(1주차~15주차) 및 차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 학기 강좌로 인정함

※ 강의동영상과 강의자료를 모두 공개할 경우 동영상 공개강좌로 인정

【KOCW 전체 공개 건수(주차)】 : 강좌별로 공개된 주차 전체의 합

※ 1주차라도 공개한 자료가 있으면 실적에 포함

참고

- KOCW (Korea Open CourseWare, <http://www.kocw.net>, 대학 강의 및 강의자료 공동활용서비스)
 - 강의계획서, 강의동영상, 멀티미디어 및 강의자료 업로드 시 공개 강의 파일 탑재 기준이 KOCW 등록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음. 탑재 자료는 대학별 10% 이내에서 샘플링을 하여 탑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 실적으로 인정되며, 탑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공개 실적에서 제외하고 KOCW에서 서비스를 중지함
 - 공개 강의 파일 탑재 및 서비스 프로세스(KOCW 사이트의 강의기부 절차에 따라 수동 혹은 대학 강의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연계 가능)
 - KOCW 홈페이지 내 실적 확인: KOCW사이트 접속(<http://www.kocw.net>) →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대학담당자' 메뉴 선택 → '공시실적조회'메뉴 선택 → '대학강의공개 실적조회화면 내 해당 대학 선택' → '상세정보 엑셀 다운로드' 클릭 시 실적 상세내용 조회 가능

프로세스명	파일(자료) 등록	⇨	파일(자료) 검증	⇨	서비스 개시
담당기관	대학		KERIS		KERIS
제출마감일	2026년 6월 30일		-		-
소요일수	-		3~5일		-
서비스 개시	-		-		2026년 8월 중

- 공개 강의 파일 탑재 기준

- 1) 강의계획서 파일: 파일이 파손되어 열리지 않거나 파일에서 일부 또는 전부 내용이 없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함
- 2) 강의동영상 및 멀티미디어 파일: 공개한 강의동영상 및 이러닝 강의 콘텐츠에서 영상의 질은 화면상의 글씨, 그림 등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 실적에서 제외. 또한 100% 음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음질은 음성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공개 실적에서 제외
 - 파일 포맷: .mp4 포맷(인터넷 서비스 혹은 모바일 서비스용)
 - 파일 용량: 기준 없음
 - 저작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분 혹은 학습과 관계없는 부분은 삭제 후 공개 필요
- 3) 강의자료 파일: 파일이 파손되어 열리지 않거나 파일에서 일부 또는 전부 내용이 없는 경우 공개 실적에서 제외

- 실적 산정 기준: KOCW 강의 공개 실적은 강의계획서, 메타데이터(반드시 파일별로 주차, 차시 표시)와 강의동영상, 이러닝 강의 및 강의자료를 서버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고사항**

- 대학강의 공개 현황의 K-MOOC 현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OCW 현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K-MOOC(Koera Massive Open Online Course, <http://www.kmooc.kr>,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에 탑재되어 공개되고 있는 K-MOOC 강좌를 시스템에서 집계하여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으로 연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KOCW(Korea Open CourseWare, <http://www.kocw.net>, 대학 강의 및 강의자료 공동활용서비스) 사이트에 공개한 강의계획서, 강의동영상, 멀티미디어 및 강의자료를 시스템에서 자동 집계하여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으로 연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2-다. 장학금 수혜 현황

12-다-1. 장학금 수혜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7~8월(장학금 공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장학재단)

【공시내용】 : 2025학년도 1, 2학기 장학금 수혜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재학생) 2025. 4. 1. 및 10. 1., (장학금) 2025학년도)

○ 대학, 전문대학

(단위: 명, 원)

장학금 현황										
기준연도	단과대학	학과	구분	학과특성	학기	재학생 (A)	교외			
							소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
			합계							

장학금 현황									
교내(C 포함)							총계 (B)	교내 외국인유학생 (외국인전형, C)	재학생 1인당 장학금 (D=B/A)
소계	성적우수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 장학금	재난 장학금	교직원 장학금	기타			

○ 대학

(단위: 원)

구분	학비감면 준수 여부					
	학부		대학원		학부+대학원	
10% 규정 준수여부	금액	등록금수입 총액	금액	등록금수입 총액	금액	등록금수입 총액
30% 규정 준수여부					금액	

○ 전문대학

(단위: 원)

구분	학비감면 준수 여부	
	금액	등록금수입 총액
10% 규정 준수여부		
30% 규정 준수여부	금액	

■ 검증사항

<장학금 현황>

- 재학생 수는 '0명'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지급금액은 '0원'이 아닐 경우 오류로 판단되므로 검증하여야 함
- '재학생'은 '학생 1인당 장학금'을 산출하기 위한 입력항목으로, 전년도(2025. 4. 1. 기준, 2025. 10. 1. 기준) 재학생과 일치하여야 함

<학비감면 준수 여부>

- 사립대 : 등록금수입 총액은 2025년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작성지침

<공통사항>

- '관련 법규'('국립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등)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면제되는 경우 등록금수입 및 장학금 입력 대상에서 제외함(예 : 「국립학교설치령」 제16조,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제12조 등)
- 대응투자 : 대응자금비율이 적용되는 대응투자의 경우, 교외와 교내 대응자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입력함

예시

- 사립대의 보훈 자녀장학금의 경우, 국가·교내의 대응자금 비율이 50 : 50이므로, '교외-국가'와 '교내-기타'에 50%씩 나누어 입력
-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교외-국가'와 '교내-근로' 양쪽에 국가보조금과 교내 대응자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입력함

<장학금 현황>

- 2025. 4. 1., 10. 1. 기준 재적 학생(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중 2025년 1, 2학기에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모두 포함
- ※ 교환연수생, 방문학생, 시간제학생, 여학연수생, 교육과정 공동운영 외국 학생(공동학위·복수학위 과정 유학생)은 제외
- ※ 회계연도 중 재적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해 자퇴 또는 제적된 경우라도 지급받은 장학금은 입력하고 반환된 금액은 제외

참고

<장학금 인정 범위>

○ 교내 장학금

: 2025년도 각 학교의 대학관계규정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장학금으로 대학 내의 등록금 및 기금 등의 자체 예산에서 지급한 교내 장학금(교육부 대학장학과-4299호, 2012.12.8.)이면서, 사립대는 2025년도 교비회계 자금결산서에, 국공립대학은 2025년도 일반회계·기성회계·대학회계·발전기금회계의 세출결산서에 반영된 장학금(단, 관련 규정에 명시되었더라도 장학목적 외로 지급된 경우 장학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장학목적으로 지급한 교내 장학금이란?

: 대학관계규정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장학금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이나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등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해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 장려비, 생활비, 실습비 등의 금품을 말함. 단,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 교외 장학금

: 외부재원으로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사립대는 2025년도 자금결산서에, 국공립대학은 2025년도 세출결산서에 반영된 장학금. 단, 장학목적 외로 지급된 경우 장학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장학금에 대한 예외 인정 : 장학금 현황의 교외 장학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회계(결산) 미반영액도 공시대상에 포함. 단, 제3자 관점에서 인정가능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대학이 확보 및 보관하여야 함(예 : 외부장학단체가 대학에 발송한 공문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I 유형을 모두 수혜하여 대출금과 장학금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등록금 초과금액이 자동 상환 처리되어 결산에 반영되지 않음

참고

→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예: 등록금 500만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400만원, 국가장학금 I 유형 300만원 수혜 시, 200만원이 자동 상환 처리되어 학교에 100만원만 지급되더라도 교외-국가에 300만원으로 입력)
 ※ 장학목적으로 지급한 교외 장학금이란?
 : 객관적 입증자료에 명시된 장학금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이나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등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해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 실습비 등의 금품을 말함. 단,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 군 가산복지지원금(국방부)은 2018년부터 장학금에서 제외함

【학기】 : 1학과 2학기 구분하여 입력함, 계절학기에 수혜한 장학금도 포함하여 입력하며, 하계는 1학기에 동계는 2학기에 입력함

【재학생】 : 2025년 1학기(2025. 4. 1. 기준)와 2학기(2025. 10. 1. 기준)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를 입력함

【교외 장학금】 : 외부의 재원으로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재원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설 및 기타로 구분함

【교외-국가】 : 국고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국비장학금 등)을 입력함

※ 사립대의 보훈 대상자 자녀에게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장학금 포함
 (예: 보훈장학금 입력 기준)

설립구분	보훈장학금 지급 대상	교외-국가	교내-기타	설립구분	보훈장학금 지급 대상	교외-국가	교내-기타
국/공립	본인	-	100%	사립	본인	-	100%
	자녀	-	100%		자녀	50%	50%

※ 국/공립대학의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및 사립대의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50%) 대상 보훈장학금은 교내-기타에 해당함

【교외-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교육청) 재원으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을 입력함

【교외-사설 및 기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일반 기업체, 민간단체, 기부자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입력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지만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지급한 장학금은 '사설 및 기타'에 입력함

(예: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고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국가'에 입력하나, 예외적으로 기부금으로 조성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사설 및 기타'에 입력)

【교내 장학금】 : 학생에게 지급된 교내 장학금의 수혜 명목(지급사유)에 따라 성적우수/저소득층/근로/재난/교직원/기타로 구분하여 입력

※ 외국인전형 장학금 수혜현황을 추가로 입력하므로 기존 유형구분별 장학금 수혜현황 및 교내 장학금 총계에는 외국인전형 장학금 수혜현황이 포함됨

※ 장학금의 수혜명목(지급사유)이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예: 재난 피해를 입은 학생이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대학이 판단하여 1개의 장학금 유형으로 입력(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

【교내-성적우수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

※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아닌 장학금 수혜 명목인 성적우수장학금으로 입력함

※ 신입생(내신, 수능, 논술, 면접, 수상경력 등 대학별 입학사정관제에 준함) 및 편입생은 입학성적이 학업성적임

【교내-저소득층장학금】 : 각 대학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

※ <학비감면 준수여부>의 30%규정 준수여부는 교내 장학금 종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자가 학비를 감면 받았을 경우도 인정함

【교내-근로장학금】 : 교내·외 특정 장소에 배치되어 일정시간 근로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예: 국가근로장학금 중 대학 대응투자금액 및 대학자체 근로장학금)

【교내-재난장학금】 : 각 대학이 재난을 사유로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

【교내-교직원장학금】 : 해당 대학의 재직 교직원 또는 그 가족 등을 위해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

※ 대학 외(자매재단이나 동일법인, 타대학 등) 교직원에게 지급한 교직원장학금은 '교내-기타장학금'으로 분류함

【교내-기타】 : 성적우수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근로장학금, 재난장학금, 교직원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을 입력함

【교내 외국인유학생(외국인전형)】 : 외국인 대상 입학전형(외국인(특별)전형 및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등)으로 입학·편입학한 재직 외국인유학생의 교내장학금 수혜금액을 입력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제29조제2항제2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29조제2항제6호), 전과정 해외이수 외국인(제29조제2항제7호)을 대상으로 입력하며, 재외국민(제29조제2항제2호), 북한이탈주민(제29조제2항제6호) 및 전 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제29조제2항제7호)은 제외

※ 외국인 대상 입학전형 외의 전형으로 입학·편입학한 재직 외국인유학생의 교내장학금 수혜금액은 제외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합계】 : (교내 및 교외 장학금의 합 / 재학생 수)

※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산출 시 재학생 수는 '(2025. 4. 1., 10. 1. 기준 재학생 수의 합) / 2(학기)'로 산출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재학생이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의 비고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

〈학비감면 준수 여부〉

【학비감면 준수 여부】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준수 여부

※ 본교와 분교가 나뉜 경우는 본교와 분교가 각각 입력(캠퍼스는 본교에 통합 입력)

【10%규정 준수 여부】 : 당해연도 등록금수입 재원으로 면제·감액·(부득이)사후 지급된 금액을 입력함(계절학기 제외)

【30%규정 준수 여부】 : 당해연도 등록금수입 재원으로 경제사정 곤란자에게 면제·감액·(부득이) 사후 지급된 금액을 입력함(계절학기 제외)

※ 장학금 종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경제사정 곤란자가 학비를 감면받았을 경우도 인정함

【등록금수입총액】 : 결산기준의 등록금수입 총액(수강료수입 및 계절학기 제외)을 입력함

※ 등록금수입총액 = 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사립대: 2025년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참고사항

- 장학금 수혜 현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장학금현황 및 학비감면 준수(등록금수입, 10% 감면액, 30% 감면액) 관련 내역을 학부에 입력
- 4. 1. 재학생 수는 2025년 <4-마> 재학생 현황, 10. 1. 재학생 수는 2025년 교육기본통계 하반기 조사의 재학생 현황 연계 활용
- 학비감면 준수여부는 대학 장표에 대학 부설 대학원의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

12-다-1. 장학금 수혜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7~8월(장학금 공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장학재단)

【공시내용】 : 2025학년도 1, 2학기 장학금 수혜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재학생) 2025. 4. 1. 및 10. 1., (장학금) 2025학년도)

○ 대학원, 대학원대학

(단위: 명, 원)

장학금 현황											
기준연도	단과대학	학과	구분	학과특성	과정	학기	재학생 (A)	교외			
								소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
			합계				-				

장학금 현황								
교내							총계 (B)	재학생 1인당 장학금 (C=B/A)
소계	성적우수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 장학금	재난 장학금	교직원 장학금	기타		
								-

○ 대학원대학

(단위: 원)

구분	학비감면 준수 여부	
	대학원대학	
10% 규정 준수여부	금액	등록금수입 총액
30% 규정 준수여부	금액	

■ 검증사항

<장학금 현황>

○ 재학생 수는 '0명'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지급금액은 '0원'이 아닐 경우 오류로 판단되므로 검증하여야 함

<학비감면 준수 여부>

○ 사립대: 등록금수입 총액은 2025년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작성지침

<공통사항>

- '관련 법규'('국립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등)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면제되는 경우 등록금수입 및 장학금 입력 대상에서 제외함 (예: 「국립학교설치령」 제16조,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제12조 등)
- 대응투자: 대응자금비율이 적용되는 대응투자의 경우, 교외와 교내 대응자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입력함

예시

- 사립대의 보훈 자녀장학금의 경우, 국가:교내의 대응자금 비율이 50:50이므로, '교외-국가'와 '교내-기타'에 50%씩 나누어 입력
-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교외-국가'와 '교내-근로' 양쪽에 국가보조금과 교내 대응자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입력함

<장학금 현황>

- 2025. 4. 1., 10. 1. 기준 재적 학생(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중 2025년 1, 2학기에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모두 포함
- ※ 교환연수생, 방문화생, 시간제학생, 어학연수생, 교육과정 공동운영 외국 학생(공동학위·복수학위 과정 유학생)은 제외
- ※ 회계연도 중 재적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해 자퇴 또는 제적된 경우라도 지급받은 장학금은 입력하고 반환된 금액은 제외

참고

<장학금 인정 범위>

○ 교내 장학금

: 2025년도 각 학교의 대학관계규정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장학금으로 대학 내의 등록금 및 기금 등의 자체 예산에서 지급한 교내 장학금(교육부 대학장학과-4299호, 2012.12.8.)이면서, 사립대는 2025년도 교비회계 자금결산서에, 국공립대학은 2025년도 일반회계·기성회계·대학회계·발전기금회계의 세출결산서에 반영된 장학금. 단, 관련 규정에 명시되었더라도 장학목적 외로 지급된 경우 장학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장학목적으로 지급한 교내 장학금이란?

: 대학관계규정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장학금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이나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등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해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 실습비 등의 금품을 말함. 단,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 교외 장학금

: 외부재원으로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사립대는 2025년도 자금결산서에, 국공립대학은 2025년도 세출결산서에 반영된 장학금. 단, 장학목적 외로 지급된 경우 장학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장학금에 대한 예외 인정: 장학금 현황의 교외장학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회계(결산) 미반영액도 공시 대상에 포함. 단, 제3자 관점에서 인정이 가능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대학이 확보 및 보관하여야 함 (예: 외부장학단체가 대학에 발송한 공문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I 유형을 모두 수혜하여 대출금과 장학금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등록금 초과금액이 자동 상환 처리되어 결산에 반영되지 않음

→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예: 등록금 500만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400만원, 국가장학금 I 유형 300만원 수혜 시, 200만원이 자동 상환 처리되어 학교에 100만원만 지급되더라도 교외-국가에 300만원으로 입력)

※ 장학목적으로 지급한 교외 장학금이란?

: 객관적 입증자료에 명시된 장학금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이나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등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해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 실습비 등의 금품을 말함. 단,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 군 가산복무지원금(국방부)은 2018년부터 장학금에서 제외함

【학기】 : 1학기과 2학기 구분하여 입력함, 계절학기에 수혜한 장학금도 포함하여 입력하며, 하계는 1학기에 동계는 2학기에 입력함

【재학생】 : 2025년 1학기(2025. 4. 1. 기준)와 2학기(2025. 10. 1. 기준)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를 입력함

【교외 장학금】 : 외부의 재원으로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재원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설 및 기타로 구분함

【교외-국가】 : 국고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국비장학금 등)을 입력함

※ 사립대의 보훈 대상자 자녀에게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장학금 포함

(예: 보훈장학금 입력 기준)

설립구분	보훈장학금 지급 대상	교외-국가	교내-기타	설립구분	보훈장학금 지급 대상	교외-국가	교내-기타
국/공립	본인	-	100%	사립	본인	-	100%
	자녀	-	100%		자녀	50%	50%

※ 국/공립대학의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및 사립대의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50%) 대상 보훈장학금은 교내-기타에 해당함

【교외-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교육청) 재원으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을 입력함

【교외-사설 및 기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일반 기업체, 민간단체, 기부자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입력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지만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지급한 장학금은 '사설 및 기타'에 입력함

(예: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고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국가'에 입력하나, 예외적으로 기부금으로 조성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사설 및 기타'에 입력)

【교내 장학금】 : 학생에게 지급된 교내 장학금의 수혜 명목(지급사유)에 따라 성적우수/저소득층/근로/재난/교직원/기타로 구분하여 입력

※ 장학금의 수혜명목(지급사유)이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예: 재난 피해를 입은 학생이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대학이 판단하여 1개의 장학금 유형으로 입력(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

【교내-성적우수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

※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아닌 장학금 수혜 명목인 성적우수장학금으로 입력함

※ 신입생(내신, 수능, 논술, 면접, 수상경력 등 대학별 입학사정관제에 준함) 및 편입생은 입학성적이 학업성적임

【교내-저소득층장학금】 : 각 대학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

※ <학비감면 준수여부>의 30%규정 준수여부는 교내 장학금 종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자가 학비를 감면 받았을 경우도 인정함

【교내-근로장학금】 : 교내·외 특정 장소에 배치되어 일정시간 근로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예: 국가근로장학금 중 대학 대응투자금액 및 대학자체 근로장학금)

【교내-재난장학금】 : 각 대학이 재난을 사유로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

【교내-교직원장학금】 : 해당 대학의 재적 교직원 또는 그 가족 등을 위해 지급한 장학금을 입력함

※ 대학 외(자매재단이나 동일법인, 타대학 등) 교직원에게 지급한 교직원장학금은 '교내-기타장학금'으로 분류함

【교내-기타】 : 성적우수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근로장학금, 재난장학금, 교직원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을 입력함

【재학생 1인당 장학금】 : (교내 및 교외 장학금 / 재학생 수)

※ 학과명칭 변경, 신설, 폐과, 학부제 등으로 인해 재학생이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의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

〈학비감면 준수 여부〉

【학비감면 준수 여부】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준수 여부

※ 본교와 분교가 나뉜 경우는 본교와 분교가 각각 입력(캠퍼스는 본교에 통합 입력)

【10%규정 준수 여부】 : 당해연도 등록금수입 재원으로 면제·감액·(부득이)사후 지급된 금액을 입력함(계절학기 제외)

【30%규정 준수 여부】 : 당해연도 등록금수입 재원으로 경제사정 곤란자에게 면제·감액·(부득이)사후 지급된 금액을 입력함
(계절학기 제외)

※ 장학금 종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경제사정 곤란자가 학비를 감면받았을 경우도 인정함

【등록금수입 총액】 : 결산기준의 등록금수입 총액(수강료수입 및 계절학기 제외)을 입력함

※ 등록금수입 총액 = 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사립대: 2025년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참고사항

- 장학금 수혜 현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4. 1. 재학생 수는 2025년 <4-마> 재학생 현황, 10. 1. 재학생 수는 2025년 교육기본통계 하반기 조사의 재학생 수 연계 활용
- 학비감면 준수 여부는 대학 장표에 대학 부설 대학원의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

12-다-2. 학자금 대출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7~8월(장학금 공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장학재단)

【공시내용】 : 2025학년도 1학기, 2학기 학자금 대출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6. 6. 30.(자료추출일))

○ 대학

(단위: 명, 원, %)

기준 연도	구분	학기	재학생 (인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대출 이용학생비율 (%)	
				전체 (등록금+생활비)		등록금 (학비)		전체 (등록금+생활비)		등록금 (학비)		전체	등록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5	대학	1											
		2											
	대학원	1											
		2											

○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단위: 명, 원, %)

기준 연도	구분	학기	재학생 (인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대출 이용학생비율 (%)	
				전체(등록금+생활비)		등록금(학비)		전체(등록금+생활비)		등록금(학비)		전체	등록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5		1											
		2											

■ 검증사항

【재학생】 : 2025년 1학기, 2학기 재학생 수는 <12-다-1>의 2025년 1학기, 2학기 재학생 수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재학생】 : 2025년 1학기(4. 1.), 2025년 2학기(10. 1.) 재학생 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과 금액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로 구분하여 입력

※ 추출기준: 한국장학재단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 시스템' 상 대출실행정보 기준(재대출 제외), 신·편입생은 최종등록대학 기준

【학자금대출이용학생비율(%)】 : (학자금대출 인원 / 재학생 수) × 100

■ 참고사항

- 학자금 대출 현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장학재단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전년도 1학기 재학생 수는 2025년 <4-마> 재학생 현황, 전년도 2학기 재학생 수는 2025년 교육기본통계 하반기 조사의 재학생 현황 연계 활용
- 학자금 대출 현황은 본교 장표에 분교 및 캠퍼스의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

12-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12-라-2. 외국대학과 학점 교류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5학년도 외국대학과 학점 교류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학년도)

(단위: 명)

기준 연도	학점 교류 현황		파견 인원 (자 대학교→ 타대학교)	파견기간별 인원			유치 인원 (타대학교→ 자 대학교)	유치기간별 인원				
	국가명	대학명		~3개월	3개월 초과~ 6개월	6개월 초과~ 1년		1년 초과	~3개월	3개월 초과~ 6개월	6개월 초과~ 1년	1년 초과

■ 작성지침

【기준연도】 : 학생이 학점 교류를 실시한 연도

【학점 교류 현황】 : 학교 간 '학점교류협약'이 체결되어 일정 학기 동안 교류학교의 '정규수업'을 듣고 그에 따른 학점을 인정 받은 경우 해당 국가와 대학명 입력

【파견 인원: 자 대학교→타대학교】 : 타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생 수

【파견기간별 인원】 : 타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생의 학점교류 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의 차이를 개월수로 환산)

【유치 인원: 타대학교→자 대학교】 : 해당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타대학교 학생 수

【유치기간별 인원】 : 해당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타대학교 학생의 학점교류 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의 차이를 개월수로 환산)

○ 교류 기간이 여러 학기에 걸쳐 진행된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집계

(예 1: 2025년 1학기(2025. 3. 1.)부터 2025년 2학기(2026. 2월 말일)까지 교류 시 2025년도 학점교류 인원예 기간이 6개월 초과~1년인 1명으로 집계)

(예 2: 2025년 1학기(2025. 3. 1.)부터 2026년 1학기(2026. 8. 31.)까지 교류 시 2025년 1년 초과인 1명, 2026년 1년 초과인 1명으로 집계)

※ 2026년도 현황은 2027년 8월 공시 예정

■ 참고사항

- 외국대학과 학점 교류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

【공시시기】 : 2026년 4월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2025년 대학(학부)의 사회봉사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공개

【공시양식】 : 사회봉사교과목 및 사회봉사교과목 외 프로그램 현황(자료기준일: 2025. 3. 1. ~ 2026. 2월 말일)

(단위: 학점, 명)

강좌명	학기	기간	학점	구분	수강학생 수	이수학생 수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여름계절학기	-				
	겨울계절학기	-				
	학기구분없음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원격대학은 본 공시항목 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강좌명】 : 2025학년도에 개설된 강좌명

【학기】 : 2025학년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계절학기(여름), 계절학기(겨울), 학기구분없음을 선택하여 입력

※ 동일한 사회봉사교과목이 1학기, 2학기에 각각 개설되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1학기, 2학기 모두 입력

【기간】 : '학기구분없음'의 활동 기간(0000년 00월 ~ 0000년 00월)을 입력

【학점】 : 인정 학점 수(학점이 없는 경우 '0'으로 입력)

【구분】 : 사회봉사교과목 및 사회봉사교과목 외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입력함

※ 서비스 러닝(Service Learning, 교과목에 지역사회봉사를 통합시킨 교수-학습 방법) 등 전공 연계 사회봉사 교과목 포함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지식멘토링 중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및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등 시간당 근로 장학금을 받는 활동은 제외하고 입력

【사회봉사교과목】 : '사회봉사교과목'이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교과목

- 1) 목표: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기본자세 함양, 이웃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의식 함양,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리더 양성, 대학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의 네 가지 항목(사회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대학 모두 인식하고 실천과 유사한 내용을 목표로 하는 교과목
- 2) 필수 포함 사항: 사회봉사교과목은 대학기관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명칭에 '봉사'가 포함되거나, 사회봉사가 과목의 주요 내용이어야 하며,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을 대학에서 정해야 함. 또한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봉사이론 및 안전에 대한 강의를 하여야 하며, 정해진 준거를 가지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함

【사회봉사교과목 외 프로그램】 : ‘사회봉사교과목 외 프로그램’이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프로그램

- 1) 목표: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기본자세 함양, 이웃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리더 양성, 대학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의 네 가지 항목(사회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대학 모두 인식하고 실천)과 유사한 내용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 2) 필수 포함 사항: 교과목 외 프로그램은 대학기관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을 대학에서 정해야 함
 - ※ 학교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중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이며 재학생 포함 교직원, 외부인 등이 모두 참여할 경우, 참여한 재학생에 대해 입력가능
 - ※ 학교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중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이며 참여 대상에 재학생 포함 교직원, 외부인 등이 모두 참여할 경우, 참여한 재학생에 대해 입력가능

【수강학생 수】 : 해당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수강 또는 이행한 인원

【이수학생 수】 :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인원

- ※ 사회봉사교과목 외 프로그램의 수강학생 수와 이수학생 수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수강학생 수와 이수 학생 수에 동일하게 입력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2-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5월(대학의 원격강좌 콘텐츠 현황)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시내용】 : 대학의 원격강좌 개설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5. 3. 1. ~ 2026. 2월 말일(2025학년도 1학기, 2학기 및 여름계절학기, 겨울 계절학기))

(단위: 건, 명)

학문분야	원격강좌(우리대학 학생 → 우리대학 강좌수강)								
	1학기			2학기			계절학기		
	강좌수	수강자수	군복무 수강자수	강좌수	수강자수	군복무 수강자수	강좌수	수강자수	군복무 수강자수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융합학과 등									

우리대학 개설 학점교류 원격강좌(타대학 학생 → 우리대학 강좌수강)						공동활용 원격강좌수 (우리대학 학생 수강)	학점교류 협약대학 수
1학기		2학기		계절학기			
강좌수	수강자수	강좌수	수강자수	강좌수	수강자수		

※ 원격대학은 본 항목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원격강좌】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원격 강좌

원격강좌 정의

1)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 '대학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원격교육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일반대학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할 경우 세부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
 - 원격수업 교과목 분류 및 개설 기준, 운영이수기준, 가능학점, 평가관리, 출석관리, 폐강 및 분반 기준, 원격교육지원센터 등
 - ※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조항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의 내용 반영

원격강좌 정의

2) 기타 원격강좌

- OCU 또는 KCU와의 협약(회원)을 통해 OCU 또는 KCU에서 제공하는 강좌
- ※ OCU, KCU의 경우 본교 학생들이 수강하고 학점 인정을 받은 강좌

제외대상 원격강좌

- 해당 강좌가 수업의 보조 자료로 쓰인 경우
- 대학의 원격수업 기준에 따른 원격강좌 이외의 혼합형 강좌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제공하는 강좌
- 비정규 교과목 중 학점이 부여되지 않고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는 강좌
- 본교에서 원격 강좌를 개설하였으나 수강인원이 없는 경우

【학문분야】 : 학과의 경우 대학 자체 학과 계열 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함

【학기】 : 2025학년도 1, 2학기 및 계절(여름, 겨울)학기(3학기, 4학기 운영 과목은 2학기에 포함)

【강좌수】 : 원격강좌로 운영한 강좌수

- ※ 동일 강좌가 매학기 개설된 경우, 학기별로 각각 기입
- ※ 수강은 본 학기, 성적표는 계절학기에 기재되는 경우 운영학기를 계절학기로 선택
- ※ 동일 교과목 분반 시 1개 강좌로 기재

【수강자수】 : 전체 강좌 수강자수 합계(군복무 수강자수 포함)

- ※ 수강자 중 'F'학점을 받은 수강자도 수강인원에 포함
- ※ 동일 교과목 분반 시 동일 교과목에 대한 총 수강인원 표기

【군복무 수강자수】 : 군복무 학생 원격강좌 수강인원 합계

【공동활용 원격강좌수】 : 공문 및 협약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복수의 대학에서 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원격수업 강좌를 의미함

- ※ 복수의 국내대학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격강좌(KNU9, UDEC 등), 혁신공유대학(공동교육과정) 등의 강좌는 포함, 대학이 아닌 공공기관 원격교육 플랫폼(K-mooc 등), 외국대학의 원격교육 플랫폼(COURSERA, edX 등)의 OCW/OER 강좌는 포함하지 않음

【학점교류 협약대학 수】 : 학점교류 중인 대학 수(협약 후 학점교류가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

참고

-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11.28.>
-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 ※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참고사항

- 대학의 원격강좌 개설 현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고등교육 이러닝 현황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원격강좌 실적은 본교, 분교 및 캠퍼스별로 구분하여 집계 및 공시(여러 캠퍼스가 동일 강좌를 공동 개설한 공동운영 원격강좌는 중복 산정하지 않음)

- 실시간 화상강의(ZOOM 등)은 고등교육법 제22조의 원격수업 유형에 해당하며, 원격강좌로 인정(단, 대면수업 보조용(출석대체, 보충수업)은 원격강좌에서 제외)
- 원격강좌 기준은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을 따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2-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 현황[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5월(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연구재단)

【공시내용】 : 2026년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 현황

【공시양식】 : 학교의 자체 양식(PDF 파일 형태)(자료기준일 : 2026. 4. 1.)

■ 작성지침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관련 규정】 : 교원업적평가 규정, 재임용·승진 규정을 포함한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와 관련된 규정

※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시행세칙, 재임용·승진 규정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관련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공시

※ 단과대학별, 계열별, 학과별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내규 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별도 PDF 파일로 공시

○ 교원업적평가

- 산학협력 실적 반영 현황: 기술이전, 특허 등록, 소프트웨어, 산학협력공동연구, 기술·경영자문,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실적의 교원업적평가 반영 여부, 반영 배점 및 SCI급 논문 실적대비 산학협력 실적의 반영 정도 등/관련 규정명, 관련 조항 명기
- 산학협력 영역 별도 설정 여부: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영역과 별도로 산학협력 평가영역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관련 규정명, 관련 조항 명기
- 기타 교원업적 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 고려사항: 기타 교원업적 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 고려사항/관련 규정명, 관련 조항 명기

○ 재임용·승진

- 산학협력 실적의 재임용·승진 평가 시 활용 현황: 기술이전, 특허 등록, 소프트웨어, 산학협력공동연구, 기술·경영자문,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실적의 재임용·승진 평가 시 활용 여부, 활용방법 등/관련 규정명, 관련 조항 명기
- 산학협력 실적물의 연구실적물 최소기준 대체 가능 여부: 산학협력 실적물로 재임용·승진 시 요구되는 연구실적물 최소기준 대체 가능 여부, 대체 가능 비율 등/관련 규정명, 관련 조항 명기
- 기타 재임용·승진 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 고려사항: 기타 재임용·승진 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 고려사항/관련 규정명, 관련 조항 명기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 현황】 : 교수업적평가 시 SCI급 논문 1편 대비 산학협력 실적 배점을 계열별로 입력(교수업적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 비율)

※ 일반 전임교원에 적용되는 교원업적평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특정 전임교원(연구교수,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하서는 안됨

예시

구분	산학협력 영역 별도 설정 여부	교수업적평가					산학협력 교육 및 창업 부문				산업체연계 부문	
		기술 이전 (1천만원)	해외 특허 등록 (1건)	국내 특허 등록 (1건)	산학협력 공동연구 (1천만원)	소프트 웨어 (1건)	현장 실습 지도 (1학기)	교원창 업 (1건)	창업 교육 (1과목)	산업체연계 교육프로 그램 개발 (1건)	기술 경영 자문 (1회)	산업체 파견 (1회)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전 체												

■ 참고사항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2-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5월(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연구재단)

【공시내용】 : 2026년 학과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2021. 4. 2. ~ 2026. 4. 1., (산학협력중점교수) 2026. 4. 1.)

(단위: 명)

기준 연도	단과대학	학과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경력없음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채용형 전임	지정형 전임	비전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									

■ 작성지침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은 최근 5년 이내 신규임용된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산학협력중점교수'는 2026. 4. 1. 기준으로 전체 현황을 작성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중 최근 5년 이내 신규 임용되었으나, 2026. 4. 1. 기준 퇴직 교원은 제외

※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제외

【학과】 : 산업체 경력이 있는 전임교원이 소속된 학과를 가리키며, 대학원 소속 교원의 경우에는 "OO대학원 OO학과"로 기입

※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은 '기타(소속학과없음)'으로 분류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 산업체 경력별로 전임교원 수를 구분하여 입력

【산업체 경력 범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함

참고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시행 2025. 1. 16.]

제4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규정 제4조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된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삭제>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4.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5~7. <삭제>

참고

8.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9.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 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1.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할 경력
17.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8.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 ①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산업체 경력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의미함)
- ②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거나 지정된 자
 -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③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무 ④ 임용 또는 지정 방식 ⑤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 평가 및 재임용·승진 심사방법 등을 포함
 -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임용하거나 기존 전임교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기존 전임교원 중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 10년 미만이라도 지정 가능
- ③ 책임강의시수를 30% 이상 감면받은 자
 -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책임강의시수에서 30% 이상을 감면(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를 기준으로 판단)
 - ※ 인정기준 마련 이전(11.9.7)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학칙, 정관 또는 채용공고문을 근거로 산학협력을 중점 추진하는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 평가 및 재임용·승진 심사를 받는 자라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형 전임】 :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전임교원 형태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수를 입력

【산학협력중점교수-지정형 전임】 : 최초 임용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전임교원 수를 입력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 :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비전임교원 형태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수를 입력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시에는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 참고사항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2-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5월(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연구재단)

【공시내용】 : 2025년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장비 운영) 2026. 2월 말일, (설비자산사용료) 2025. 3. 1. ~ 2026. 2월 말일)

(단위: 원)

장비명	모델명	장비위치	제작사(공급사)	구입년월 (YYYYMM)	구입가격 (원)	설비자산사용료 수익(원)				
						합계	대학회계	교비회계	산단회계	기타

■ 작성지침

【작성기준】 : 대학이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장비에 한해 기재함

※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정의: 대외 개방 및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용장비 집적센터(대학 산학협력단 부속시설, 공동실험실습관, RIC(지역기술혁신센터), TP(테크노파크) 등)에 구축되어 타 연구자 및 기관에게 활용이 허용된 연구장비로, 취득 가격 3천만원 이상인 장비를 의미함(교수 개인연구실에 구축되어 있는 연구장비는 미포함)

【장비명】 : 한글 장비명을 입력하고 부득이한 경우 영문 장비명을 입력

【모델명】 : 장비 모델명 입력

【장비위치】 : 공동실험실습관 등 장비가 설치된 공간을 입력

【제작사(공급사)】 : 장비를 제작한 제작사 또는 공급사를 입력

【구입년월】 : 장비 도입년월을 기재(YYYYMM)

【구입가격】 : 장비 구입가격을 원단위로 기재(달러는 구입당시 기준으로 한화로 환산)

【설비자산사용료 수익】 :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설비 임대 등)을 통해 거둔 수익을 기재하되 장비의 소관별 회계 비목 중 '설비자산 사용료' 비목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의 합계를 기재

(예: 국립대학의 학교장비는 대학회계, 사립대의 학교장비는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소유의 장비는 산단회계 등)

※ 설비자산사용료가 없더라도 포함하여 입력해야 하며, 설비자산사용료 수익은 0으로 입력

※ 내부거래는 설비자산사용료 수익에서 제외됨

■ 참고사항

-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운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공시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상 운영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작성 대상으로 하므로, 20일 미만인 경우 공시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예: 학교별 학점인정(출석일) 기준에 따라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21일로 출석처리 하였더라도, 실제 출석일이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19일 경우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로 운영된 경우 시간환산 없이 1일의 출석일로 집계하여 공시 실적 제출
 - ※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와 달리 운영되거나, 1주간 4일 미만으로 운영되거나, 1일 6시간 미만으로 운영된 국내·외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는 불인정(총 시간수 환산 인정 등 불가)
 - ※ 대학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습기간 중 교내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집합교육 일자 등은 실적으로 불인정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른 재택실습은 출석일로 포함함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4조의 '수업' 요건을 갖추어,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하며, 현장실습 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부여되어야 함
- ※ 수업 요건
- ①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 ②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 ③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 ④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 ⑤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 ⑥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현장실습생-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야 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공시 대상으로 하므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운영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협약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부 및 평가표로 운영되어야 함
- ※ 학과별 정원내·외 재학생 수는 필요에 따라 대학정보공시 '4-마. 재적 학생 현황'의 재학생 수 활용(현장실습 운영현황 항목에서는 공시하지 않음)
- 【학점수】**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해 부여하는 학점수 입력(복수과목 개설시 학과별 최소 학점수와 최대 학점수만 입력)
※ 소계, 합계는 학기별, 당해연도 학점수를 합산하지 않고 해당학기, 해당연도 최소 학점과 최대 학점을 작성
- 【이수학생수】** : 정원내·외 학생 중 2025학년도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 수를 입력
- 학칙으로 정한 현장실습생 대상 학년 및 요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 동일 학과에 주/야간 과정이 구분되어 운영되는 경우 이수학생수를 구분하여 작성
 - 학과에 이수학생이 없으면 '0'을 입력
 - 정규학위과정인 외국인 유학생은 포함하나 정규학위과정이 아닌 외국 학생(어학연수생, 방문학생, 그 외기타)은 현장실습 이수학생수에서 제외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별도 법령 및 자격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
※ 현장실습 제외대상(아래 표 참조)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르며, 각 학교의 현장실습 형태가 어떤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자격취득과 관련이 없는 현장실습은 포함하되 해당 학생의 원소속 학과 실적으로 입력

제외대상 현장실습

- ①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등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고시」에 따른 사서 실습
- ② 평가·인증 및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의 현장실습
 -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조종사, 해기사 등

- 이수학생수는 학생의 원 소속학과 실적으로 입력
 - ※ 한 학생이 여러 학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또는 복수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이수하고 해당 학기별로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학기별로 실적 인정이 가능하나, 1개 학기 기준 1회의 실적만 인정함
 -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의 학생은 아니나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이수한 경우, 이수 학생수는 해당 학생의 원 소속 학과 실적으로 입력
- 실습기간과 학점인정(부여) 시점이 다른 경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요건(수강신청 등)을 갖추지 않고 운영되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하계방학에 수강신청 없이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2학기에 수강신청을 받아 학점 처리하는 형태(후학점 처리) 등은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영되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위반되는 형태임
- 아래 불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현장실습학기제로 학점을 부여하거나, 공시 대상 실적으로 제출하면 안 됨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불인정 기준을 공시 대상 실적으로 제출한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고등교육법」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임

불인정 기준

- ①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 ②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③ 제4조제4항·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 ④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⑤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⑥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⑦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보험 가입학생수】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학생 중 보험에 가입한 학생수를 입력

- 대학 및 실습기관에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대학 가입), 산재보험(실습기관 가입)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 ※ 상해 및 산재보험 적용 기간이 실습기간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인정

【상해보험 가입학생수】 : 대학에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학생수를 입력

【산재보험 가입학생수】 : 실습기관에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학생수를 입력

【실습기관수】 : 국내외 소재 연구기관, 국가, 지자체 및 대·중소기업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한 기관수를 입력

【학교주도】 :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가 운영된 실습기관수를 입력

【실습기관주도】 :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가 운영된 실습기관수를 입력

○ 학교-실습기관 쌍방 간 공적 문서(공문 및 공고문 등)를 근거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메일 등을 통한 개인 간의 합의는 쌍방 간의 공적문서에 대한 근거로 불인정

※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학교는 학기별로 다음의 증빙서류를 학교에 구비·보관하여야 함

- ① 실습기관 발굴, 모집 등과 관련한 공문 및 공고문 등의 공적문서
- ② 실습기관 및 학생별 운영계획 및 협약, 출석 및 평가 관련 서식
- ③ 참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등 학점인정 관련 각종 서류
- ④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실습지원비 수령 학생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실습기관으로부터 실습지원비를 수령한 학생수를 입력

○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만 인정하며,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음

※ 실습지원비는 학교를 통해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되며, 공시실적으로도 불인정

※ 대학에서 국고 및 교비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비, 장학금 등은 실습지원비로 인정하지 않음

(예 1: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실습지원비 1,572,202원을 수령하고 대학으로부터 지원비를 524,068원을 수령하는 경우 실습지원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1,572,202원임)

(예 2: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실습지원비 2,096,270원을 수령하고, 대학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 제5항에 따라 기업에 국고지원금 524,068원을 지급하는 경우 실습지원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2,096,270원임)

※ 실습지원비 수령학생수 합계는 이수학생수와 일치해야 함

※ 실습지원비 지급 수준이 최저임금(환산액) 기준 75% 미만인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최저임금 75% 이상】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의 산출 및 지급수준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월/주 단위 환산액 기준) 75% 이상~100% 미만으로 실습지원비를 수령한 학생수

【최저임금 100% 이상】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의 산출 및 지급수준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월/주 단위 환산액 기준) 100%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수령한 학생수

(예 1: 1주 5일, 1일 8시간 운영기준 월 단위 실습시간은 209시간이며, 월 단위 실습지원비 환산 시 2025년 최저임금(월 환산액) 100%는 2,096,270원, 75%는 1,572,202원임)

(예 2: 1주 5일, 1일 8시간 운영기준 주 단위 실습시간은 48시간이며, 주 단위 실습지원비 환산 시 2025년 최저임금(주환산액) 100%는 481,440원, 75%는 361,080원임)

【재택실습 이용학생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재택실습을 이용한 학생수를 입력

【실습기간의 25% 이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택실습을 이용한 학생수

【실습기간의 25% 초과】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택실습을 이용한 학생수

재택실습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7조(재택실습) [시행 2025. 12. 22.]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재택실습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2. 재택실습 실시 시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한다.
 - ②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의 경우 실습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사항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2.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 참고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실제 출석일수, 산재보험 가입, 실습지원비 등에 대한 확인(실사) 실시 예정

12-카-2. 캡스톤 디자인 운영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5월(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연구재단)

【공시내용】 : 2025학년도 학과별, 학기별 캡스톤 디자인 운영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5. 3. 1. ~ 2026. 2월 말일)

(단위: 학점, 명, 원)

기준 연도	단과대학	학과(전공)	계열	구분	교과목명	학기	학점수	이수학생수(명)					
								해당 학과	타 학과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지원금 수령 학생수 (명)		지원금 수령 총 금액(원)											
		시제(작)품 제작비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 작성지침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의 정의】 : ① 1~2학년동안 배운 전공교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과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 하도록 지원하는 정규교과목으로, ② 교과목명에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또는 종합설계”를 부기하여 캡스톤 디자인 여부가 명확하고, ③ 시제(작)품 제작 등을 위한 실험·실습비 또는 교육프로그램 지원비가 지급되며, ④ 팀 과제로 1학기 이상 운영되는 경우로, 캡스톤 디자인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함
→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으로 인정함

【학과(전공)】 :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 개설된 학과(전공)

※ 특정학과에서 개설되지 않는 경우 기타(소속학과없음)에 입력

【계열】 : 해당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 개설된 학과의 계열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인문·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1. 의예과·치예과·한예과·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된다. 2. 계열 간의 연계·융합으로 어느 계열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어느 계열에 해당하는지를 정할 수 있다.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교과목명】 : 개설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명을 기입(부기명이 있을 경우 괄호 내에 명기)

【학점수】 :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별로 부여하는 학점수 입력

【해당학과 이수학생수】 : 캡스톤 디자인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수 중 해당 과목이 개설된 학과 소속 학생 수를 입력

【타 학과 계열별 이수학생수】 : 캡스톤 디자인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수 중 해당 과목이 개설된 타 학과 소속 학생수를 계열별로 나누어 입력

※ 여름 계절학기는 1학기에, 겨울 계절학기는 2학기에 포함하여 입력

※ 한 학생이 복수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중복 인정 가능

※ 융합형(다학제) 캡스톤 디자인 과목은 기타(소속학과없음)에 입력하고, 이수학생수는 **【타 학과 계열별 이수 학생 수】**에 입력

※ 이수학생 중 정규학위과정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교환학생, 어학연수생, 방문학생, 그 외 기타)은 이수학생수에서 제외

참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이수학생의 범위

- 1학기: (대학) 2025. 4. 1. 기준 재학 중인 4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
(전문대학) 2025. 4. 1. 기준 재학 중인 2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
- 2학기: (대학) 2025. 10. 1. 기준 재학 중인 4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
(전문대학) 2025. 10. 1. 기준 재학 중인 2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

【지원금 수령 학생수】 : 이수학생수 중 시제(작)품 제작비 또는 교육프로그램 지원비를 받은 학생의 수

【지원금 수령 총 금액-시제(작)품 제작비】 : 시제(작)품 제작을 위한 실험/실습비

【지원금 수령 총 금액-교육프로그램 지원비】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행사 개최 비용 등 시제(작)품 제작 외 교육 지원 비용

■ 참고사항

- 캡스톤 디자인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2-카-4.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12-카-4-(1) 계약학과/계약정원제 설치 운영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5월(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연구재단)

【공시내용】 : 2026학년도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설치 운영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 4. 1.)

(단위: 명, %, 건)

계약정원/계약학과 구분	취득 학위	계약학과 유형	계열	모체학과 명칭	모체학과 입학정원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명칭	신/편입 과정 구분	계약학과 정원	입학생 수	재학생 수	외부학습장 이용 여부	계약형태
첨단(신기술) 분야 여부 (O/X)	산업체 경비 부담률	외부기관 경비 지원율	대학 자체 감면율	학생 경비 부담률	기관명	사업명	계약 산업체	타 산업체				

■ 작성지침

【입력 대상】 : 재적 학생이 존재하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운영 학과(대상 산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재적 학생이 존재 하더라도 입력하지 않음)

【계약정원/계약학과 구분】 : 운영하는 학과가 계약정원제인지 계약학과인지 명시

【취득학위】 : 당해 대학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학위과정으로 전문학사, 학사, 학석사통합,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 학위과정으로 구분

※ 학과명이 동일해도 학위과정이 다를 경우 별도의 학과이므로 학위과정별로 별도 입력

【계약학과 유형】 : 채용조건형, 재교육형, 혼합형으로 구분(계약정원제의 경우, 미입력)

- 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재교육형 :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 혼합형 :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이 혼합된 방식으로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학생이 사전에 정해진 일정 부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산업체 등에서 채용을 확정하여 재교육형으로 전환 운영하는 경우

※ 대학 입학 전에 채용이 확정된 경우는 모두 재교육형으로 구분

【계열】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인문·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1.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된다. 2. 계열 간의 연계·융합으로 어느 계열에 해당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어느 계열에 해당 하는지를 정할 수 있다.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의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분류

【모체학과 명칭】 : 계약학과의 주된 교육을 운영하는 일반학과로 계약학과 설치의 모체가 된 학과 명칭(다수 학과가 연관된 경우 교육과정 구성 및 수업운영에 주로 참여하는 학과를 모체학과로 입력) (계약정원제의 경우, 미입력)

【모체학과 입학정원】 : 당해연도 모체학과의 입학정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 시 당해연도 전기, 전년도 후기 모체학과에 실제 입학한 학생수를 입력(계약정원제의 경우, 계약정원을 제외한 모체학과 일반 입학정원 입력)

※ 모체학과의 학생 신규모집이 중단된 경우 모집중지 전 입학정원으로 입력

※ 전공자유선택제로 입학 후 추후 전공이 배정되는 경우 학칙에 따른 모체학과의 입학정원 수를 입력

【계약학과 명칭】 : 당해 대학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학과 명칭 및 계약정원제가 운영되고 있는 학과 명칭

【신/편입 과정 구분】 : 당해 계약학과/계약정원제가 신입생 대상 과정인지 편입생 대상 과정인지 명시, 학칙에 신입정원과 편입정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을 경우 각각 입력(신입생 및 편입생이 모두 대상인 경우 한 줄로 입력하지 않고 각각 두 줄로 나눠서 입력)

※ 학칙에 편입정원 명시 없이 단순히 계약학과/계약정원제 학생의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생을 뽑는 경우 신입학과정으로 입력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명칭】 : 당해 대학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학과 명칭 및 계약정원제가 운영되고 있는 학과 명칭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학부명을 전부 기재하되, 계약정원 과정의 별도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명칭도 기재

【입학생수】 : 당해연도 전기, 전년도 후기 계약학과/계약정원제로 실제 입학한 학생수(계약정원제일 경우, 해당학과에서 계약정원제로 입학한 학생 수 입력)

【재학생수】 : 2026. 4. 1. 기준 당해 대학 계약학과/계약정원제로 재학하고 있는 학과별 재학생수(계약정원제일 경우, 해당학과에서 계약정원제로 재학중인 학생 수 입력)

【외부학습장 이용여부】 : 대학 소유의 교사가 아닌 산업체가 제공한 시설 또는 대학 소유 시설에서 계약학과/계약정원제 수업을 진행하는 여부를 'O', 'x'로 표시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협동수업'을 의미

【계약형태】 : 계약형태는 단독계약, 공동계약, 3자계약으로 구분

- 단독계약 : 산업체 등이 단독으로 대학과 계약학과/계약정원제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 공동계약 : 여러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대학과 계약학과/계약정원제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 3자계약 : 사업주 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해당 산업체, 대학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학과/계약정원제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 ※ 하나의 계약학과/계약정원제에 여러 개의 계약형태가 중복되는 경우 공동계약으로 간주하여 입력, 계약형태별로 별도 입력 금지

【첨단(신기술)분야 여부】 :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에 해당 여부를 표시(계약정원제의 경우 미입력)

※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1]과 관련성 있는 분야인 경우 해당

【산업체 경비 부담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거 계약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비율

【외부기관 경비 지원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계약 주체가 아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비율

【대학 자체 감면율】 : 계약학과/계약정원제의 산업체 의무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중 대학이 자체적으로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하여 학생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감면한 비율

※ 대학 자체 일괄적 감면 외에 학생이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수혜한 타 장학금 등 제외

【학생 경비 부담률】 : 계약학과/계약정원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학생이 부담한 비율

※ 산업체 부담률 + 외부기관 지원율 + 대학 자체 감면율 + 학생부담률 = 100%가 되어야 함

【경비지원 외부기관】 : 외부기관이 계약학과/계약정원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명과 사업명 명시 (예 : 중소기업부-중소기업계약학과, 고용노동부-일학습병행기업, OO도-OOO사업)

【채용조건형/계약정원제 졸업자】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의 경우 2025년 8월과 2026년 2월 발생한 졸업자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해당 없음”으로 입력

【채용조건형/계약정원제 취업자-계약 산업체】 : 【채용조건형/계약정원제 졸업자】 중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취업을 한 인원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해당 없음”으로 입력

【채용조건형/계약정원제 취업자-타 산업체】 : 【채용조건형/계약정원제 졸업자】 중 계약을 맺지 않은 타 산업체에 취업을 한 인원(대학원 등 진학 미포함)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해당 없음”으로 입력

【산업체수】 : 당해 대학과 계약학과/계약정원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의 총 수

■ 참고사항

- 계약학과/계약정원제 설치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2-카-4-(2) 주문식 교육과정 설치 운영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5월(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연구재단)

【공시내용】 : 2025학년도 주문식 교육과정 설치 운영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 3. 1. ~ 2026. 2월 말일)

(단위: 명, 건, %)

학위과정	계열	주문식 교육과정명	운영유형	채용유형	참여학과	참여학생수	약정인원	산업체 수	주문식 교육과정 졸업자
취업자		등록금 부담 현황				경비지원 외부기관			
약정 산업체	타 산업체	산업체 부담률	외부기관 지원율	대학 자체 감면율	학생 등록금 부담률	기관명	사업명		

■ 작성지침

【입력 대상】 : 재적 학생이 존재하는 주문식 교육과정

【학위과정】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선택

【계열】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계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비고
인문·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의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주문식 교육과정명】 : 운영 중인 주문식 교육과정의 정식명칭 입력(약칭이나, 영문약어 사용 금지)

【운영유형】 :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형 입력

- 학점인정 : 산업체와 협약하여 1과목 이상의 교육과정(학점인정)을 개편(개설)하고 채용을 약정, 우대하는 경우
- 학점미인정 : 별도 교육과정(학점인정) 개편 없이 채용을 약정, 우대하는 경우(학점과 관련 없는 맞춤형 프로그램(맞춤형 코스), 방학 중 인턴십 실시 등)

【채용유형】 : ‘채용인원 약정’ 및 ‘채용시 우대’ 중 선택

- 채용인원 약정 : 대학이 기업과 협약서(MOU 등)에 채용 예정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 채용시 우대 : 대학과 기업이 협약서(MOU 등)에서 해당과정 이수자의 채용을 우대하기로 약정한 경우나 협약서 등에 채용인원을 확정하지 않고 “OO명” 등 미확정 인원으로 협약한 경우

【참여학과】 : 해당 교육과정에 참여 중인 학과, 전공을 표시

- 학과명은 학칙에 따라 구분되는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학과, 학부, 전공 등)

【참여학생수】 : 해당학년도에 운영 중인 주문식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재학생 수

※ 중복으로 참여한 학생은 대학 자체 판단하여 하나의 과정에만 인원수 입력(예: 참여시간이 많은 과정 등)

【약정인원】 : 협약서(MOU 등) 에서 채용을 약정한 인원 명시

- 인원 약정 없이 단순 채용만 우대하는 경우 '채용 시 우대'로 표시

- 채용을 약정했으나 'OO명' 등으로 인원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도 '채용 시 우대'로 표시

【산업체 수】 : 당해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체의 총 수

【주문식 교육과정 졸업자】 : 주문식 교육과정 참여 학생 중 2025년 8월과 2026년 2월 발생한 졸업자

※ 중복으로 참여한 학생은 대학 자체 판단하여 하나의 과정에만 인원수 입력(예: 참여시간이 많은 과정 등)

【취업자-약정 산업체】 : 【주문식 교육과정 졸업자】 중 약정을 맺은 산업체에 취업을 한 인원

【취업자-타 산업체】 : 【주문식 교육과정 졸업자】 중 계약을 맺지 않은 타 산업체에 취업을 한 인원(대학원 등 진학 미포함)

【산업체 등록금 부담률】 : 주문식 교육과정 등록금 중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율

【외부기관 등록금 지원율】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각종 사업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비율

【대학 자체 감면율】 : 대학이 자체적으로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하여 학생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감면한 비율

※ 대학 자체 일괄적 감면 외에 학생이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수혜한 타 장학금 등 제외

【학생 등록금 부담률】 : 등록금 중 학생이 부담한 비율

※ 산업체 등록금 부담률+외부기관 등록금 지원율+대학 자체 감면율+학생 등록금 부담률=100%가 되어야 함

【경비지원 외부기관】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주문식교육과정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명 명시

(예: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비지원 외부사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주문식교육과정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명 명시

(예: BK2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등)

■ 참고사항

- 주문식 교육과정 설치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5월(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연구재단)

【공시내용】 : 2025년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5. 1. 1. ~ 2025. 12. 31.)

(단위: 건, 원)

기준연도	건수	수입료

■ 작성지침

【작성대상】 :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한함

- 본교와 분교가 나뉜 경우는 산학협력단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함. 즉,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존재할 경우 본교와 분교를 나누어 작성하며, 산학협력단이 공동인 경우는 본교와 분교를 합해서 작성해야 함

【기술이전】 : 기술이전 계약서 체결을 근거로 작성함.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매매하거나 실시권을 하여(허락)한 경우에 한함

- ※ MTA(물질이전계약)도 포함하여 입력하되, 수입료는 수취한 실 수입료를 기준으로 입력
- ※ 제외대상: 기술지문(컨설팅, 기술지도 포함), 산업체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의 이전은 제외함

【건수】 : 조사연도(2025. 1. 1. ~ 2025. 12. 31.)에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를 근거로 한 기술이전 건수를 말함. 기술료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산출

- ※ 1개의 계약서 내에 다수의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도 1건으로 봄

【수입료】 :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근거로 조사연도(2025. 1. 1. ~ 2025. 12. 31.)에 수취한 실수입료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한 연도와는 상관없이 조사연도에 실제적으로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입력하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

- ※ 계약연도와 입당해연도가 다를 경우, 건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수입료는 입금일 기준으로 함

(예: 기술이전 계약은 2024년도에 이뤄지고, 이에 따른 수입료는 2025년도에 입금된 경우, 건수는 2024년도로 귀속되고 수입료는 2025년도로 귀속됨)

- 수입료는 현금 입금만을 대상으로 함
- ※ 어음, 주식, 현물 등은 현금으로 전환되어 조사연도에 입금된 금액에 한함

■ 참고사항

-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5월(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연구재단)

【공시내용】 : 2025년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5. 1. 1. ~ 2025. 12. 31.)

(단위: 건)

기준연도	국내특허		해외특허	
	출원	등록	출원	등록

■ 작성지침

【작성대상】

- 학교법인이나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된 건에 한함(개인 명의로는 제외)
 - ※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은 입력 대상이 아님
 - ※ 산업재산권 번호의 앞 두 자리는 권리 유형을 나타내며, '10'은 '특허', '20'은 '실용신안', '30'은 '디자인', '40~45' 및 '47'은 상표를 의미함
- 출원 및 등록된 이후에 거절 또는 취하, 양도, 이전(매매), 포기 등의 경우에도 일단 대학명의 특허가 출원되거나 등록이 된 경우 모두 포함
- 본교와 분교가 나뉜 경우는 산학협력단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함. 즉,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존재할 경우 본교와 분교를 나누어 작성하며, 산학협력단이 공동인 경우는 본교와 분교를 합해서 작성해야 함

【국내특허】 : 국내출원은 특허청이 발행한 공식서류(출원번호통지서 등) 또는 특허공보의 출원일이 자료기준일에 포함되는 경우이며, 등록은 특허청이 발행한 공식 서류(특허증 등) 또는 특허공보의 등록일이 자료기준일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함

【해외특허】 : 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는 개별 국가건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동일 기술이 다수의 국가로 출원·등록된 경우, 출원·등록된 번호를 기준으로 번호 1개당 특허 1건으로 산출

(예: 2024년에 출원한 PCT 특허(번호: PCT/KR2024/000291)가 2025년에 중국으로 국내단계진입(번호: 20250019387.9)하였다면, PCT 출원일자와 중국의 국내단계진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4년에 PCT 1건, 2025년에 중국 출원 1건으로 산출)

■ 참고사항

-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2-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12-하-1. 교원·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12-하-1-(1)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5월(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연구재단)

【공시내용】 : 대학의 교원창업 현황 및 교원 창업규정 등 교원창업 지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교원 창업 현황) 2025. 1. 1. ~ 2025. 12. 31., (교원 창업규정) 2026. 4. 1.)

(단위: 명, 원, 개월)

창업자 수	교원 창업 현황					교원 휴·겸직 승인 현황	교원 창업지원 현황			
	창업기업수		창업기업 고용인원 수	창업기업 매출액 (원)	창업기업 자본금 (원)		교원 창업규정			
	교내	교외					휴직 최소 승인기간 (개월)	휴직 연장 승인기간 (개월)	겸직 최소 승인기간 (개월)	겸직 연장 승인기간 (개월)

■ 작성지침

【창업자수】 : 창업을 위해 휴·겸직 승인을 받은 교원 중 2025. 1. 1. ~ 2025. 12. 31. 동안 창업한 교원의 수(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창업 교원 포함)

【창업기업수】 : 【창업자수】의 창업자가 2025. 1. 1. ~ 2025. 12. 31. 동안 설립한 기업수. 교내는 학교의 시설에 주소지(사업자등록증 기준)를 둔 기업수를 기재

【창업기업 고용인원 수】 : 2025. 12. 31. 기준 종업원 수로 창업자를 제외하고 기재. 고용기간은 상관없으나, 4대 보험 가입을 증빙할 수 있는 종업원으로 한정

【창업기업 매출액】 : 2025. 1. 1. ~ 2025. 12. 31.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

【창업기업 자본금】 : 창업기업의 자본금 총액을 창업일자 기준으로 작성

【교원 휴겸직 승인 현황】 : 창업을 위해 2025. 1. 1. ~ 2025. 12. 31. 동안 휴·겸직 승인을 받은 교원수

【교원 창업규정】 : 해당 대학에서 규정한 교원창업 휴·겸직의 세부사항

■ 참고사항

-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2-하-1-(2)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5월(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연구재단)

【공시내용】 : 학생창업 현황 및 공간, 지원액, 인력 등 학생창업 지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학생 창업 현황) 2025. 1. 1. ~ 2025. 12. 31., (전용공간 및 창업 전담인력) 2026. 4. 1. 기준, (지원액) 2025년 결산)

(단위: 명, m², 원)

창업자 수	학생 창업 현황					학생 창업 지원 현황				
	창업기업 수		창업기업 고용인원 수	창업기업 매출액 (원)	창업기업 자본금 (원)	전용공간 (m ²)	지원액(원)		창업 전담인력	
	교내	교외					교비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교원 수	직원 수

■ 작성지침

【창업자수】 : 2025. 4. 1. 기준 재적 학생, 2024년 8월 및 2025년 2월 졸업자 중 2025. 1. 1. ~ 2025. 12. 31. 동안 창업한 대학(원)생의 수(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창업자 포함)

【창업기업수】 : 【창업자수】의 창업자가 해당 기간 동안 창업한 기업수. 교내는 학교의 시설에 주소지(사업자등록증 기준)를 둔 기업수를 기재

【창업기업 고용인원 수】 : 2025. 12. 31. 기준 종업원 수로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를 제외하고 기재. 고용기간은 상관없으나, 4대 보험 가입을 증빙할 수 있는 종업원으로 한정

【창업기업 매출액】 : 2025. 1. 1. ~ 2025. 12. 31.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

【창업기업 자본금】 : 창업기업의 자본금 총액을 창업일자 기준으로 작성

【전용공간】 : 대학(원)생 창업을 위한 창업동아리방, 예비창업전용공간, 대학(원)생 창업기업공간(실험실 내 창업은 제외)을 위해 대학에서 지원·제공한 면적(창업자가 대학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면적은 제외)

- 창업동아리방: 대학에 등록을 하고 지도교수가 있으면서 전용공간 또는 대학의 지원금을 받는 동아리에 제공된 공간
- 예비창업 전용공간: 대학(원)생들이 창업관련 아이디어 공유 및 실험 등을 위해 일과 중에 창업준비 대학(원)생에게 제공된 전용공간
- 대학(원)생 창업 기업공간: 창업한 대학(원)생들을 위해 제공된 공간(창업보육센터 등)

【지원액】 :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대학(원)생의 창업동아리 운영비, 대학(원)생 창업기업 준비금, 창업강좌 운영, 워크숍 등 대학에서 지원한 창업 관련 지원액

- 교비: 대학 교비 및 산학협력단회계를 통해 지원한 창업지원금 합계(결산기준 금액 기재)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대학 외부(정부, 지자체)의 창업지원금 합계(결산기준 금액 기재)

【전담인력】

- 교원수: 전임교원의 신분으로 인사발령(총장 명의)을 받아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교원 수
※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별도의 창업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교육·지원 포함
- 직원수: 창업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수
※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별도의 창업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교육·지원 포함

■ 참고사항

-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2-하-2. 창업교육 지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5월(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연구재단)

【공시내용】 :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창업교육센터 등 2025년 대학의 창업교육 지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창업교육 지원 현황) 2025. 3. 1. ~ 2026. 2월 말일, (창업교육 교직원 수) 2026. 4. 1.)

(단위: 건, 명, 원)

창업강좌 현황								비정규교과(창업활동) 현황					
교양과목				전공과목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이론형 과목		실습형 과목		이론형 과목		실습형 과목							
강좌수	이수자 수	강좌수	이수자 수	강좌수	이수자 수	강좌수	이수자 수	동아리 수	참여인원 수	개최횟수	참여인원 수	개최횟수	참여인원 수
창업교육 전담 조직 현황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현황									
교직원 수	운영비(원)			창업 휴학제 시행여부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시행여부								
	교비	사업비											

■ 작성지침

【창업강좌 현황】 :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과목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분반은 별개의 강좌로 입력)

※ 창업 관련 키워드 예시 :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 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 등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등 제시된 키워드 이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입력)
(예: 과목명 ‘마케팅’은 창업강좌로 인정되지 않으나, 과목명 ‘창업마케팅’은 창업강좌로 인정)

※ 분반은 각각의 강좌로 입력

(예: ‘사업계획서 작성법’ 과목이 분반 3개로 진행된 경우, 강좌수에 1이 아닌 3으로 입력)

【교양과목】 :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창업강좌

【전공과목】 :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창업강좌

【이론형과목】 : 강좌내용의 50% 이상이 창업환경이해, 기업가정신제고, 창업기회탐색, 창업경영이해, 창업분야특화 등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좌

【실습형과목】 : 강좌내용의 50% 이상이 사업계획서 작성, R&D·시제품제작, 창업시뮬레이션, 창업경진대회 참가, 창업·벤처 기업(박람회·전시회) 현장견학, 창업·벤처, 기업 인턴십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된 강좌

- 【창업동아리】 : 대학생이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로서 대학(창업교육 전담조직 포함)에 등록을 하고 지도교수(전임, 비전임 포함)가 있으면서 참여인원 수가 2인(대표 포함) 이상인 동아리수, 동아리 참여인원수
- 【창업 경진대회】 :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창업자원 발굴을 목적으로 대학이 주관(총장명의로 시상 포함)하여 일정한 공모·평가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는 대회의 개최횟수, 경진대회 참여인원수(대학 단독개최 및 외부기관과의 공동개최 창업경진 대회를 모두 포함하며,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재)
- 【창업캠프 개최】 : 창업아이디어 발굴, 비즈니스플랜작성 등 창업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1일 프로그램도 포함) 동안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위주의 교육의 개최횟수, 창업캠프 참여인원수(단독개최 및 외부기관과의 공동개최 창업캠프를 모두 포함 하며,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재)
- 【창업교육 전담 조직 현황 교직원수】 : 전임교원의 신분으로 창업교육 전담조직에 인사발령(총장 명의로)을 받아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교원과 창업교육 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 중 창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거나 창업 관련 업무를 타 업무와 겸직하는 직원의 수(단위: 명)
- 【창업교육 전담 조직 현황 운영비-교비】 : 창업교육 전담조직 운영비 중 교비지원 금액을 결산 기준으로 기재(단위: 원)
- 【창업교육 전담 조직 현황 운영비-외부지원 사업비】 : 창업교육 전담조직 운영비 중 외부지원 사업비 금액을 결산 기준으로 기재(단위: 원)
- 【창업휴학제 시행여부】 : 창업휴학제 시행에 대한 규정이 학칙에 명시된 경우 ‘O’ 기재, 아니면 ‘x’로 기재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시행여부】 : ‘창업실습’ 또는 ‘창업현장실습’ 시행에 규정이 학칙에 명시된 경우 ‘O’ 기재, 아니면 ‘x’로 기재

■ 참고사항

- 창업교육 지원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2021년부터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에서 대학원을 추가로 조사하지만 대학(학부)만 연계

12-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5월(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연구재단)

【공시내용】 : 기술지주회사 설립여부, 산학협력단 출자액, 자회사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2026. 4. 1., (매출액) 2025. 1. 1. ~ 2025. 12. 31. 결산)

(단위: 원, 명)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기술지주회사(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자회사				입지 현황
상호명	설립 일자	지주회사 자본금			산학협력단 출자액	지주회사 매출액			지주회사 고용인력	자회사 수	자회사 총 고용인력	자회사 자본금 총액	자회사 총매출액	
		총액	현금	현물		총 매출액	지분매각 수익	배당 수익						

■ 검증사항

- 자본금, 출자액, 매출액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 회계와 일치

■ 작성지침

【상호명】 : 기술지주회사(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상호명

【설립일자】 : 설립 등기일자

【지주회사 자본금】 : 기준일 현재 기술지주회사(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자본금 총액/현금/현물

【산학협력단 출자액】 : 기준일 현재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대표 대학이 취합하여 작성

【지주회사 매출액】 : 기술지주회사(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총매출액/지분매각수익/배당수익

【지주회사 고용인력】 : 기준일 현재 기술지주회사(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고용한 인원수

【자회사수】 : 자료기준일까지 설립된 모든 자회사수

【자회사 총 고용인력】 : 기준일 현재 자회사가 고용한 인원 수

【자회사 자본금 총액】 : 기준일 현재 자회사가 출자한 자본금 총액으로서 창업자본(창업자 개인의 자체조달 자기 자본금)과 학교지원, 기타지원(엔젤펀드 등) 등으로 구분되는 자본금의 총액

【자회사 총 매출액】 : 해당 조사연도 1년간 개별 자회사의 매출액을 합한 총 금액

【입지현황】 : 기준일 현재 기술지주회사(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소재를 교내 또는 외부 중 택일

■ 참고사항

-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적용을 받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도 조사대상에 포함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다르나 신기술 사업화를 위하여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설립하는 등 사업내용은 동일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자료 구입비 결산 현황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자료 구입비 결산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6~8월(대학도서관 통계)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시내용】 : 2026년 장서 보유, 직원 현황 및 2025년 도서관 결산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재학생 수) 2025. 4. 1., (장서) 2026. 3. 1., (결산) 2025년 결산, (직원수) 2026. 4. 1.)

(단위: 명, 권, 원, %)

기준연도	재학생 수 (A)	도서자료			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수		비도서자료 (종)	전자자료			인쇄형 연속간행물					
		계 (B)	국내서 (책)	국외서 (책)	증가 (책)	폐기 (책)		계	국내 (패키지)	국외 (패키지)	계	국내 (종)	국외 (종)			
대학 총결산 (C)	자료구입비 (D)	학생 1인당 도서자료 수 (B/A)	대학 총결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D/C×100)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D/A)	도서관 직원 수									합계 (E+F)		
					정규직					비정규직						
					1급 정사 서	2급 정사 서	준사 서	미소 지자	소계 (E)	1급 정사 서	2급 정사 서	준사 서	미소 지자	소계 (F)		

※ 사이버대학의 경우, 동일법인의 도서관을 활용할 경우 동일법인 적용 내용을 비교란에 입력함(양식에는 재학생 수 및 대학 총결산만 입력함)

■ 작성지침

【재학생수】 : 2025. 4. 1. 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정원내+정원외)의 합

※ 통폐합대학의 경우, 통합대상 대학 재학생수도 포함

【도서자료-국내서】 : 국내에서 간행된 단행본, 연속간행물 제본, 학위논문 등 등록번호가 부여된 책 수를 기재. 단, 소장 개념의 국내 e-book 포함

【도서자료-국외서】 : 국내서를 제외한 등록번호가 부여된 책수를 기재(소장 개념의 국외 e-book 포함)

【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수】 : 대학도서관 도서자료의 연간 증가 책수와 연간 폐기 책수 기재(등록번호 기준)

【비도서자료】 : CD 또는 DVD(LD(레이저디스크) 포함), 테이프(오디오테이프 포함), 음반(악보자료 및 LP 디스크 포함),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필름 포함) 등

【전자자료】 : 전자저널, 웹DB와 같은 자료로써, 도서관에서 계약하여 현재 구독 중인 자료

※ 저널의 개별 종수가 아닌 구독 계약의 단위를 1개 패키지로 간주

【인쇄형 연속간행물】 : 2026. 3. 1. 기준 구독 중이거나 기증된 인쇄형 연속간행물의 종수를 기재

【대학 총결산】 : 2025년 회계연도 결산

- ① 국·공립대학: <8-가-2> 대학회계 세출 결산 합계
- ② 사립대: <8-바-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중 자금지출 총계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자료구입비】 : 도서자료,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구입을 포함한 순수 자료구입비 결산

【학생 1인당 도서자료수】 : (국내서 + 국외서) / 재학생수

【대학 총결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 (자료구입비 / 대학 총결산) × 100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 (자료구입비 / 재학생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

【직원 수】 : 2026. 4. 1. 기준 대학의 회계를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대학 및 대학원 소속이며, 도서관으로 발령받은 직원) 인원 수

【정규직】 : 기관의 통상근로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여 직원 수 입력(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비정규직】 : 학교 또는 도서관과 기간을 한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일제(全日制, 정규직 통상근로자 근무시간 기준)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수

• 비정규직 :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채용한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를 말함

【사서 자격 기준】 : 「도서관법 시행령」(2026. 1. 27. 개정) [별표4]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 요건 적용

※ 아래 지침은 자격 기준의 일부만 명시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1급 정사서】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등

【2급 정사서】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 전문대학은 제외)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함) 등

【준사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에서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함) 등

【미소지자】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혹은 준사서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자

■ 참고사항

- 장서 보유 및 도서관 결산 현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재학생 수는 2025년 <4-마> 재학생 현황 활용
-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 요건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4] 세부 내용을 모두 적용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6~7월(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연구재단)

【공시내용】 : 대학 부설 연구소 및 학술행사 개최건수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전임 유급 연구원) 2026. 4. 1., (학술행사 개최건수) 2025. 1. 1. ~ 2025. 12. 31.)

(단위: 명, 건)

기준연도	연구소명	학문 분야	전임 유급 연구원	학술행사 개최건수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기타	합계

■ 작성지침

【연구소명】 : 연구소의 명칭을 그대로 기재(예: 과학기술응용연구소의 경우, '과응연'이 아닌 '과학기술응용연구소')

※ 전임유급연구원 및 학술행사 개최건수가 없는 경우라도 입력

【학문 분야】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중 선택

【전임 유급 연구원】 : 2026. 4. 1. 기준 대학부설연구소에 소속된 전임 유급 연구원 수, '연구'를 위해 채용한 전임 연구원만 포함

※ 전임교원 및 행정직은 제외, 단 연구소 소속 전임교원(HK교수 등)은 포함

【학술행사개최-국제학술대회】 : 2025. 1. 1. ~ 2025. 12. 31. 기간에 부설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국내외에서 개최한 정기 또는 부정기 학술대회 건수를 기재(단, 발표자의 소속기관이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이상이어야 함)

【학술행사개최-국내학술대회】 : 2025. 1. 1. ~ 2025. 12. 31. 기간에 부설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국내에서 개최한 정기 또는 부정기 학술대회 건수를 기재

【학술행사개최-기타】 : 2025. 1. 1. ~ 2025. 12. 31. 기간에 부설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공식적인 대외 공고 후, 소규모 세미나,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술행사 건수를 기재 (국제·국내학술대회는 제외)

■ 참고사항

-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은 한국연구재단(KCI 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 14-가. 정관[PDF]
- 14-나. 법인의 임원 현황
- 14-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 14-마. 기숙사 현황
-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14-사. 직원 현황
-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PDF]
- 14-차. 강사 강의료
-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 14-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현황
- 14-파. 인권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 14-하. 안전관리 현황

14-가. 정관[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수시

【공시시기】 : 수시(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대학에서 정한 조직·활동 근본 규칙

【공시양식】 : 제목과 목차 및 최종 개정본의 시행일을 명시한 학교의 자체 양식(PDF 파일 형태)

■ 작성지침

【정관】 :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개정일】 : 정관 변경 사항 개정일(이사회 의결일, 승인일)

- ※ 정관 변경 사항은 이사회 의결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관부처(교육부 등) 승인일이 개정일 또는 시행일이 아님
- ※ 단, 국립대법인 및 특별법법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소관부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관부처 장의 인가받은 날을 개정일로 봄

【시행일】 : 정관 변경 사항 시행일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개정된 정관을 공시하는 경우 이전자료 삭제 후 '최종자료(최신 개정본)'만 업로드 후 공시

14-나. 법인의 임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수시

【공시시기】 : 수시(임원 현황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대학의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기준연도	구분	성명	성별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이사장				
	이사				
	감사				

■ 작성지침

【현직 및 주요경력】 : 대표적인 주요 경력 3가지

【임기】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임원 현황 변동일은 소관부처로부터 승인받은 관련 공문(임원 취임 승인 통보 등)에 명시된 임원 임기 개시일

※ 임원 임기 개시일이 소관부처 승인 공문 수신일보다 이전인 경우 공문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 임기 만료 임원의 임원 현황 변동일은 임기 만료 익일

※ 기간 연장 임원에 대해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연장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우선 삭제 후 기간 연장 시작일 기준 재공시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국·공·사립대학 교육시설 현황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2026년 교지(校地) 확보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 4. 1.)

(단위 : m²)

기준연도	토지 전체면적(m ²)	교지 보유면적(m ²)	부속토지(m ²)	미사용토지(m ²)

※ 사이버대학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토지 전체면적】 :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라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 및 미결정 토지)

※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제외

【교지 보유면적】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학이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농장, 학술림, 사육장, 목장, 양식장, 어장, 약초원 등 실습지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는 제외)

① 캠퍼스 교지경계선 내에 위치함

② 교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20km 이내에 위치함

※ 이 경우, 분리된 교지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모두 20km 이내여야 함

③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 위치함

④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교지 밖에 설치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상 ‘학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지를 교지로 인정

【부속토지】 : 교육용 건물 중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에 따른 부속시설이 설치된 토지

【미사용토지】 : 교육·연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 참고사항

- 교지(校地) 확보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국·공·사립대학 교육시설 현황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2026년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2026. 4. 1.,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2026. 3. 1.)

(단위: m², %)

기준 연도	기준면적(m ²)		건축물 전체 보유면적(m ²)					교사시설확보율(%)	
			교사확보율 산정 면적			그 외			
	입학정원 기준 (A)	재학생 기준 (B)	기본시설 (C)	지원시설 (D)	연구시설 (E)	부속시설	기타시설	입학정원기준 (C+D+E)/A×100	재학생기준 (C+D+E)/B×100

■ 작성지침

【기준면적】 : 「대학설립·운영 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교사 기준면적

○ 관련법규 참조

- 「대학설립·운영 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3]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별표 2]
-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3]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교사 기준면적 산정 시 2026. 4. 1. 기준 재학생 수가 입학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에 계열별 재학생 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입학정원기준】 : 정원내 학부(계열별 학과 주·야별 입학정원 중 최댓값 × 수업연한(2년, 3년, 4년, 5년 이상) + 정원내 대학원(주간 입학정원 × 수업연한)

※ 계열 구분이 어려운 학과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과에 신입학한 총 정원을 계열이 최초로 구분되는 학년의 4.1. 기준 정원내 재학생 비율로 안분(소수점은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사이버대학 시설정원 입력 시 유의사항

- 당해연도 교육부에서 허가받은 입학정원(수업연한 곱하지 않음)
- 대학원이 설치된 사이버대학은 대학원 입학정원의 1.5배수

〈대학, 전문대학〉

※ 학생정원 산정 시, '결손인원' 또는 '편입학여석' 활용을 통한 '첨단학과 증원 인원'(총 정원범위 내 자체조정, 또는 국립대 증원을 통한 첨단학과 정원 증원분은 입학정원에 포함)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 제외해야 하는 첨단학과 결손인원/편입학여석 활용분

- 결손인원 활용 방식: 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위해 활용한 결손인원에서 타 학과 누적 감축정원을 뺀 값
- 편입학 여석 활용 방식: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증원한 첨단학과 정원

* 결손인원 활용과 편입학 여석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결손인원 활용분과 편입학 여석 활용분을 합산

〈대학원〉

- ※ 학생정원 산정 시, '결손인원' 활용을 통한 '첨단학과 증원 인원'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 ※ 제외해야 하는 첨단학과 결손인원
 - 타 학과 정원 감축형: 첨단학과 정원에서 타 학과 누적 감축정원을 뺀 값(즉, 미감축 정원)
 - 타 학과 정원 유지형: 첨단학과 정원
 - * 타 학과 정원 감축형과 유지형이 혼재하는 경우, 각각의 활용분을 합산

〈대학원대학〉

- ※ 학생정원 산정 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참고

- 2005. 10. 25 이전 설립 대학 중 본교·분교 및 캠퍼스 상관없이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100명)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4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 2005. 10. 25 이후 설립 대학 중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000명(대학원대학 200명)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1,000명(대학원대학 2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재학생기준】: 정원내·외(계열별, 학년별, 주·야별 최댓값) + 정원내·외 대학원(주간 재학생)

- ※ 제외: 계약학과 재학생,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
- ※ 「고등교육법」 제23조5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재학생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각종학교 포함)의 교사기준면적

(단위: m²)

구분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 연도를 경과하지 않은 대학	12	17	20
	운영 중인 대학	12	14			

-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간호학과 4년제 지정을 받은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 학생정원만큼은 4년제 대학의 기준을 적용)
- ※ 기술대학의 경우,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사회실무계 12m², 자연공학계 17m²으로 준용한다.

○ 사이버대학의 교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의한 사이버대학의 교사

구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교사 범위	대학 본부 및 행정실, 교수 연구실, 강의실, PC실습실, 세미나실, 콘텐츠 개발실	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 시스템 운영실, 디지털 도서관
기준면적	○ 입학정원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 - 1,000명 미만: 990m ²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1,485m ² - 2,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1,980m ² - 3,000명 이상: 2,475m ²	

- ※ 기준면적은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 ※ 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은 위 기준면적의 7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유면적】

-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보유면적: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에 의한 교사시설
 1.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교지경계선 내 교사
 2. 교지경계선 “20km 이내 이거나 동일 시·군·구 내의 학생 기숙사”는 해당 부지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학생기숙사로 이용하면서, 학교 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는 교사시설로 인정하고, 교지경계선 “20km 밖이거나 타 시·군·구의 학생기숙사”는 해당 부지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학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교사시설로 인정
 3. 교지경계선 밖 “연구시설”로서 해당 부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교사시설로 인정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교사시설 구분

교사시설	구분		
교육기본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도서관·체육관·교수연구실·행정실·학생회관·대학본부·정보전산원·산학협력단·학교기업의 시설 및 그 부대 시설과 그 밖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		
지원시설	강당·실습공장·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연구와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		
부속시설	공동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대학에 부속한 일체의 시설로서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부속학교 등	
	농학계열	농학에 관한 학과 등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기공장
		축산학에 관한 학과 등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임학에 관한 학과 등	학술림·임산기공장
	공학계열	공학에 관한 학과 등	공장
		항공학에 관한 학과 등	항공기·격납고
	수산·해양계열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 등	실습선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등	수산기공장
		증식학에 관한 학과 등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기관학에 관한 학과 등	기관공장
	약학계열	약학에 관한 학과 등	약초원·실습약국
		제약학에 관한 학과 등	제약실습공장
의학계열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 등	부속병원	
	수의학에 관한 학과 등	동물병원	

비고: 대학 또는 학과, 학부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사이버대학 보유면적
 1. 사이버대학설립인가 받은 위치의 교사(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2. 사이버대학이 인가받은 위치 외에 “학습관”으로 인가된 경우 교사시설로 인정(단, “학습관”이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한함)

【교사(校舍)시설 확보율(%)】

-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교사(校舍)시설확보율(%) : [(기본시설 + 지원시설 + 연구시설) / 기준면적] × 100
- 사이버대학 교사(校舍)시설확보율(%) : [(기본시설 + 지원시설) / 기준면적] × 100

■ 참고사항

-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마. 기숙사 현황

14-마-1. 기숙사 수용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국·공·사립대학 교육시설 현황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2026년 기숙사 수용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 4. 1.)

(단위: 명, %, 실, 원)

기준 연도	재학생 수 (A)	총 실수	수용 가능 인원 (B)	실제 수용 인원			기숙사 수용률 (C=B/A × 100)	기숙사 지원자수 (D)			입사 경쟁률 (E=D/B)	의무식 여부	구분	건물명	준공 연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동일 지역	타 지역	합계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비고			
실수	식비	기숙사비	실수	식비	기숙사비	실수	식비	기숙사비	실수	식비	기숙사비				

※ 원격대학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재학생수】 : 2026. 4. 1. 기준 학부(주간+야간) 및 대학원(주간) 재학생수

※ 제외: 계약학과 재학생,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

※ 「고등교육법」 제23조5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재학생에 포함시킬 수 없음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기 입력한 '재학생 기준 시설정원' 자료를 토대로 연계

【총실수】 : 재학생이 이용 가능한 기숙사별 총 실수(총장·교직원·일반인 등이 사용하는 기숙사는 제외)를 기재하며, 인실별 실수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수용 가능 인원】 : 2026. 4. 1. 기준 학교 밖 행복기숙사·대학생 연합생활관·창업지원형 기숙사·글로벌 교류센터, 청년주택(개봉동, 독산동) 수용인원(학교 추천입사생에 한함) 및 학교 기숙사 건물대장에 기재된 수용 가능 인원 수(총장·교직원·일반인 등이 사용하는 기숙사 수용분은 제외)

※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행복기숙사(사립), 행복기숙사(연합), 청년주택(개봉동, 독산동), 글로벌교류센터 및 한국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대학생연합생활관, 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생 중 대학에서 기숙사비를 일부 보조하는 대학 추천 분 학생에 한하여 기숙사 수용인원에 포함(단, 글로벌교류센터 사생의 경우 시설 정원 산정 시 재학생으로 인정되지 않는 학생(단기어학연수생 등)은 제외)

【실제 수용 인원】 : 2026. 4. 1. 기준 학위과정/비학위과정의 내국인/외국인 수 기재

【기숙사 수용률(%)】 : (수용 가능 인원 / 재학생수) × 100

【기숙사 지원자수】 : 기숙사 지원자수(동일지역, 타지역) 기재

※ 구분기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 기숙사 지방 시 순위별로 지원(중복지원)이 가능할 경우, 1지방의 인원만 산정하여 작성

【입사 경쟁률】 : 기숙사 지원자수 / 수용 가능 인원

【의무식 여부】 : 1일 기준, 고정적 식수(1회 이상) 운영 시 의무식에 해당

【구분】 : 기숙사 유형 구분(직영(구내)/직영(구외)/임차/민자(BTL)/민자(BTO)/행복기숙사)

※ 직영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위치에 따라 구내와 구외로 구분

※ 민자기숙사의 경우 운영방식에 따라 BTL, BTO로 구분

※ 행복기숙사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장학재단이 운영·지원하는 기숙사가 해당

【건물명】 : 기숙사의 실제 사용 명칭 입력

【준공연도】 : 사용승인 또는 입사사용승인 연도

【실수】 : 개별 기숙사의 인실별 기숙사 실수 기재

【식비】 : 1일 의무 1식으로 산출된 1인당 기숙사 식비 현황

※ 입력 대상: 의무식 여부 'O' 표시된 기숙사

※ 식비: 4월 1일 기준 기숙사 의무식 식비 1일 1식 기준 식비

* 의무 1식으로 산출(의무 2식일 경우 1일 식비/2, 의무 3식일 경우 1일 식비/3으로 재계산)

※ 식비가 유형에 따라 다른 경우 4월 1일 기준 가장 많은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식비를 입력

【기숙사비】 : 30일간의 1인당 기숙사비를 입력

※ 30일간 기숙사비 산출식: A건물 1인당 한 학기 기숙사비 / 이용기간* × 30일

* 이용 기간: 입실일부터 퇴실일까지의 기간

※ 한 학기당 기숙사비 중 관리비는 식비 및 보증금을 제외한 관리비(일반관리비, 자치회비, 건강검진비 등)만 포함

※ 동일한 인실 내 기숙사비가 타입별 이용기간, 수용인원에 따라 다른 경우 관리비를 가중평균값으로 입력

예시

구분(2인실)	한학기 기숙사비 (A)	이용기간 (B)	수용인원 (C)	한달 기숙사비 총수입 $\{(A/B) \times 30 \times C\}$	가중평균 한달 기숙사비
A타입	720,000원	120일	500명	90,000,000원	176,700원
B타입	650,000원	113일	400명	69,027,000원	

· 한달 기숙사비 산출식: $\{(720,000 \text{원} / 120 \text{일}) \times 30 \text{일}\} \times 500 \text{명} + \{(650,000 \text{원} / 113 \text{일}) \times 30 \text{일}\} \times 400 \text{명} / (500 \text{명} + 400 \text{명}) \approx 176,700 \text{원}$

【비고】 : 특정대상을 위한 전용 기숙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내용 기재(예: 외국인 기숙사, 대학원생 기숙사)

■ 참고사항

- 기숙사 수용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마-2. 기숙사 운영 결과

14-마-2-(1). 기숙사 운영 결과(국·공립대_민자기숙사)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6월(국·공·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결과 및 납부제도 현황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2025년 민자기숙사 운영(결산)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기준 연도	수익						비용						비고		
	지원금수입		기숙사비 수익	부속시설 초과수익	기타 수익	소계 (A)	시설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학생 경비		기타 비용	소계 (B)
	국고	학교							운영 관리비	수선 유지비	협약 외 운영비				

※ 원격대학, 특별법법인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작성대상】 : 민자기숙사(BTL)

【작성기준】 : 학교회계

【지원금수입(국고)】 : 민자기숙사 국고지원금

【지원금수입(학교)】 : 민자기숙사 학교부담금

【기숙사비 수익】 : 기숙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기숙사비 수입(중도 퇴실 및 포기자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금 등은 기숙사비 수익에서 차감 반영)

【부속시설 초과수익】 : 부속시설 운영 순이익이 협약상 추정 운영 순이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 중 학교로 분배된 수익

【기타수익】 : 상기 수입 내역 이 외에 발생한 기타 기숙사 운영 외 수익(예금이자, 잡수익 등)

【시설임차료】 : SPC에 지급하는 연간 금액

【인건비】 : 기숙사 운영관련 직원에게 지출하는 인건비성 보수 일체(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 : SPC에 지급하는 연간 운영비(운영관리비 및 수선유지비, SPC 협약 외 운영비*)

* 협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학기간 운영 등으로 SPC에 추가로 지급되는 운영비

【학생경비】 : 보조금, 장학금 등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비용

※ 기존의 반환금(중도 퇴실 및 포기자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금 등)은 기숙사비 수익에서 차감 반영

【기타비용】 : 상기 비용 내역 이 외에 발생한 기타 기숙사 운영 외 비용(지급이자, 잡비용 등)

【비고】 : 기타수입/기타비용 내역 등 작성

■ 참고사항

- 기숙사 운영 결과(국·공립대_민자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마-2-(2) 기숙사 운영 결과(사립대_행복/민자기숙사)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6월(국·공·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결과 및 납부제도 현황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2025년 행복기숙사 및 민자기숙사 운영(결산)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 원)

기준 연도	기숙사 형태	수익				비용										비고	
		기숙사비 수익	임대료 수익	기타 수익	소계 (A)	인건비	위탁 관리비	공공 요금 및 제세	수선비	감가 상각비	일반 수용비	학생 경비	학교 회계 전출금	기타 비용	소계 (B)		
	행복																
	민자																

※ 원격대학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작성대상】 : 사립대 행복기숙사 및 민자기숙사(BTO/BTL)

【작성기준】 : SPC회계 기준으로 행복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행복기숙사(사립), 글로벌교류센터가 해당)와 민자기숙사를 구분하여 작성

【기숙사비 수익】 : 기숙사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입(중도 퇴실 및 포기자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금 등은 기숙사비 수익에서 차감 반영)

【임대료 수익】 : 기숙사 내 시설 임대료에 따른 업체로부터 받는 수입

【기타수익】 : 상기 수입 내역 이 외에 발생한 기타 기숙사 운영 외 수익(예금이자, 잡수익 등)

【인건비】 : 기숙사 운영관련 직원에게 지출하는 인건비성 보수 일체(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위탁관리비】 : 기숙사 운영을 위해 용역을 위탁한 경우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관리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 수도광열비, 통신비, 각종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

【수선비】 : 기숙사 건물,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의 수선 및 유지를 위해 당해 지출한 일반 수선비용과 대수선을 위해 당해 적립하는 금액

【감가상각비】 : 기숙사 건물, 구축물, 비품 등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감가상각액

【일반수용비】 :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등에 지출하는 비용

【학생경비】 : 보조금, 장학금 등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비용

※ 기존의 반환금(중도 퇴실 및 포기자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금 등)은 기숙사비 수익에서 차감 반영

【학교회계 전출금】 : 학생경비 외에 학교로 보내는 비용

【기타비용】 : 상기 비용 내역 이 외에 발생한 기타 기숙사 운영 외 비용(지급이자, 잡비용 등)

【비고】 : 학교회계 전출금 내역 및 기타수입/기타비용 내역 등 작성

14. 그 밖에 교육연구비
학교운영성채 등에 관한 사항

■ 참고사항

- 기숙사 운영 결과(사립대_행복/민자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마-2-(3) 기숙사 운영 결과(국·공립대_직영기숙사)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6월(국·공·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결과 및 납부제도 현황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2025년 직영기숙사 운영(결산)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기준 연도	수익				비용									비고	
	기숙사비 수익	임대료 수익	기타 수익	소계 (A)	인건비	위탁 관리비	공공 요금 및 제세	수선비	감가 상각비	일반 수용비	학생 경비	기타 비용	소계 (B)		

※ 원격대학, 특별법법인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작성대상】 : 국·공립대학 직영기숙사

【작성기준】 : 학교회계

【기숙사비 수익】 : 기숙사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입(중도 퇴실 및 포기자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금 등은 기숙사비 수익에서 차감 반영)

【임대료 수익】 : 기숙사 내 시설 임대료에 따른 업체로부터 받는 수입

【기타수익】 : 상기 수입 내역 이 외에 발생한 기타 기숙사 운영 외 수익(예금이자, 잡수익 등)

【인건비】 : 기숙사 운영 관련 직원에게 지출하는 인건비성 보수 일체(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포함)

【위탁관리비】 : 기숙사 운영을 위해 용역을 위탁한 경우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관리비용(복합건물 또는 학교 일괄 계약의 경우에는 기숙사분 분리하여 산출)

【공공요금 및 제세】 : 수도광열비, 통신비, 각종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복합건물 또는 학교 일괄 계약의 경우에는 기숙사 분 분리하여 산출)

【수선비】 : 기숙사 건물,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의 수선 및 유지를 위해 당해 지출한 일반 수선비용과 대수선을 위해 당해 적립하는 금액

【감가상각비】 : 기숙사 건물, 구축물, 비품 등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감가상각액

【일반수용비】 :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등에 지출하는 비용

【학생경비】 : 보조금, 장학금 등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비용

※ 기존의 반환금(중도 퇴실 및 포기자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금 등)은 기숙사비 수익에서 차감 반영

【기타비용】 : 상기 비용 내역 이 외에 발생한 기타 기숙사 운영 외 비용(지급이자, 잡비용 등)

【비고】 : 기타수입/기타비용 내역 등 작성

■ 참고사항

- 기숙사 운영 결과(국·공립대_직영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마-2-(4) 기숙사 운영 결과(사립대_직영기숙사)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6월(국·공·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결과 및 납부제도 현황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2025년 직영기숙사 운영(결산)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기준연도	수익				비용									비고
	기숙사비 수익	임대료 수익	기타 수익	소계 (A)	인건비	위탁 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선비	감가상각비	일반수용비	학생경비	기타비용	소계 (B)	

※ 원격대학, 특별법법인인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작성대상】 : 사립대 직영기숙사

【작성기준】 : 학교회계

【기숙사비 수익】 : 기숙사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입(중도 퇴실 및 포기자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금 등은 기숙사비 수익에서 차감 반영)

【임대료 수익】 : 기숙사 내 시설 임대료에 따른 업체로부터 받는 수입

【기타수익】 : 상기 수입 내역 이 외에 발생한 기타 기숙사 운영 외 수익(예금이자, 잡수익 등)

【인건비】 : 기숙사 운영 관련 직원에게 지출하는 인건비성 보수 일체(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등을 포함)

【위탁관리비】 : 기숙사 운영을 위해 용역을 위탁한 경우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관리비용(복합건물 또는 학교 일괄 계약의 경우에는 기숙사분 분리하여 산출)

【공공요금 및 제세】 : 수도광열비, 통신비, 각종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복합건물 또는 학교 일괄 계약의 경우에는 기숙사분 분리하여 산출)

【수선비】 : 기숙사 건물,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의 수선 및 유지를 위해 당해 지출한 일반 수선비용과 대수선을 위해 당해 적립하는 금액

【감가상각비】 : 기숙사 건물, 구축물, 비품 등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감가상각액

【일반수용비】 :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등에 지출하는 비용

【학생경비】 : 보조금, 장학금 등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비용

※ 기존의 반환금(중도 퇴실 및 포기자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금 등)은 기숙사비 수익에서 차감 반영

【기타비용】 : 상기 비용 내역 이 외에 발생한 기타 기숙사 운영 외 비용(지급이자, 잡비용 등)

【비고】 : 기타수입/기타비용 내역 등 작성

■ 참고사항

- 기숙사 운영 결과(사립대_직영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마-3.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6월(국·공·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결과 및 납부제도 현황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2026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6. 4. 1.)

기준연도	기숙사 형태	카드납부 실시 여부	현금분할납부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실시 여부	비고
			실시 여부	분할 횟수		
	직영/민자/행복					

※ 원격대학, 특별법법인인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기숙사 형태】 : 직영, 민자, 행복기숙사

- 직영기숙사: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건립하여 직접 관리·운영하는 기숙사
- 민자기숙사: 대학이 민간외부 자금을 통해 건립하여 특수목적법인(SPC)에 관리운영권을 위탁하거나 임대료를 보전하는 기숙사(BTO/BTL)
- 행복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사립) 및 글로벌 교류센터

【카드납부】 : 기숙사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형태로 실시/미실시로 구분하여 기재

【현금분할납부】 : 기숙사비를 한 학기당 현금으로 분할납부하는 형태로 실시/미실시 여부 및 분할 횟수를 기재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실시 여부를 실시/미실시로 구분하여 기재

【비고】 : 총 O동, 특이사항 작성(OO관은 현금분할납부 실시/미실시, 카드납부 실시/미실시)

■ 참고사항

-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14-바-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6월(사립대학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2026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2026. 4. 1.,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2026. 3. 1., (학교운영 경비 부담 내역) 2025년 결산)

(단위: 천원, %)

기준 연도	법인명	학교명	구분	확보기준액 (A)	보유액 (B)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 기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B/A)×100	학교운영 경비 부담 내역		
							수익금 (C)	부담액 (D)	부담률(%) (D/C)×100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중등이하						
			합계						

■ 작성지침

【확보기준액】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

- 대학: 학교회계 운영예산서 중 연간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합계로 하되, 300억원 이상
- 전문대학: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연간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합계로 하되, 200억 원 이상
- 대학원대학: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연간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합계로 하되, 100억 원 이상
- 사이버대학: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의 경우 기준액 =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 2로 하되, 35억원(전문 학사학위: 25억원) 이상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경우 기준액 = 등록금수입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 중등이하교: 기준액 = (운영수익총계 - 전입기부, 원조보조수입) / 2
- 기술대학: 연간 학교운영경비총액에 해당하는 가액
 -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제7항에 의거 운영 중인 대학(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전문 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의 경우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연간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 이상을 학교법인이 해당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봄
 - ※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5항에 의거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의 경우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연간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의 2.8% 이상을 학교법인이 해당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봄

- 국가가 지원하는 대학의 경우 기준액: 운영수익 총계 - 전입금수입 - 기부금수입 - 국고보조금
 -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의거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대학은 국가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8%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봄

【보유액】: 학교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의 평가액 합

- ※ 단, 수익사업체 장기차입금, 기본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 예금으로 확보하고 있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제외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보유액 / 확보기준액) × 100

【수익금】: 수익용 기본재산 총수입 - 제비용

- 총수입 = 법인일반회계로 관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입금액 + 수익사업회계로 관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입금액 중 법인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 제 비용 = 당해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

【부담액】: 당해연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교비회계로 전출한 금액

【부담률(%)】: (부담액 / 수익금) × 100

-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8조,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액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총 소득의 80%로 학교운영경비 수익금을 재산출

■ 참고사항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바-2.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5월(사립대학 결산 접수 및 집계)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내용】 : 2025년 회계연도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결산)

(단위: 원, %)

법인명	학교명	법정부담금 기준액 (A)	법정부담금 부담액 (B)	부담률(% (B/A×100)	비고

■ 작성지침

【법정부담금 기준액】 : 대학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내 교원법정부담금과 직원법정부담금의 합계액

【법정부담금 부담액】 : 대학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내 법정부담전입금

【부담률(%)】 : (부담액 / 기준액) × 100

■ 참고사항

-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 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본 내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에 근거하여 작성

14-사. 직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6년 대학 및 대학원 직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 4. 1.)

○ 국·공립대

(단위: 명)

기준연도	구분	특정직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기타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 특정직은 국·공립대만 해당

○ 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단위: 명)

기준연도	구분	특정직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기타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법인직원																
	자체직원																
	산학협력단직원																

* 특정직은 국·공립대만 해당, 산학협력단직원은 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만 해당

○ 사립대

(단위: 명)

기준연도	구분	총계	
		남	여
	교비회계		
	법인회계		
	산학협력단회계		

■ 작성지침

【직원 현황】 : 대학 소속 직원(산학협력단** 포함)은 입력하며, 법인, 병설 및 부설학교, 부속병원 및 의료원 소속 직원은 제외

* (기준) 학교법인 정관, 학교규칙 및 직제 규정, 산학협력단 직제 규정에 명시된 조직의 소속 직원

** 산학협력단 직원 중 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R&D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 설치·운영되는 사업단) 소속의 연구원 및 직원은 제외

※ 대학 소속 직원이라면 회계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입력대상이며, 외주용역 업체 직원은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대학 소속 직원이 될 수 없음

※ 본 대학 직원이면서 비전임교원인 경우 직원과 교원으로서 각각 중복하여 입력 가능

【특정직】 :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등 교육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교육직렬의 교육전문직 및 대학회계 예산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수(국·공립대학만 입력)

【일반직】 : 행정, 서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계열 직원수

【기술직】 : 일반직에 준하는 직급의 기술자격자 직원수

【별정직】 : 예비군 중대장(5급 또는 6급 상당), 기숙사생관리, 모필사 등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된 직원수

【기능직】 :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상기 직급 이외의 직원수

【고용직】 : 행정, 서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계열 직원으로 일반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직급 구분이 없는 직원수

【기타】 : 일용직 등의 직원수

■ 참고사항

- 직원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PDF]

14-자-1. 대학 자체평가 결과[PDF]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수시

【공시시기】 : 수시(자체평가 보고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당해연도에 확정된 대학 자체평가 결과

【공시양식】 : 제목과 목차 및 자체평가 완료일을 명시한 학교의 자체 양식(PDF 파일 형태)

■ 작성지침

【대학 자체평가 결과】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대학 자체평가 결과 공시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가 당해연도에 완료되는 경우 당해연도부터 공시

(예: 평가 분석 대상연도가 2025년인 자체평가 보고서 확정일이 2026. 6. 30. 경우, 2026년부터 공시)

※ 대학기본역량진단 제출 보고서는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분석·평정이 아니므로 대학 자체평가로 인정하지 않음

【확정일】 : 자체평가 보고서 확정일(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

※ 대학기관평가인증 제출 보고서로 해당 연도 자체평가 보고서를 갈음할 경우,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기관평가인증 제출 보고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참고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이하 “교육·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두어야 한다.

참고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조(평가 결과의 공시)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확정된 자체평가 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이전자료 삭제 후 '최신 자체평가 결과'만 업로드 후 공시

14-자-2.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수시

【공시시기】 : 수시(인증 기간 (갱신)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대학 기관 인증 평가 결과 및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은 프로그램(학문분야) 인증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기준연도	학교명	학과(부)명	인증 분야	인증프로그램명	인정기관	인증 유효 기한

■ 작성지침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에 근거하여 대학의 평가 인증 결과 공시

- ※ 인증 기간 (갱신)시작일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결과 통보받은 공문(평가인증 결과 통보 등)에 명시된 인증 기간 시작일
- ※ 갱신된 인증 현황 중 기한이 변경된 경우(시작일 변동 없는 기한 연장, 축소 등) 또는 인증 기간 (갱신)시작일이 결과 통보 공문 수신일보다 이전인 경우, 공문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 ※ 조건부인증으로 이의신청할 경우, 조건부인증 결과 통보받은 공문에 명시된 인증 기간 시작일 또는 공문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먼저 공시 후, 추후 인증 결과에 따라 수정 공시
- ※ 인증이 당해연도에 종료될 경우, 당해연도까지는 해당 인증 현황 공시(단, 차년도 공시가 시작되는 시점에 삭제)
(예 : 간호학 인증이 갱신 없이 2026. 6. 30. 종료될 경우, 2026년까지는 공시 유지. 2027년 공시부터 삭제)

【학교명】 : 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기관 인증을 획득한 학교명

【학과(부)명】 :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한 학과(부)명

- ※ 대학 기관 인증의 경우 음영처리됨

【인증 분야】 : 간호학, 건축학, 경영학, 공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보건의료정보관리학, 약학, 수의학, 기관 인증

【인증프로그램명】 : 간호학 학사학위, 건축학 학사 등 인정기관에서 획득한 교육과정 프로그램명

- ※ 대학 기관 인증의 경우 음영처리됨

【인정기관】 :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교육과정 및 기관 평가 인증기관

【인증 유효 기한】 : 기준일자가 포함된 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기관 인증의 유효 기한

참고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평가 등)

-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참고

-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회,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차. 강사 강의료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8월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2026년 강사 강의료 지급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년 1학기)

(단위: 원, 명, 시간, %)

기준연도	강사구분	구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원)	지급인원수	총 강의시간수	지급인원 비율(%)
		합계				

■ 작성지침

【강사구분】 : 강사

【강사】 : 「고등교육법」 제14조2, 제1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8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으로 2026년 1학기 기준, 대학소속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

- ①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2019.8.1.)에 따라 임용되어 1학기 기준 본교에 재직 중인 강사
- ②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 ③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
- ④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
 (예 1: 학부 소속의 강사 A가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모두 하는 경우, 학부 강의분은 학부에 입력하고 대학원 강의분은 대학원에 입력)
 (예 2: 대학원 소속의 강사 B가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모두 하는 경우, 학부 강의분은 학부에 입력하고 대학원 강의분은 대학원에 입력)
 ※ 외부(기업 등)에서 강의료가 지급(학교 회계를 통해 지급되지 않는 경우)되는 강사, 겸임, 초빙, 명예, 대우, 석좌교수 등은 포함하지 않음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원)】 : 2026년 1학기에 강의한 강의료 지급 기준 1인 1시간의 지급기준 단가

- ※ 원 단위 입력
- ※ 학교에서 책정한 단가 외에 추가 강의료(연구보조비, 수강인원수에 따른 수당, 외국어강의에 따른 수당 등), 또는 감면 강의료(특수강의는 50%만 지급, 2시간 수업 시 1시간 단가 지급 등)가 매월 지급되는 경우, 추가(감면) 강의료를 포함한 금액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로 입력하고 강사 강의료 차등 지급기준 내용을 【비고】란에 자세히 명기함(단, 교통비, 숙박비는 제외)
- ※ 한 강좌 안에서 이론과 실험(실습) 단가가 다를 경우, 각각의 단가로 나누어 입력

【구분】 : 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지급인원수, 총 강의시간수를 입력함

※ 단가별 주간·야간 구분이 없는 경우,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개설 학과의 학칙상 구분 및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입력

【지급인원수】 : 각 단가별 강사료를 받는 강사 인원수를 입력

※ 동일한 강사가 n개의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지급인원 수는 n명으로 입력(단가가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은 경우 모두 포함)

【총 강의시간수】 : 각 단가별 강사가 실제 1학기 중 담당하는 총 강의시간

【지급인원 비율(%)】 : (등급별 해당 지급인원 수 / 총 지급인원수의 합) × 100

예시

A대학은 강사 강의로 기본단가 외에도 수강인원에 따라 초과수당을 매월 지급함. 또한 실험과목의 경우는 기본단가의 50%만 지급함. 한 학기당 15주 강의 진행

〈강사별 담당과목 및 단가 현황〉

과목명	분반 코드	주/야간	학점	수업시수		주차	강사명	기본단가	초과(감면)수당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비고
				이론	실습						
현대인의생활문화	01	주간	2	2	0	15	김○○	50,000	15,000(101명 이상 강좌 30% 추가 지급)	65,000	동일한 강사가 N개의 강의를 하는 경우, 초과 강의로
현대인의생활문화	02	주간	2	2	0	15		50,000	0	50,000	
현대인의생활문화	03	주간	2	2	0	15		50,000	0	50,000	
과학교예술	01	주간	2	1	0	15	최○○ 주○○	50,000	0	50,000	팀티칭1(시간별)
				1	0	15		50,000	0	50,000	
미용문화사연구	01	주간	3	1	0	10 (1주~10주)	박○○ 서○○	60,000	0	60,000	팀티칭2(주차별)
				0	2	5 (11주~15주)		60,000	0	60,000	
기초물리학실험1	01	주간	3	2	0	15	이○○	50,000	0	50,000	이론과 실험(실습) 단가가 다른 경우, 감면 강의로
				0	2	15		50,000	-25,000(2시간 수업 시 1시간 단가 적용)	25,000	
물리학1	01	야간	2	2	0	15		55,000	0	55,000	

〈강사 강의로 입력 방법〉

구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지급인원 수	총 강의시간 수
주간	65,000	1(김○○ 1명)	30(2시간×15주×1명분)
주간	60,000	2(박○○ 1명+서○○ 1명)	20[(1시간×10주×1명)+(2시간×5주×1명)]
주간	50,000	5(김○○ 2명+최○○ 1명+주○○ 1명+이○○ 1명)	120[(2시간×15주×1명)+(2시간×15주×1명)+(1시간×15주×1명)+(1시간×15주×1명)+(2시간×15주×1명)]
주간	25,000	1(이○○ 1명)	30(2시간×15주×1명)
야간	55,000	1(이○○ 1명)	30(2시간×15주×1명)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8월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2026년 장애학생지원체제 및 운영 현황 공개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장애학생지원체제 현황) 2026. 4. 1., (장애이해프로그램 운영시간) 2025. 3. 1. ~ 2026. 2월 말일)

(단위: 명, 분)

기준 연도	구분	전체 재학생 수	장애 재학생 수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지적·자폐		기타		계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대학															
	대학원															
	계															

장애인 특별전형 유무 (O/X)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 수	특별지원 위원회 유무 (O/X)	장애학생 지원센터 유무 (O/X)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장애학생지원센터 외 지원인력			학칙 및 규정	장애이해 프로그램 운영시간 (분)	
				센터장	센터장 자격 (①~④ 중 선택)	전담	겸직	지원 부서명	전담	겸직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수		수혜 장애 학생수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여부 (O/X)	장애학생 지원 계획 [한글/워드]
일반교육 지원인력	전문교육 지원인력			

*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 검증사항

【전체 재학생수】 : ‘전체 재학생수’는 <4-라>, <4-마>의 재학생 총계와 일치해야 함

■ 작성지침

【전체 재학생수】 : 2026. 4. 1. 기준 정원내·외 재학생수(장애학생 포함, 휴학생 제외)

- ※ 대학원은 전체 대학원(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재학생수를 합산하여 입력
- ※ 통폐합대학의 경우, 통폐대상 대학 재학생 수도 포함

【장애 재학생수】 : 2026. 4. 1. 기준 대학에 재학 중인 정원내·외 장애 재학생수(휴학생 제외)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 종류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학생’으로 구분하여 입력(중복장애의 경우 주 장애 기준으로 작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정도’ 구분 참고

【장애인 특별전형 유무】 : 2026학년도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시행 유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4호 관련, 신·편입학 모두 포함)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 수】 : 2026학년도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입학등록자 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4호 관련, 신입학 및 편입학 포함)

【특별지원위원회 유무】 : 2026. 4. 1. 기준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유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유무】 : 2026. 4. 1. 기준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유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 2026. 4. 1. 기준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 현황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센터장 자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센터장이 갖추고 있는 자격(①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②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③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하나만 선택)

【장애학생지원센터 외 지원인력】 : 2026. 4. 1. 기준 장애학생 수가 9명 이하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직원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대학 중 센터 외 추가 지원 직원 현황

【학칙 및 규정】 : 2026. 4. 1. 기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해당 조항을 명기하고, 학칙 및 규정에 미규정 시 ‘해당 없음’으로 표기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장애이해프로그램 운영시간】 : 2025. 3. 1. ~ 2026. 2월 말일 기간 중 대학의 장이 이행한 교직원·보조인력·학생 등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시간 합계를 분 단위로 입력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수】 : 2026. 4. 1. 기준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자체 보조인력 인원 전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 일반 교육지원인력(대학생, 일반인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수혜장애학생수】 : 2026. 4. 1. 기준 교육지원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수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여부】 : 2026년 1학기 기준 장애 재학생 대상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의2) 수립 여부

【장애학생 지원 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2026년 장애학생 지원 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함

※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시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편의시설 구축 현황, 보조공학기기 구비 현황, 대학생활 지원 계획 등 포함

※ 장애학생 지원 계획은 문자를 소리 및 점자 등으로의 변환을 위해 편집 가능한 한글 또는 워드 파일로 공시해야함(PDF 파일은 이미지로 인식하여 변환 불가)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재학생 수는 2026년 <4-마> 재학생 현황 활용

14-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2월(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현황)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성평등가족부)

【공시내용】 : 2025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교육대상) 2025. 4. 1., (참여 인원) 2025. 1. 1. ~ 2025. 12. 31.)

(단위: 명, %)

기준 연도	구분	기관장 참석 여부 (O/X)	고위직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		
			교육 대상 (명)	참여 인원 (명)	참여율 (%)	교육 대상 (명)	참여 인원 (명)	참여율 (%)	교육 대상 (명)	참여 인원 (명)	참여율 (%)	교육 대상 (명)	참여 인원 (명)	참여율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작성지침

【성희롱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202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성평등가족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2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성평등가족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2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성평등가족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02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성평등가족부)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기관장 참석 여부(O/X)】 : 참석 여부를 O/X로 표시

※ 분교 및 캠퍼스의 경우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참석 여부를 표시

【고위직-교육대상】 : 2025. 4. 1. 기준 기관장을 제외한 대학에 재직 중인 전체 고위직 수

※ 기관장 외에 다음가는 등급(직급)으로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장까지 포함(대학내 부기관장(부총장), 실·처장 및 전임교원(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 단, 겸직일 경우 1명으로 인정

【고위직-참여인원】 : 교육대상 중 2025. 1. 1. ~ 2025. 12. 31. 동안 교육에 참여한 고위직 수

【교원-교육대상】 : 2025. 4. 1. 기준 기관장을 포함, 대학에 재직 중인 전체 교원 수

※ 총장,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입력

※ <6-가-1. 전체 교원대비 전임교원 현황> 을 준용하되 ① 휴직, 연수, 연구년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거나 ② 기타 교원(비전임교원) 중 대학 내에서 1회 이상 근무하지 않는 교원은 제외하고 총장은 포함

【교원-참여인원】 : 교육대상 중 2025. 1. 1. ~ 2025. 12. 31. 동안 교육에 참여한 교원 수

【직원 및 조교-교육대상】 : 2025. 4. 1. 기준 대학에 재직 중인 전체 직원 및 조교의 수

※ 대학교 소속 직원 입력

※ <14-사. 직원 현황>을 준용하되, 휴직, 연수, 연구년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제외하고, 공시되지 않는 조교·외주직원·사회복무요원 등은 포함

【직원 및 조교-참여인원】 : 교육대상 중 2025. 1. 1. ~ 2025. 12. 31. 동안 교육에 참여한 직원 및 조교의 수

【학생-교육대상】 : 2025. 4. 1. 기준 재학 중인 학생(학부 및 대학원)

※ 대학원은 전체 대학원(일반/전문/특수대학원) 재학생 수 포함

※ 통폐합대학의 경우, 통합대상 대학 재학생 수도 포함

【학생-참여인원】 : 교육대상 중 2025. 1. 1. ~ 2025. 12. 31. 동안 교육에 참여한 재학생

■ 참고사항

- 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은 성평등가족부(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자료 연계 활용
 - 2026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2025년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적 자료 연계
- 성평등가족부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학생-교육대상 수는 2025년 <4-마> 재적 학생 현황의 재학생 수를 연계 활용

- 【시설 현황 - 상담·조사 독립공간 유무】 : 상담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는지 O/X 중 기재
- 【시설 현황 - 상담실 내 CCTV 설치 유무】 : 상담 조사 공간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O/X 중 기재
- 【시설 현황 - 상담실 내 비상벨 등 보호 장치 설치 유무】 : 상담 조사 공간 내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O/X 중 기재
- 【인권센터 인력 현황】 : 인권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인력에 관한 현황
- 【인력 현황 - 인권센터장 유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 제3항 참고, 1호의 교원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교원으로서의 직위)으로 작성, 2호의 외부 전문가인 경우는 외부전문가(전문분야) 기재 (예) 교원(부교수), 외부전문가(상담), 그 외 유형은 기타로 입력
- 【인력 현황 - 총직원 수】 : 인권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체 직원 수(센터장, 행정, 상담, 조사 인력 포함. 전담 인력, 겸직 인력 모두 포함)
- 【인력 현황 - 전담 인력 수】 : 인권센터 업무(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포함)만을 전담하고 그 외 기관·부서의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지 않은 직원 수
- 【인력 현황 - 겸직 인력 수】 : 총직원에서 전담 인력을 제외한 직원 수로, 인권센터 업무(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포함) 외에 다른 기관·부서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직원 수
- 【인력 현황 - 성희롱·성폭력 대응 인력과 인권침해 대응 인력 구분 여부】 :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두고 있는지 여부를 'O/X'로 표시
-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현황
- 【운영위원회 - 설치 여부】 :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O/X 중 택 1
- 【운영위원회 - 전체 위원 수】 :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구성된 총 위원 수 기재
- 【운영위원회 - 위원 구성 현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 제5항의 분류에 따라, 교직원·학생·전문가 위원의 임명 현황을 성별을 나누어 기재
-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현황】 : 인권센터를 포함, 학내 구성원(학생·교직원)과 관련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고충 상담, 사안 처리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 (기준) 학교법인 정관, 학교규칙 및 직제 규정 등에 명시된 조직 및 기구
- 【조직 현황-설치유형】 : ① 인권센터 내에 설치, ② 일반 학생상담센터 내 설치, ③ 학내 행정기관 내에 설치, ④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 ⑤ 기타 중에서 하나만 선택
- 【조직 현황-전담인력 별도 지정 여부】 : 전담조직 내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하는 자를 그 밖의 업무(인권, 학생상담 등) 하는 자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정했는지 여부를 'O/X'로 표시
- 【조직 현황-예산】 : 회계연도 2026년 기준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인권센터 내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후 입력
-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시설 현황】 : 전담조직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현황
-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인력 현황】 :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현황(부서장 포함)
- 【인력 현황-업무별】 : 전담업무별로 구분(성사안 예방+대응 업무, 성사안 예방 업무, 성사안 대응 업무, 기타행정업무로 분류)
 ※ '성사안 예방 업무'는 교육, 각종 예방행사, 성인식 조사 등이 해당되고, '성사안 대응 업무'는 성고충상담, 사안처리 등이 해당되며, '기타행정업무'는 성사안 예방 및 대응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업무가 해당됨. 성사안 예방 업무와 대응 업무를 모두 수행할 경우 '성사안 예방+대응 업무'에 표시하고, 예방·대응·행정업무가 중복될 경우 업무비중이 가장 큰 업무에 표시

【인력 현황-고용 형태별】 :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분류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심의 등 조치를 위해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조사·심의 위원회-성사안 전담여부】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심의 등 처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서 타 위원회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O/X’로 표시

【조사·심의 위원회-위원 구성 현황】 :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인 대학 내부로, 해당 학교에 속하지 않은 위원은 대학 외부로 구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규정 현황】 :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처리에 근거가 되는 규정 제정 여부

■ 참고사항

- 인권센터 운영 현황은 대교협 학사지원누리집을 통해 제출받을 예정이며, 7월 중 교육부에서 제출 방법 안내(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운영 현황은 교육부(〈대학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교육부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하. 안전관리 현황

14-하-1.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9월(안전관리 조사)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시내용】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학년도)

(단위: 명, 원, 개, %)

이공계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안전환경관리자 (단위: 명)		안전관리비 (단위: 원)		등급별 실험·실습실 수 (단위: 개)					보상(공제) 청구 건수	사고 건수	유족급여	요양급여
전담	겸임	예산액	집행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공계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안전교육 이수율(%)												
구분	연구실 책임자			기타 연구활동종사자			총연구활동종사자					
	대상인원 (명)	이수인원 (명)	이수율 (%)	대상인원 (명)	이수인원 (명)	이수율 (%)	대상인원 (명)	이수인원 (명)	이수율 (%)			
상반기												
하반기												
신규교육												
비이공계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급별 실험·실습실 수 (단위: 개)					보상(공제) 청구 건수	사고 건수	보험(공제)가입명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사이버대학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안전환경관리자】 : 대학 실험·실습실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직원수를 전담과 겸임으로 구분하여 작성

【안전관리비 현황】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해 별도로 확보한 금액을 합산하여 예산액과 집행액으로 작성

※ 실험·실습실 시설 환경개선비는 제외

※ 국고보조금 및 외부기관 지원금·물품 제외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비와 외부연구과제인건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1%이상 ~ 2% 이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 합한 금액

※ 안전관리비 집행 중 예산 전용·추경·예비비 등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한 금액은 예산액에 포함

【등급별 실험·실습실 수】 :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안전등급 현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에 따른 실험·실습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예·체능 및 기타 실험·실습실 안전등급 현황은 「대학 학부·과(전공)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업무지침」에 따른 예술 및 체육 계열의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과학기술분야 ‘등급별 실험·실습실 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실험·실습실의 경우 법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부여한 안전등급별로 연구실수를 작성하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등급별 실험·실습실 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 조치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을 대상으로 하되, 일반 실기실은 제외하고, 아래 표(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상태) 기준으로 안전등급 부여

등급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상태
1	실험·실습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 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보상(공제) 청구 건수】 : 치료 기간에 관계없이 보험 또는 공제에 치료비를 청구한 건수

【사고 건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보고)에 따라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생한 사고 (비이공제: 동일 기준 준용)

※ 다수의 피해가 동일한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경우 1건으로 작성

※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대학 자체적으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청구 건수

【보험(공제)가입금액】 : 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가입)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으로서 유족급여, 요양급여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된 최대 보상 한도 금액

【보험(공제)가입명】 : 과학기술분야를 제외한 예·체능 및 기타 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험·실습·실기·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가능한 보험(공제)가입명으로, ‘연구실안전공제’, ‘경영자책임배상보험’ 등으로 기입

【안전교육】 :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교육 실시 및 이수 현황 공시

【연구실책임자】 :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현황 기재

【기타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으로 연구실책임자를 제외한 인원의 현황 기재

【총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실책임자와 기타 연구활동종사자를 합산한 인원 및 이수율 기재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훈련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정밀안전진단, 유해인자 등 대상 연구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반기별 3시간 이상 (저 위험 대상 연구실)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신규교육· 훈련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참고사항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하-2. 시설 안전관리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9월(안전관리 조사)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시내용】 : 시설 안전관리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시설 안전관리 담당 부서) 2026. 4. 30., (건물 안전관리) 2025. 5. 1. ~ 2026. 4. 30., (실행계획, 지진 안전관리) 2025. 12. 31., (소방 안전관리) 2025학년도, (교육시설안전인증) 2025. 12. 31.)

(단위: 동, 건, 회, 명, %)

(1) 시설 안전관리 담당 부서명 (팀명칭)	(2) 실행계획 유무 (O/X)	(3)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등급 및 위험시설 해소 실적					
		시설 안전점검 현황			최초 40년 도래 건물 정밀안전점검 현황 (단위: 동, %)		
		건명	점검기간	대상 건물 수	최초 40년 도래 정밀안전점검 대상 건물 수	정밀안전점검 건물 건물 수	비율

(3)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등급 및 위험시설 해소 실적							(4) 지진 안전관리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단위: 동)							D·E등급 건물 해소 실적(단위: 동)			지진 안전 관리 대상 건물 수	내진성능 확보 현황		
구분	A등급 (우수)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미흡)	E등급 (불량)	계	대상 건물 수	해소 건물 수	해소 비율 (%)		내진 설계 건물 수	내진성능 확인 건물 수	내진보강 완료 건물 수
40년 이상													
40년 미만													
계													

(5) 소방 안전관리				(6) 교육시설안전인증				
화재 발생 건수 (단위: 건)	기숙사 (소방)교육·훈련 (단위: 회, 명)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건물수 (단위: 동)	교육시설안전인증 취득		교육시설 안전인증 미취득 건물수 (단위: 동)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율 (%)
	입사 현원	교육훈련 횟수	1회당 참여 인원		최우수 (단위: 동)	우수 (단위: 동)		

■ 작성지침

- 시설 안전관리 담당 부서명(팀명칭)(기준일: 2026. 4. 30.): 부서명을 기재하고 하단 괄호 안에 팀의 명칭을 기재
(예: 시설관리과(안전팀), 총무과(시설팀), 교무과(시설팀) 등)
- 실행계획 유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현황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등급 및 위험시설 해소 실적

【시설 안전점검 현황】 : 2025. 5. 1. ~ 2026. 4. 30. 기간 중에 교육시설(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3건 작성 (3건 이상인 경우 3건, 3건 미만인 경우 모두), 대상건물 수를 각 점검시기별 작성

※ 시설 안전점검 실시 시작일이 2025. 5. 1. ~ 2026. 4. 30. 기간 중에 있다면 연계

예시	
시설 안전점검	
건명	점검기간
여름철 안전점검	'25.06.01.~06.30.
겨울철 안전점검	'25.11.01.~11.30.
해빙기 안전점검	'26.02.26.~03.27.

【최초 40년 도래 건물 정밀안전점검 현황】 : 2026. 4. 30. 기준으로 최초 40년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작성

※ 점검대상 시설: 건축물 준공일자 또는 자체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최초 4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교사시설, 체육관, 강당, 기숙사, 급식실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 2026. 4. 30. 기준으로 최종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한 등급으로 작성

※ 40년 이상 건축물과 40년 미만 건축물로 구분하되, 건물 동수(동)로 작성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 결과 등급 기준 적용(점검 등급이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는 경우 양호=A 또는 B, 보통=C, 불량=D 또는 E)

※ 교육부 소속 국립대학,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D·E등급은 교육부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 심의 의결된 경우만 공시

※ 타 부처 국립대학 및 법인의 경우, D·E 또는 불량 등급은 각 소관부처에서 최종 심의가 완료된 등급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입력

※ 사립대 및 기타대학의 경우, D·E등급 또는 불량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등급을 입력

※ 자체 정기점검에서 D·E등급 또는 불량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이나 부처 최종심의를 완료되지 않은 경우 C등급으로 공시

※ 안전점검 결과 등급 기준

등급	상태	평가(조치)기준
A등급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이상이 없는 시설
B등급 (양호)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등급 (보통)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 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등급 (미흡)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 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 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
E등급 (불량)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개축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D·E등급 건물 해소실적】 : 2025. 5. 1. ~ 2026. 4. 30. 기준으로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인 건물에 대해 작성

- ※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E등급인 건물 수와 일치 하도록 작성
- ※ 해소 건물 수는 2026. 4. 30.까지 철거하거나 보수하여 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또는 철거, 보수, 완료 등으로 없어진 경우만 해당

(4) 지진 안전관리(자료기준일: 2025. 12. 31.)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수】 : 교육시설(건물) 중 「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확인 대상 건물 수

- ※ 일부만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물은 제외

【내진설계 건물 수】 :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 수

【내진성능 확인 건물 수】 :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내진성능 있음이 확인된 건물 수

【내진보강 완료 건물 수】 :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중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한 건물 수

【내진성능 확보율】 : (내진설계 건물 수 + 내진성능 확인 건물 수 + 내진보강 완료 건물 수) /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수 × 100%

(5) 소방 안전관리(자료기준일: 2025학년도)

【화재발생건수】 : 대학 내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으로 소방서 출동 기록이 있는 화재를 대상으로 하되, 자체 진화하고 청소만으로 해결된 경미한 화재는 제외

【기숙사 소방 교육·훈련】 : 재학생이 소방훈련과 교육에 참여한 실적으로, 자체 보관(2년)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작성

-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참고로 작성

【입사현원】 : 기숙사에 입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소방 교육·훈련 해당일의 입사 학생 현원과 일치하도록 작성

【1회당 참여인원】 : 소방교육·훈련 참여 연 인원 / 교육·훈련 횟수

(6) 교육시설안전인증(자료기준일: 2025. 12. 31.)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건물수】 : 교육시설(건물) 중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인증 대상 건물 수

【교육시설안전인증 취득】 : 교육시설안전인증 취득이 완료된 건물 수

- 【최우수】 :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건물 수

- 【우수】 : 우수 등급을 취득한 건물 수

【교육시설안전인증 미취득 건물수】 : 교육시설안전인증 취득 의무 대상에서 취득하지 못한 건물 수(등급이 없는 건물 수)

ex) 인증 심사중인 건물 → 미취득 건물로 산정

ex) 인증 신청완료 건물 → 미취득 건물로 산정

【교육시설안전인증 취득율】 : 교육시설안전인증 취득(최우수 건수 + 우수 건수) /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건물 수 × 100%

■ 참고사항

- 시설 안전관리 현황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14-하-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9월(대학 정보보호 수준진단)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시내용】 : 대학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공시양식】 : 교육부 제출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년)

정보보호 수준진단 등급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 작성지침

【정보보호 수준진단】 : 정보보안 수준진단(「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4조(정보보안 수준진단),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에 의거하여 대학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실시 결과

【정보보안】 : 당해연도 대학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점수에 대한 등급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ISMS-P) 획득 시 ISMS(범위, 유효기간) 또는 ISMS-P(범위, 유효기간)으로 표기

【개인정보보호】 : 당해연도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에 대한 등급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획득 시 ISMS-P(범위, 유효기간)으로 표기

【정보보호 수준진단 등급】 :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등급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내용 표기

- 미실시 : 당해연도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미실시
- 미흡 :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70점 미만
- 보통 :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70점 이상~80점 미만
- 우수 :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80점 이상
- ISMS(범위, 유효기간) : ISMS 인증을 받은 경우
- ISMS-P(범위, 유효기간) : ISMS-P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에 대학이 포함됨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경우 표기 필요

(예 : ISMS(학사, ~2026. 12. 31.), ISMS-P(학사, ~2026. 12. 31.))

■ 참고사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는 교육부(정보보호 수준진단 종합관리시스템)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교육부 수준진단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단,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수준진단 자가점검 결과를 제출한 대학은 포함)
 -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명시된 고등교육기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 :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
 - 수준진단 절차 : 대학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자체진단 후 교육부 담당부서의 현장 확인
 - 수준진단 횟수 : 연 1회
- 교육부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미공시

14-하-4.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사고 보험(공제)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6~7월(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사고 보험(공제) 가입 현황)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시내용】 :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 대비 보험(공제)가입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학년도)

(단위 : 원, 건)

기준 연도	안전관리 계획 [PDF]	안전사고 보험(공제)가입 현황															
		구분				배상책임				교내·외							
		보험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개월수	대인		대물		치료비		사망, 후유장애					
						보상한도(원)	자기 부담금 (원)	보상한도(원)	자기 부담금 (원)	보상한도(원)	자기 부담금 (원)	보상한도(원)	자기 부담금 (원)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안전사고 보험(공제)가입 현황																	
신입생(OT) 등										보험(공제) 청구건수 (전년도)	기타추가 가입사항 (명칭 입력)	비고					
치료비				사망, 후유장애				인적	물적								
보상한도(원)	자기 부담금 (원)	보상한도(원)	자기 부담금 (원)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 작성지침

【안전관리 계획】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 현황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보험상품명】 :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에 대한 담보를 포함한 상품명

※ 대학종합보험/경영자배상책임보험/캠퍼스보험 등에 한하여 작성

※ 법적 의무가입 보험(14-하-1. 에 따른 살형·실습실 보험, 화재보험 등) 제외, 여행자보험, 기업 현장실습보험 등 수시가입 보험은 기타추가가입사항에 명칭만 기재(증권 제출)

【시작일】 :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시작일

【종료일】 :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종료일

【개월수】 :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을 실시하는 총 보상 기간(가입기간, 예 : 12개월)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공식적 행사)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입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책임에 대한 보상한도 금액(보상한도가 무한인 경우 해당란은 공란으로 하며, 비고란에 해당내용 서술)

【교내·외】 : 피보험자의 학생이 학교활동 중 학교 내·외에서 입은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한도 금액(보상한도가 무한인 경우 해당란은 공란으로 하며, 비고란에 해당내용 서술)

【신입생(OT) 등】 : 신입생 입학 전 개최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대학 공식 행사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한도 금액(보상한도가 무한인 경우 해당란은 공란으로 하며, 비고란에 해당내용 서술)

【보험(공제) 청구건수】 : 전년도 1.1.~12.31. 기준, 교내·외에 발생한 대학안전사고로 보험·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한 인적·물적 건수(법적 의무가입 보험(14-하-1. 에 따른 실험·실습실 보험, 화재보험 등), 여행자보험, 기업 현장실습보험 등 수시가입 보험 제외)

※ 사고통지 후 보상금을 1회 이상 청구한 경우, 1건으로 작성

【기타추가 가입사항】 : 여행자보험, 기업 현장실습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사항 기재(예: 현장실습보험, 여행자보험, 외국인 학생상해보험 등 단기로 가입하는 보험 중 대표성을 지닌 명칭을 각 1개만 기재 후 해당 증권 제출)

■ 참고사항

- 안전사고 보험 현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제출한 자료(보험증서) 연계 활용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2026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인 쇄 2026년 3월

발 행 2026년 3월

발 행 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 소 (08504)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셋길 606 대성디폴리스 A-22

대표전화 02) 6919-3881

인 쇄 처 경성문화사

I S B N 979-11-6696-545-6 (9537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비매품>

* 이 책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셋길 606(가산동, 대성디폴리스 A동 22~23층)
TEL. 02-6919-3800 HOMEPAGE. <http://www.kcue.or.kr>



9 791166 965456

ISBN 979-11-6696-545-6 (PDF)

비매출/무료

95370